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徐 仲 錫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 연구

- ‘제주4·3’을 중심으로 -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教 育 學 科

歷 史 教 育 專 攻

梁 奉 哲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徐 仲 錫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 연구
- ‘제주4·3’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of
the Jeju Police
- concentrate on ‘Jeju 4·3’ -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教 育 學 科
歷 史 教 育 專 攻
梁 奉 哲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徐 仲 錫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 연구

- ‘제주4·3’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of
the Jeju Police

- concentrate on ‘Jeju 4·3’ -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2年 4月 日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教 育 學 科

歷 史 教 育 專 攻

梁 奉 哲

이 論文을 梁奉哲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02 年 6 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차 례

머리말	1
I. 제주경찰의 인적 구성과 그 성격	5
II. 제주경찰의 시기별 활동	15
1. '4·3'의 발발 이전	15
1-1. 경찰조직 형성기	15
1-2. 응원경찰 공세기	20
가. '3·1 발포사건'과 '3·10 총파업'	20
나. '1·22 검거사건'과 '2·7 사건'	27
2. '4·3'의 발발 이후	34
2-1. 군·경 갈등기	34
2-2. 군·경 합동 토벌기	42
가. 응원경찰의 초기 토벌 활동	42
나. 숙경(肅警)작업과 '서청 경찰'	51
다. 초토화작전과 무차별 학살	60
맺음말	73
부 록	77
참고문헌	91
ABSTRACT	97

표 차 례

<표 1> 해방 후 제주경찰력의 추이와 그 구성	6
<표 2> 용원경찰관의 제주도 파견 상황('4·3' 발발 이전)	25
<표 3> 제주경찰감찰청의 경찰관서 현황	28
<표 4> 제주도 경찰학교 (교습과) 졸업인원	29
<표 5> 용원경찰관의 제주도 파견 상황('4·3' 발발 이후)	44
<표 6> 제주도 경찰국의 경찰관서 현황(1949. 1. 18 이후)	63
<표 7> 제주도 경찰학교 (강습과) 졸업인원	69
<표 8> 경찰 토벌부대 편제	71

부록 - 표 차례

<부록-표 1> ‘4·3’ 전후의 제주도 경찰 최고 책임자	77
<부록-표 2> ‘4·3’ 전후의 제주도 관내 경찰서장	78
<부록-표 3> ‘4·3’ 전후의 제주도 경찰국 간부의 출신과 경력	80
<부록-표 4> ‘4·3’ 관련 경찰 수뇌부와 응원경찰 간부의 출신과 경력	83
<부록-표 5> 토벌대의 민간인 학살 상황	85

머리말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식민체제는 붕괴되었고 한민족은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민지 통치 지원 세력으로 ‘황국신민화’에 앞장섰던 조선인 경찰관들은 해방이 되자 대부분 피신하였다.

그러나 해방 직후 일제 식민지하의 누적된 모순과 간재를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독립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민중의 열망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척결이 한민족에게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조선인 경찰관들의 일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 평가하여¹⁾ 일제경찰 경력자들을 주축으로 군정경찰을 창설하였다.

미국의 현상유지정책의 핵심 무장력으로서 군정경찰은 언론·출판·전단·팜플렛 승인과 과업 규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강제력을 행사하였다.²⁾ 군정경찰은 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강력한 물리력을 바탕으로 1946년의 ‘10월 항쟁’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였으며 ‘5·10 선거’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군정경찰은 이승만을 비롯하여 한민당계의 극우 세력과 친일파 등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후 점령군에 대항하여 제주도에서와 같은 격렬한 대중적 저항이 분출된 곳은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다”³⁾는 ‘제주4·3항쟁’⁴⁾이 발발하였다.

1) 미군정 경찰고문관 윌리엄 매글린(William Maglin) 대령은 마크 게인(Mark Gayn) 기자에게 “일제하 한국인 경찰이 일본인들을 위해 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상, 김주환 역, 창사, 1986, 277쪽).

2)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459쪽.

3) 존 메릴, 「제주도 반란」, 『한국현대사연구』 1, 이성과 현실사, 1988, 202쪽.

4) ‘4·3’이란 제주도 무장대가 미군정경찰과 서북청년회 등 극우세력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던 1948년 4월 3일을 가리킨다. ‘제주4·3’의 명칭은 소요, 사태, 사건, 폭동, 반란, 봉기, 투쟁, 항쟁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당시 우파 진영에서는 주로 ‘폭동’으로, 좌파 진영에서는 ‘투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제정 1999.12.16, 공포 2000. 1.12)에서는 ‘제주4·3사건’으로, 최근 학계에서는 ‘(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제주4·3항쟁’이라는 명칭과, 당시 미군정과 정부측 행위주체의 하나인 경찰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중립

‘제주4·3’은 당시 한반도의 축도판⁵⁾이며, 한국전쟁을 제외하고는 한국현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동족간의 비극적인 대사건으로 3만 이상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⁶⁾

육지에 비해서 제방간의 갈등이 거의 없었고 혈연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제주도에서는 해방이 되자 좌우가 연합하여 인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치안을 자치적으로 수행하였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중앙의 좌파 세력으로부터 일정하게 독립적인 활동을 했고 또한 온건한 노선을 걸었으며,⁷⁾ 위원회 주도세력들의 항일운동을 높이 평가하였던 제주도민들은 이념이나 사상과는 무관하게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제주도의 유일한 정당이었고 유일한 정부’로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었다.⁸⁾

적이라고 생각되는 ‘(제주)4·3’ 또는 ‘4·3붕기’라는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항쟁을 주도하고 토벌대와 대치했던 한라산 유격대를 상황에 따라서 ‘폭도’ 또는 ‘무장대’로 표현하고자 한다.

참고로 ‘4·3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5) 『서울신문』, 1948. 6. 12.

6) 희생자의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조사와 사실 확인 작업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최종신고 현황」(2001.5.30 현재)에 따르면, 위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희생자수는 14,028명(사망자 10,751명,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50여 년이라는 시간적 경과와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가 안되었거나 될 수 가 없는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제민일보 4·3취재반’에서 추정한 ‘최소한 3만명 이상’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7) 미군정청 공보부의 여론조사과 과장보인 아더 페라루는 1946년 말의 제주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서울의 일반적인 생각은 제주도는 경서상 주로 극좌라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인민위원회’가 워낙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인민위원회’는 온건한 좌파 사회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으며, 경찰과 미군, 일반 대중들은 한결같이 제주도에는 어떠한 충돌이나 폭동도 전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인민위원회 대표들은 ‘장래에도 폭동이 없을 것’이라고 경찰에 약속했다.”(아더 페라루(Arthur N. Feraru) <1946년 12월 4~6일 어간의 제주도 시찰 보고서> 1946. 12. 9 - 제주4·3연구소 편,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38~42쪽). 한편 ‘제주도인민위원회’가 1946년 대구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10월 항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육지부의 좌파 전영이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그 독자적인 노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 185~186쪽).

8) 그란트 미드, 『주한미군정 연구』, 안종철 역, 공동체, 1993, 241쪽.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군정에 매우 협조적이었고 군정 당국은 전적으로 인민위원회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되면서 군정 당국과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⁹⁾ 미군정 및 경무부가 응원경찰들을 제주도에 대거 파견하면서 제주공동체는 불안과 혼란으로 치달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4·3’을 전후한 시기에 제주에서 활동하였던 경찰에 주목하였다. ‘4·3’과 관련된 여러 행위주체 중에서 특히 경찰에 관심을 두고자하는 것은 ‘4·3’의 발발 원인과 전개 그리고 주민학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형태로든 ‘4·3’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4·3’ 시기의 제주경찰의 성격과 활동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3’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고, 제주경찰이 ‘4·3’에서 수행한 역할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제주경찰의 인적 구성과 그 성격은 어떠했으며 이들의 성향과 ‘4·3’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미군정과 경찰 수뇌부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가. 또한 응원경찰의 제주 파견 상황과 이들 활동의 실상은 어떠했으며, 과연 이들의 활동이 ‘4·3’ 발발의 원인으로 작용했는가.

셋째, 군과 경찰의 관계는 어떠했고 그 갈등은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넷째, 경찰과 서북청년회(이하 ‘서청’)와의 관계 및 역할은 어떠했는가.

다섯째, 경찰과 제주도민과의 관계에서 경찰은 주민집단학살의 당사자로서의 책임은 없는가. 그리고 학살에 대한 경찰의 의식은 어떠하였는가.

9) 그란트 미드, 앞의 책, 242쪽. 인민위원회와 군정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은 당시 제주도 제59군정중대가 섬의 세력분포 상태를 현실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된 2개월 후 대구에서 시작된 ‘10월 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백 명의 경찰이 희생되었고, 이로 인해 좌익에 대한 미군의 태도는 돌연 경화되었다. 이제 미군정의 최고 관심사는 지배와 치안의 확보였는데,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서도 치안의 확보·지배와 인민위원회와의 협력은 양립될 수 없었다.(존 메릴, 앞의 글, 149~150쪽). 미군정이 제주도를 도(道)로 승격시킨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도제(道制) 실시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간략하나마 후술하기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시간적 범위는 1945년 8월 해방으로부터 한라산이 전면 개방된 1954년 9월까지로 설정하였고, 항쟁 세력과 관련하여 경찰의 활동 시기를 4기로 나누었다. 즉 일제 식민지 경찰을 바탕으로 군경경찰의 조직이 형성되는 시기(1945. 8. 해방 ~ 1947. 2. 28), 육지부 응원경찰의 파견 등 경찰력 증강을 통해 제주의 좌파 세력을 탄압하는 시기(1947. 3. 1 ~ 1948. 4. 2), ‘4·3항쟁’의 발발로 경비대가 진압의 주도권을 쥐면서 군대와 경찰 사이에 대립·갈등이 나타나는 시기(1948. 4. 3 ~ 1948. 5. 10), 그리고 군·경 합동으로 무장대를 토벌하면서 주민을 집단 학살하는 시기(1948. 5. 11 ~ 1954. 9. 21)이다.

연구 대상자의 범위는 해방 이후 1954년까지 약 10년 동안 제주경찰을 거처한 최고 책임자(15명)·경찰서장(4곳, 36명)·도경 간부(42명)들로 한정하여 출신과 경력을 조사 분석해 보았다. 또한 제주경찰 소속은 아니지만 ‘4·3’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무부 수뇌부를 비롯한 응원경찰 간부(13명)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필자는 ‘제민일보 4·3취재반’이 5권으로 펴낸 『4·3은 말한다』와 동 신문의 연재기사(1998. 4. 25 ~ 1999. 8. 28), 『제주신보』(1947. 1. 1 ~ 1948. 4. 20, 1950. 8. 1 ~ 1954. 12. 1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자료집』(신문편) 1·2, 그리고 ‘제주4·3연구소’가 펴낸 『제주4·3자료집 - 미군정보고서』와 『제주4·3자료집Ⅱ - 미국무성 제주도 관계문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당시 경찰 간부들의 경력 확인은 『조선경찰관직원록』(1937)과 『(대한민국)관보』 1~13권(1948. 9. 1 ~ 1953. 12. 31), 『대한민국 인사록』(1950년), 『건국10년지 인사록』(1956년) 등을 많이 활용하였다.

I. 제주경찰의 인적 구성과 그 성격

해방 당시 100명 정도에 불과하던 제주경찰은 1946년에 이르러 200명으로, 도(道)의 승격(1946. 8. 1)에 따른 경찰기구의 확대로 1947년 1월에는 350명에 가까운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표 1>은 해방 후 제주경찰력의 추이와 그 구성을 정리한 것인데, 미군정과 경무부 수뇌부가 의도한 제주경찰력 구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표 2>·<표 5> 참조)

첫째, 육지부의 경찰과 마찬가지로 제주경찰은 다수의 일제경찰 경력자로 구성되었다.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해방 당시 제주에 주재했던 총독부의 경찰인원은 101명, 이 가운데 조선인이 51명, 일본인이 50명으로 나타나 있다.¹⁰⁾ 그리고 조선인 51명 가운데는 상당수가 해방 이후에도 제주경찰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1947년 6월 현재 제주도 경찰관중 일제경찰 경력자수는 231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84%를 차지했다.¹¹⁾

둘째, 경찰정원 외로 상당수의 응원경찰이 파견되었다. 1947년 ‘3·1 발포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벌써 응원경찰이 파견되기 시작하더니 사건 직후인 3월 중하순경에는 응원경찰이 제주경찰력의 61.8%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4·3’이 발발하고 응원경찰의 초기 토벌활동이 전개되다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1948년 7월 중순경에는 응원경찰이 제주경찰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에 달했다. 특히 미군정과 조병옥 경무부장의 지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서청 주축의 응원경찰이 대거 파견되었다.

셋째, 정원내의 경찰구성에서도 육지출신 경찰의 비중이 높았다. ‘3·1 발포사건’ 직후에 제주경찰은 오히려 70명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술하겠지만 제주출신 경찰관들이 3·1 기념일의 경찰 발포에 항의하는 ‘3·10 총파업’에 동참하여 사직하거나 파면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원경찰이 그

10)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5. 10. 4 ~ 10. 5 (No. 26)(제주4·3연구소 편,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85쪽).

11) 미극동군총사령부(GHQ/FEC) 정보처 <주한미군경찰동요약> 1947. 6. (No. 21)(신상준, 『제주도4·3사건』 상,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0, 633쪽).

공백을 메운다고 해도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철도경찰을 중심으로 육지출신 경찰관 중 제주근무 자원을 모집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였다. 이리하여 1947년 5월 초에는 용원경찰을 제외하고도 제주출신과 육지출신 경찰관의 비율은 51 : 49로 비슷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주도 방문을 앞두고 마무리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던 1949년 4월에는 육지출신 경찰관 비중이 33.3%인데, 용원경찰까지 포함하면 제주출신 대비 육지출신 경찰관 비율은 52.9%나 되었다.

특히 정원내의 육지출신 경찰관 중에서도 월남한 이북출신 또는 서청출신이 제주경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여순사건’ 이후에는 ‘4·3’의 발발 이전에 이미 제주에 들어와 있던 ‘민간인’ 서청회원들이 대거 경찰복이나 군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제주출신 경찰은 숫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했다.

〈표 1〉 해방 후 제주경찰력의 추이와 그 구성

연 도	경찰 인원수	출전
1945. 8. 해방 당시	제주경찰 101명(조선인 51명 포함)	①
1946. 초	제주경찰 200명	②
1947. 1.	제주경찰 345명	③
1947. 2. 말	제주경찰 330명+용원경찰 100명 → 430명	④
1947. 3. 말	제주경찰 260명+용원경찰 421명 → 681명	⑤
1947. 5. 초	제주경찰 260명+육지출신 자원자 245명 → 약 500명	⑥
1947. 6.	제주경찰 275명(일제경찰 경력자 231명 포함)	⑦
1947. 12. 1~1948. 1. 1	465명	⑧
1948. 4. 7	제주경찰 380명+용원경찰 100명 → 480명	⑨
1948. 7. 15	제주경찰 500명+용원경찰 1,500명→ 약 2,000명	⑩
1948. 7. 말	1,800명	⑪
1949. 4. 1	제주경찰 1,200명(제주출신 800명, 육지출신 400명)+ 용원경찰 500명 → 1,700명	⑫

출전 : ①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5. 10. 4 ~ 10. 5 (No. 26)(『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85쪽).

②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181쪽.

③ 미국동군총사령부(GHQ/FEC) 정보처 <주한미군정활동요약> 1947. 3. (No. 18)(신상준, 앞의 책, 632쪽).

④ 제6사단 <정보일지> 1947. 2. 26 ~ 2. 27 (No. 497)(『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57쪽).

- ⑤ 『독립신보』, 1947. 4. 5.
- ⑥ 『제주신보』, 1947. 4. 28.(김영배 제주경찰감찰청장 기자회견)
- ⑦ 미국통군총사령부(GHQ/FEC) 정보처 <주한미군경찰동요약> 1947. 6. (No. 21)(신상준, 앞의 책, 633쪽).
- ⑧ 주한미육군사령부 <주간정보요약> 1947. 12. 26 ~ 1948. 1. 2 (No. 120) / 1948. 1. 23 ~ 1. 30 (No. 124)(『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214~217쪽).
- ⑨ 『서울신문』, 1948. 4. 7.(조병욱 경무부장 답화)
- ⑩ 『조선중앙일보』, 1948. 7. 30.
- ⑪ '1948년 8월의 경무부 관련 문서'(『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355쪽).
- ⑫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9. 3. 30 ~ 4. 1 (No. 1097)(『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68~172쪽).

미군정의 중앙집권적인 식민지 경찰체제의 부활 및 강화로 인해 제주경찰의 성격은 자연히 경찰 최고 수뇌부에 의해 규정되었다. 제주경찰력의 증강과 더불어 육지에서 많은 경찰간부들이 제주에 들어왔는데 그들 가운데는 친일경찰 출신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에는 '4·3'과 관련된 경찰조직 상층 지도부의 출신과 경력을 분석함으로써 제주경찰의 인적 구성과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4·3 항쟁'이 거의 진압된 1954년까지 약 10년 동안 제주경찰에 근무했던 최고 책임자, 경찰서장, 도경 간부들의 출신과 경력을 조사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당시 경무부 수뇌부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4·3' 관련 응원경찰 간부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¹²⁾ 그러나 일제경력과 관련하여 창세기

12) ① 본 논문에서 '4·3' 관련 경찰관의 경력을 조사하는데 이용한 주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이 되는 경찰간부들의 명단은 『경찰10년사』(1958)와 『한국경찰사』 2(1973), 『제주경찰사』(1990)에서 확보하였다. 이외에 보완적으로 『(대한민국) 관보』 1~13권(1948.9.1~1953.12.31), 『대한민국 인사록』(1950년판), 『정부직원록』(1954), 『건국10년지 인사록』(1956년판), 『제주신보』(1947.1.1~1948.4.20, 1950.8.1~1954.12.17) 등을 참조했다. 이들의 일제시기 경력은 『조선경찰직원록』(1930 / 1932, 조선경찰신문사), 『조선경찰관직원록』(1937, 조선경찰신문사),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 직원록』(1939 / 1940), 『조선인명록』(1943, 경성일보사)을 활용하였다. 해방 이후의 경력은 '제민일보 4·3취재반'의 연재물,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1989) 등을 참조하였고, 일본군 출신인 경우 「한국군의 창군과정과 미군의 역할」(한용원, 1982)을 참조하였다. 참고로 분석 대상 경찰관의 출신 및 경력과 관련한 <표>들은 논문 편집상의 이유로 부록에 배치했다.

② <부록-표 1>, <부록-표 2>, <부록-표 3>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10년사」·「한국경찰사」 2·「제주경찰사」의 기록이 각기 다르고 누락된 경우가 많다. 틀린 부분

명이 있기 전인 1937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제경찰 경력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6년 도제(道制) 실시 이후 1954년까지 제주경찰의 최고 책임자는 <부록-표 1>과 같다. 동기간에 제주도의 경찰책임자를 역임한 인원은 모두 15명인데 일제경찰 경력자는 군수 경력자 1명을 포함하면 8명으로 5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최천(崔天)을 제외하고는 항일활동 경력자가 없다. 출신지별로는 제주 이외의 지역출신이 13명으로 86.7%나 차지하는데 비해 제주출신은 겨우 2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제주출신의 소외 내지 배척은 국립경찰체제 하에서 경찰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³⁾

제주출신은 일시적인 유화정책이 필요할 경우애나 기용됐을 뿐이며, 특히 타

에 대해 정정이 가능한 것은 『제주신보』나 『대한민국 판보』·『대한민국 인사록』(1950년판) 등과 대조하여 그 내용을 바로잡았다.

劉起柄(3대 서귀포경찰서장) ; 『경찰10년사』 기록, 『한국경찰사』·『제주경찰사』 누락.
鄭東源(5대 서귀포경찰서장) ; 『경찰10년사』 기록, 『한국경찰사』·『제주경찰사』 누락.
모슬포·성산포서장 전원 ; 『제주경찰사』 기록, 『경찰10년사』·『한국경찰사』 누락.
文亨淳(초대 모슬포경찰서장) ; 『대한민국 인사록』(1950년판) 기록→『제주경찰사』 기록은 오기. 따라서 초대 성산포경찰서장은 康文植으로 추정된다.

劉起柄(8대 경무과장) ; 『4·3은 말한다』 5권 187쪽(『제주신보』 1949.7.8) 기록, 『경찰10년사』·『한국경찰사』·『제주경찰사』 누락.

金汝玉(수사과장) ; 『4·3은 말한다』 1권 235쪽 기록→姜基泉과 겹침, 『경찰10년사』·『한국경찰사』·『제주경찰사』 누락.

金元浩·文龍彩(이상 수사과장) ; 『제주신보』(1947.3.10 / 7.26) 보도, 『경찰10년사』·『한국경찰사』·『제주경찰사』 누락→趙漢龍으로 오기.

趙漢龍(통신과장) ; 총무과장 재임시기와 겹침.

康成謨(통신과장) ; 『4·3은 말한다』 5권 184쪽 기록→『경찰10년사』·『한국경찰사』·『제주경찰사』 기록은 보안과장 경력과 겹침으로 오기.

그리고 金次鳳·柳根億(이상 제주서장), 趙漢龍·田文淳·李正庸(이상 총무과장), 崔正植·金泰岩·裴一範(이상 보안과장), 張熙重(부평경찰서장 경력과 겹침→『한국경찰사』 2)·金吉明(이상 수사과장), 崔權洙(통신과장), 李斗煥(사찰과장) 등도 재임시기에 문제가 있다. 또한 『제주신보』 기사(1954.1.31)에 모슬포경찰서장으로 등장하는 韓洛九는 경찰사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최대의 의문점은 1948년 9월 19일 ~ 1949년 11월 1일 사이의 경무·보안·수사·통신·사찰과장 명단이 전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인데(경무과장은 1948.11.14부터), 이 기간은 초도화확전으로 무차별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던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

- 13) 제주도경찰청장이 1994년 현재까지 55대에 이르고 있고, 제7대 김봉호(金鳳昊) 청장 이후 4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주출신 청장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489~490쪽.;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 181쪽).

지역 중 이북출신은 5명(38.5%)이나 되고 초토화·무차별 학살기간에 재임하고 있다. 평남출신 홍순봉(洪淳鳳)은 일본의 괴뢰정권인 만주국의 고위간부로 근무했던 대표적인 친일경찰로서 강경 토벌과 집단학살의 책임자였다. 그는 ‘반민특위’ 파동의 과정에서 헌병대로 피신하여 헌병학교장까지 역임하고 치안국장에 올랐다.

제주경찰 최고 책임자의 평균 재임기간은 7개월이 채 안될 정도로 매우 짧는데 특히 미군정기의 평균 재임기간은 3.6개월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경찰책임자의 단명은 제주도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찰행정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이념적으로 좌파 성향의 인물은 전혀 없고, 학력으로는 대학출신이 3명인데 모두 일본의 대학 출신이었다.

‘4·3’을 전후하여 제주도에 근무한 관내 경찰서장은 <부록-표 2>와 같다. 4곳의 각 경찰서장에 재임했던 대상자 36명 중 15명이 일제경찰 경력자이다. 일제의 만주군 출신 2명을 포함하면 17명(47.2%)이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특히 제주경찰서장은 15명 중 11명이 일제경찰 경력자로서 7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문형순(文亨淳)을 제외하고는 항일활동 경력자가 없다.

출신지별로는 제주 이외의 지역출신이 23명으로 63.9%인데 비해 제주출신 서장은 12명뿐이었다. 특히 이북출신은 13명으로 제주 이외의 지역출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5%나 되었다. 더구나 서귀포·모슬포·성산포 경찰서장에 문형순·김홍권(金洪權)·허창순(許昌洵) 등 서청 혹은 이북출신이 주로 배치된 것으로 보아 경찰과 서청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찰서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9.4개월(미군정기에는 5.5개월)로 도경국장보다 약간 길지만, 역시 짧은 편으로 일선 서장이 자주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전후의 제주도 경찰관 간부의 출신과 경력은 <부록-표 3>과 같다. 대상자 42명 중 일본군에 복무했던 2명(4.8%)을 포함하면 26명(61.9%)이 일제경찰 경

14) 일본군 출신 경찰간부는 문용채(文龍彩, 관동군 헌병 출신)와 이형석(李炯錫)이다. 미군 보고서는 이형석의 경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비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제주경찰감찰청 부청장 이형석(실제는 총무과장)은 일본군 소령 출신

력자이다. 아직 자료 조사가 불충분한 상태이지만 기술제통의 비실세 부서인 통신과장을 제외한다면 일제경찰 경력자의 비중은 71.4%로 더욱 높아진다. 이에 비해 항일활동 경력자는 전무하였다. 그리고 제주 이외의 지역출신의 간부는 26명으로 61.9%나 되는데 반해 제주출신은 12명에 불과했고 특히 타지역 중 이북출신은 8명이나 되었다.

1937년을 전후하여 경찰에 재직하고 있었던 자들을 중심으로 계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들의 일제시기 계급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제의 패망으로 일본인 상관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이들이 차지하게되면서 해방은 이들에게 신분상승의 기회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대상자 93명¹⁵⁾ 중 일본군 출신을 제외한 일제경찰 경력자는 46명인데 일제시기 계급이 경부 7명, 경부보 8명, 순사부장 3명, 순사 28명으로 67.4%가 비간부급인 순사부장 이하였다. 관서별로는 제주도경찰국장급에 경부 2명·경부보 3명·순사 2명, 경찰서장급에 경부보 4명·순사부장 2명·순사 9명, 제주도경 간부급에 경부 5명·경부보 1명·순사부장 1명·순사 1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하게 도경 간부급에 경부 5명이 등장하는 것은 전문순(田文淳)이 계속 자리바꿈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일제말기 승진을 감안하더라도 해방의 시점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비간부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으로 일본 육군철도부대의 부대장이었다. 이 부청장은 임기동안 수천 명의 영국인들을 포로로 잡아 강제노역을 시켰다. 그의 지휘로 포로 가운데 일부는 잔인하게 고문받았고 폭행당했으며 총살됐다. 이 부청장은 해방이 되자마자 선편으로 한국에 몰래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직위를 차지했는데 지금도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팔뻘을 일으키면서 일본인들과 비밀접촉을 하고 있다.”(주한미육군사령부 방첩대 <월2회 정보보고서> 1947. 10. 16 ~ 10. 31 (No. 21)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보고서』, 307쪽).

- 15) 제주경찰에 근무했던 도경찰청장 또는 도경찰(15명)·시장(36명)·도경 간부(42명) 등 9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미군정 시기 경찰 조직기구를 보면 각 관구(도)경찰청에 ‘부청장’이라는 직제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자료에도 역대 도경 부청장 명단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부청장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4·3’의 발발을 전후하여 제주경찰감찰청에 재직하였던 박근용 부청장의 역할이 특히 주목된다. 그는 ‘4·28 평화협상’을 깨뜨리는 ‘5·1 오라리사건’의 주역으로 등장하는데, 출신과 경력은 다음과 같다.

朴根容 : 함남출신. 장진경찰서 순사부장(1937). 제주경찰감찰청 부청장(경감, 1948. 1~?). 강원·경기도경 정보과장(1949~1950). 전남도경·치안국 수사·정보과장(1951~1952). 전남도경찰(1953).

중앙집권적 경찰체제하에서¹⁶⁾ 경찰총수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간파한 미군정은 경찰의 최고 수뇌인 경무부장에 조병옥(趙炳玉), 경무차장에 최경진(崔慶進)을 임명하였다.¹⁷⁾ <부록·표 4>는 ‘4·3’과 관련된 경무부 수뇌부와 응원경찰 간부¹⁸⁾의 출신과 경력을 정리해 본 것인데, 좌파 성향의 인물은 전혀 없고 대부분이 일제경찰 경력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병옥 부장은 ‘3·1 발포사건’, ‘3·10 총파업’, ‘4·3 봉기’ 등 일련의 제주사태에 대하여 응원경찰의 파견과 서청의 투입을 통한 강경 일변도의 물리적 해결을 지시하였던 경찰총수로서, 미군정기간 내내 ‘제주4·3’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군정경찰의 친일경찰로의 탈바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¹⁹⁾

16) 군정장관 월리엄 딘 소장은 1948년 1월 26일 경찰 체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관구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훈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경찰당국은 ‘지방분권적인 운영과 함께 중앙집권적 통제가 경찰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경찰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였다. 여전히 경무부장은 관구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통제하고, 경찰청장은 관할 구역의 모든 경찰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네스 특별감찰보고서-제주도 정치상황, 1-14(증거 I, 경찰당국의 언론보도 발췌)> -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444~446쪽).

17) 미군정기 경무부 핵심 간부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직명	성명	직명	성명
경무부장	조병옥	수사국장	최능진 김태선 조병설
경무부차장	최경진 한종진	수사국부국장	김태선 이만중 장영복
총무국장	조주영 정재종	총무과장	김세준 강창구
총무국부국장	김동호	정보과장	이종호 고병익 김현 강준
인사과장	김동호 이재무	특무과장	이만중 고병익 나병덕 서극형
경리과장	정재종 이용렬	통신국장	조웅천
공안국장	한종진 김정호 함대훈 김태일	통신국부국장	이동철
공안국부국장	장영복 이동철 홍순봉	김정호 함대훈	
기획과장	장병인	감찰실장	조병설 조주영
공안과장	전봉덕 장병인	공보실장	김대봉
경비과장	조보연	관방장	김태일 이만근 박병배 조환영 이동철 나종구

출전 : 내무부치안국, 『경찰십년사』, 503쪽.

18) 현재까지 간부급 응원경찰관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파견 당시 중(소)대장급의 응원경찰로는 오학룡·조명재·현차득·김형봉 경위 등의 이름 정도가 드러났을 뿐이다. 이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吳學龍 : 철도경찰. 중문·안덕면에서 주로 활동(1948.11). ; 趙明宰 : 철도경찰. 안덕면에서 주로 활동(1948.11). 순직(경감에서 총경 추서, 1960.11.6). ; 玄次默 : 이북출신. 거지지서 응원경찰대장(1948.11). ; 金聲鳳 : 수도경찰청 소속. 애월면 하가리 파견소대장(1949.3).

19) 조병옥, 『나의 회고록』, 민교사, 1969, 173쪽. ; 조병옥, 「해방 2주년 기념일을 맞이하

김정호(金正浩) 경무부 공안국장도 “민중들이 우리 경찰을 일제시대 경찰로 오인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일제경찰 경력자라고 모두가 친일파가 아니요, 모두가 민족반역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친일경찰을 적극 옹호했다.²⁰⁾

경무부 수뇌부는 제주도를 ‘좌익의 본거지’로 규정하고 제주의 좌파 세력을 건국의 장애물로 인식하였다.²¹⁾ 경찰의 상층 지도부는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를 응원경찰관들에게도 주입시킴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중국에는 제주도를 초토화하고 제주도민을 무차별로 학살하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

제주경찰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특히 육지에서 파견된 사찰 및 수사경찰은 일제 고등계 형사들이 사용했던 잔혹한 고문을 서슴없이 저질렀다.²²⁾ 제주경찰의 고위급 간부 중 신우균(申宇均)·김차봉(金次鳳)·최난수(崔蘭洙)²³⁾·이두환(李斗煥)·박문기(朴文琪) 등은 고등계 형사 출신이었다. ‘4·3’의 발발 당시와 무차별학살 시기에 제주경찰감찰청의 수사과장 또는 사찰과장을 지냈던 문용채(文龍彩)·성범용(成凡用)·박대의(朴大義) 등은 그 공로를 인정받고 제주경찰

여」, 『민주경찰』 제2호, 1947.8, 6쪽.

20) 김정호, 「제5관구 경찰관에게 고향」, 『민주경찰』 창간호, 1947. 6, 77~78쪽.

21) 『한성일보』, 1947. 3. 13. ;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318~319쪽.

22) 경찰이 자행한 수많은 고문과 학살 행위 중 대표적인 증언 사례를 소개한다. ① 나는 친척의 추천으로 저지서서 급사가 됐지요. 그런데 지서는 너무도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지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전기고문은 물론 거꾸로 매달아놓고 고춧가루를 쏜 끓는 물을 코에 붓거나 통닭처럼 손발을 철봉에 묶어놓고 구타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그래서 겁이 나 급사 일을 그만 두고 피해 다녔습니다.(『제민일보』, 1998. 6. 26. 제418회, 초토화작전 - 한림면①, 상명리).

② 도별대에게 총살된 사람들의 시신을 치우는 ‘영장부대’에 편성됐었다는 한 소개민의 증언에 의하면, “의도지서에 있던 경찰 김영철(金永哲 ; 전복출신, 의도지서와 도두지서 주임 역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내 손으로 묻은 시신만 해도 수 백구는 됩니다. 한번은 부녀자와 세살 난 아기가까지 학살하는 끔찍한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경찰들은 일가족을 끌어내 초주검 상태로 만든 뒤 칼로 쪼갬과 배, 엉덩이를 도려냈습니다. (『제민일보』, 1999. 5. 14. 제444회, 초토화작전 - 제주읍②, 해안리).

23) 최난수는 1948년 ‘5·10 선거’ 직후, 그리고 소위 ‘11·1 경찰 프락치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수도경찰청 특별수사대를 이끌고 제주에 들어왔다. 그는 제주출신 경찰을 제치고 수사를 전두지휘하면서 가혹한 고문을 일삼았다. 최난수를 중심으로 한 친일경찰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위기에 몰리자 반민특위를 주도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암살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으며, 1949년 6월 살인 예비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곧 풀려 나와 지방의 경찰서장과 도경 정보·수사과장을 두루 지냈고, 특히 제주경찰서장까지 역임하였다.

서장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서청출신 경찰의 무자비한 고문과 학살도 제주경찰의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하루에 한 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던 서청출신인 삼양지서 주임 정용철(鄭鏞哲)은 주민을 잡아다가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창으로 찌르도록 강요하곤 했다. 또한 임신한 여자의 몸을 난로 속에서 달궈진 총구로 찔러 고문한 뒤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다.²⁴⁾

그러나 무차별 학살 지시에 저항하는 용기있는 경찰도 있었다. 외도지서 소속의 방(方) 경사는 이복출신이면서도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평소 애용으로 총알을 딱 한발만 넣고 다녔고, 그에게 총살 명령이 내려지면 “총이 탈나서 안 나갑니다”며 쏘지 않는 등 상부의 지시나 명령에 저항하였다.²⁵⁾ 이복출신인 문형순 산상포경찰서장도 1950년 8월말께 상부로부터 예비검속자에 대한 처형 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지시가 부당하다며 처형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⁶⁾

한편 제주출신 경찰은 육지출신 경찰이나 군인에게 끔찍 못했다. 그런데 제주출신 경찰 중에도 일부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는 생각에서인지 과잉행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앙갚음을 광기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경찰은 간부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일제경찰 경력자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인적 구성으로 극우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한 일제 때 군인들이 초토화작전 등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군국파시즘의 ‘방공(防共)주의’에 감염되어 있었던 일제경찰 경력자들은 야만적인 사상 탄압이나 고문·테러에 익숙해져 있었다.²⁸⁾

24) 『제민일보』, 1999. 8. 28(제456회, 초토화작전 - 제주읍(區), 삼양리).

25) 『제민일보』, 1999. 4. 30(제443회, 초토화작전 - 제주읍(區), 외도리).

26) 채미교포 이도영(李道英) 박사의 증언(『한국일보』, 2000. 1. 11).

27) 金濟珍(제주경찰 10기생)·金浩謙(당시 서귀포경찰서장)·金秉澤(전 경우회 제주도지회장)의 증언. ‘4·3’ 당시에 제주경찰로 근무했던 경찰관들의 증언 내용은 ‘4·3’의 진상규명에 매우 중요하다. 아직 활자화되지 않은 증언 내용은 ‘제민일보 4·3취재반’의 김종민 기자가 채록한 증언 자료의 일부를 제공받아 인용하였다.

28)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1999, 662~663쪽.

그리고 육지에서 상당수의 응원경찰들이 파견되었는데 이들이 제주경찰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완전 장악하였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하의 일본인들보다 더 심하게 제주도민들을 다루었다. 육지출신 경찰들이 인민위원회를 탄압하는 등 섬사람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자행하게 되면서 제주도민들은 경찰에 대해 더욱 적대감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좌파 세력의 확장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였다.²⁹⁾ 이렇듯 계속되는 경찰의 철저한 탄압과 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저항은 '4·3'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중앙집권적 경찰체제하에서 경무부 수뇌부가 제주도를 '좌익의 본거지'로 규정하면서 육지출신 경찰관들에게 주입한 편향된 이념은 제주도민들에게 잔혹한 고문과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29) 사무엘 스티븐슨(Samuel J. Stevenson) <넬슨 특별감찰보고서-제주도 정치상황, 1-9(증거 C, 1947년 11월 15일 현재 제주도의 정치상황에 대한 견해)> 1947. 11. 21(『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441쪽). ; 에버레트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 <1948년 4월 이후의 내란과 관련한 이법석 국방장관의 보고>, 주한미사절단의 '급송문서' 제14호, 3급비밀, 1949. 1. 10(『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275-277쪽).

II. 제주경찰의 시기별 활동

1. '4·3'의 발발 이전

1-1. 경찰조직 형성기

제주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제8관구(전남)경찰청 제22구 경찰서로 발족되었다.³⁰⁾ 1945년 말에는 일제경찰 경력자들을 골간으로 제주경찰이 서서히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으며, 곧이어 모자란 경찰관의 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순경을 공개 채용하였다. 20~30명 단위로 모집된 신규 경찰관들은 그 채용 시기별로 '제1기', '제2기' 식으로 기수를 매겼고, 경찰서 연무장에서 간단한 소양교육과 기초 실무교육을 받은 뒤 지서 등지로 배치되었다.³¹⁾ 그러나 1946년 초까지도 지방에는 인민위원회와 치안대 조직이 지서 건물 등을 장악하고 있어서 초임 발령자들이 이를 인수하는데 애를 먹었다.³²⁾

수세에 몰리던 제주경찰도 도(道) 승격³³⁾을 계기로 경찰기구의 증강과 경찰

30)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91쪽. 그러나 1945년 10월 21일은 미군정청에 경무국이 창설된 날이며 국립경찰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 시점에서는 일제 때 불리던 '제주도(島)경찰서'로 호칭되고 있었다.

※ 제주경찰 연혁

1946. 4.11 제8관구(전남)경찰청 제22구 경찰서(제주경찰서) 발족
1946. 8. 1 제주島가 道로 승격. 제8관구에서 분리, 제주감찰서로 신설
1946. 9.11 제주감찰청(청장 金大奉)으로 승격
1946.12.14 제주경찰서는 제1구 경찰서로 개칭. 서귀포지서는 제2구 경찰서로 승격
1947. 2. 7 제주감찰청이 제주경찰감찰청으로 개칭
1948. 4. 5 제주경찰감찰청내에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 설치
1948.11.19 제주도 경찰국으로 개편
1949. 1.18 모슬포(제3구)경찰서·성산포(제4구)경찰서 설치
1949. 2.23 남제주(제2구)경찰서를 서귀포경찰서로 개칭
1957. 7.26 모슬포경찰서·성산포경찰서 폐쇄
출전 :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91~93쪽. ; 『(대한민국) 관보』, 제32호(1949. 1. 18) / 제45호(1949. 2. 23).

31)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179쪽.

32) 오성찬, 『한라의 통곡소리』, 소나무, 1988, 148~149쪽. ;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71 / 179쪽.

인력의 충원을 통하여 그 영향력을 넓혀갔으며, 1946년 9월에 경찰국 성격의 제주감찰청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46년 12월에는 종래 전남 소속일 때 제22구 경찰서로 불리던 제주경찰서를 제주감찰청 산하 제1구 경찰서로 개칭하는 한편 서귀포지서를 제2구 경찰서로 승격시켰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제주도는 밀무역 상인들의 집결지이며 밀반입 물품 단속기관의 뒷거래 행위로 모리배의 천국이었다. 경찰관들은 적은 봉급으로 생활이 어렵사³⁴⁾ 이러저러한 뇌물을 받아 이를 보충하는 일에 눈을 밝혔다.³⁵⁾ ‘복시환(福市丸) 사건’³⁶⁾은 신우균(申宇均) 제주감찰청장³⁷⁾ 이외에도 군정경찰의 책임자 존 파트리지(John S. Partridge) 대위까지 연루된 대형 모리배 사건이었다.³⁸⁾

그런데 복시환 사건은 그 처리과정에서 응원경찰의 파견이 결정되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다. 1947년 2월 23일에 100명의 응원경찰대가 제주에 도착하였는데,³⁹⁾ 이 응원경찰이 파견된 시기나 파견 과정·목적이 불투명하였다.

응원경찰의 제주도 파견 역사를 살펴보면 사태 발발 이후에 진압병력이 도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⁴⁰⁾ 1947년 초의 제주도는 소요 사태도 없었고 위급

33) 제주도의 도(道) 승격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에 들어간 뒤 미군정이 좌익에 대해 공세를 취하던 시점에 미군정과 우파 진영 인사들의 주도 아래 추진되었다. 그러나 도 승격에 따른 재정부담과 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도인민위원회’는 제주도 승격은 특히 미군정하에서가 아닌 우리 정부의 수립 이후에 추진할 사항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미군정의 도제 실시 결정은 행정적 의미 이상의 정치적 문제도 고려했을 것이다. 즉 독자적인 지방행정의 추진 외에도, 도로 승격되지 않으면 갖출 수 없는 경찰기구(제주감찰청으로 승격)와 경비대(제9연대의 창설) 등을 통해 치안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161~172쪽).

34) ‘육지부에서 본도 1구서 관내 외도지서에 전임한 순경이 객지에서 자기의 봉급으로는 처와 처매 3인 가족을 도저히 부양할 수 없어 이혼’할 정도로 봉급자들은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었다.(「제주신보」, 1947. 6. 22).

35) 존 베릴, 앞의 글, 152~153쪽.

36) ‘복시환 사건’에 대해서는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232~240쪽 참조.

37) 신우균 제주감찰청장은 재임 3개월 동안 약 50만원(약 5천 달러 상당) 이상의 부정한 돈을 챙겼다.(리차드 로빈슨, 「미국의 배반 - 미군정과 남조선」, 정미옥 역, 과학과 사상, 1988, 135쪽). 그런데 제주신보에 의하면 신우균 청장의 수뢰액은 물경 100여 만원에 달하였다고 한다.(「제주신보」, 1947. 2. 16).

38) 「동아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 1947. 2. 5.; 「제주신보」, 1947. 2. 12.

39) 「한성일보」, 1947. 3. 4.

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미군정이 응원경찰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전국적으로 좌파 진영이 보이콧한 가운데 실시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에서 제주도의 좌파 세력만은 참가하여 모두 당선된 데다가, ‘입법의원’ 개원식에 즈음하여 사퇴해버림으로써⁴¹⁾ 미군정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1947년 2월 10일에는 제주읍내의 중고교생 1천여 명이 참가한 양과자 배격시위가 일어났다.⁴²⁾ 이 양과자 반대운동은 육지에서 ‘독립촉성국민회’ 등 우파가 먼저 전개한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 말까지 제주민중과 직접 충돌하는 사건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미군정은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반미시위⁴³⁾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따라서 제주도의 좌파 세력을 제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응원경찰의 파견 등 미군정의 물리력을 증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모리행위를 둘러싸고 그 비호세력인 신우균 감찰청장 등 미군정 관리들과 비판세력인 일부 제주경찰관 사이에 잠재해있던 내부 알력⁴⁴⁾이 복시환 사건으로

40)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246~247쪽. 제주도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의식이 강한 지역으로서 저항의 역사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조선 말에 제주도에서는 여섯 차례의 민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중앙정부는 본토의 군사를 제주섬에 급파하여 진압하였다. 일제시대에도 ‘조천만세사건’(1919)이 일어나자 육지부대의 급파를 요청하여 사태를 진압하였다. ‘제주농업학교 동맹휴학사건’(1931)이 발생했을 때에는 광주에서 68명의 경찰과 2척의 경비정이 파견되었으며, ‘해녀봉기사건’(1932) 때도 전라도 경찰부 소속 무장경찰 80여명이 급파되어 무자비한 탄압을 감행하였다.

41) 제주도에서는 1946년 10월 29일에 ‘입법의원’ 선거가 시행되어 문도배(文道培, 구좌면 인민위원장), 김시탁(金時鐸, 조천면 인민위원회 문예부장)을 제주도 대의원으로 선출하였다.([‘한성일보’, 1946. 11. 1). 그러나 전국 유일의 좌파 대표인 이들은 동년 12월 12일 ‘입법의원’ 개원식에 맞춰 서울 민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의원’ 참가 거부성명을 발표하였다.([‘독립신보’, 1946. 12. 15).

42) 『제주신보』, 1947. 2. 10.

43) 제6사단 <정보일지> 1947. 2. 14 ~ 2. 15 (No. 485) / 주한미육군사령부 <주간정보요약> 1947. 2. 9 ~ 2. 16 (No. 75)(『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교서』, 56 / 200쪽).

44) 최정식(崔正植) 경감은 “경찰이 모리배 한중육을 체포했지만 파트리지 대위의 명령에 따라 석방됐다”면서 미군정관리들이 모리배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아더 페라루, 앞의 글,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38~42쪽). ‘不逞警官에 斷’이라는 제하의 제주신보에 의하면 최정식 외 수명의 간부가 파면당한다.([‘제주신보’ 1947. 1. 4).

표면화되기 시작했다.⁴⁵⁾ 그리고 제주의 한 우익단체가 경무부장에게 발송한 서신⁴⁶⁾을 계기로 복시환 사건은 단순한 모리사건을 넘어 사상문제와 결부된 ‘불순한’ 사건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46년 대구에서 시작된 ‘10월 항쟁’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미군정에 의해 진압되면서 육지부의 좌파 진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의 좌파 진영은 이 항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전히 그 조직과 역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병옥 경무부장은 ‘10월 항쟁’에 대해 “이런 폭동사건은 조선의 건국을 위하여 한번은 불행히 있었을지언정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연출되어서는 안될 민족의 통한사”⁴⁷⁾로 규정하고, 좌파 세력이 강한 제주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발생한 복시환 사건은 미군정 경무부에게는 상황을 만전시킬 좋은 기회였다. 먼저 경무부는 2월 5일 조병설(趙炳契) 감찰실장을 파견하여 제주 경찰의 문제점을 조사했다.⁴⁸⁾ 조병설 실장은 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제주경찰은 기술적으로 미약하다”면서 “2주일 이내에 제주경찰이 쇄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병설 실장이 귀경한 다음 날인 2월 18일 응원경찰의 파견이 결정되었다.⁴⁹⁾

45) 『제주신보』, 1947. 2. 10. ‘복시환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출신 소장과 경찰관들은 신우균 감찰청장과 감찰청 김여옥(金汝玉) 수사과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조사 확인하고 당사자들을 찾아가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여옥 과장은 사표를 쓰고 순순히 자리를 떠난 반면, 신우균 청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역공을 퍼는 바람에 경찰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표출하게 되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235쪽).

46)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 제주도지부는 조병옥 경무부장에게 서신(일자, 1947.1.18)을 보내 제주감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청년연맹은 ①이름이 잘 알려진 공산분자들과 야간에 회합하는 일 ②좌익분자들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일 ③모리배들과 뒷거래하는 일 ④공산분자들의 조직을 강화시키는데 협조하는 일 등의 사유로 신우균 감찰청장을 비난하고 있다.(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7. 1. 30 ~ 1. 31 (No. 445)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03쪽).

47) 조병옥, 「10월 폭동사건의 진상」, 『민주경찰』 창간호, 1947. 6, 112쪽.

48) 『제주신보』, 1947. 2. 16. 복시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된 신우균 감찰청장은 자신의 결백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제주경찰의 기강문제와 사상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249쪽).

49) 『제주신보』, 1947. 2. 18.

경무부는 신우균 청장을 2월 20일자로 경질하고 후임으로 당시 국립경찰전문 학교 총무과장(감찰관)인 강인수(姜仁秀)를 임명하였다.⁵⁰⁾ 경무부는 이와 동시에 제주도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충남·충북 경찰청 관내에서 각각 50명의 경찰관을 차출하여 2월 21일 파견하였다.⁵¹⁾

강인수 제주경찰감찰청장은 부임하면서 부패한 제주경찰의 ‘규율쇄신’을 강조하고, “3월 1일을 계기로 경찰의 퇴세환회(頹勢換回)를 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⁵²⁾ 경찰의 ‘규율쇄신’과 ‘퇴세환회’는 제주경찰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이념 무장을 새로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결국 미군정과 경무부는 제주경찰의 규율과 사상문제를 빌미로 응원경찰을 파견하였고, 3·1 기념일의 시위를 원천 봉쇄하면서 제주도의 좌파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였다.⁵³⁾

중앙에서 3당(공산당·인민당·신민당)의 통합으로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이 결성(1946.11.23)됨에 따라 1946년 12월 ‘조선공산당 제주도당’도 ‘남로당 전남도당부 제주도위원회’(이하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로 개편되었다.⁵⁴⁾

제주도의 좌파 진영은 1947년에 접어들면서 조직 정비를 강화시켜 갔다. 1월 12일에 ‘제주도 민주청년동맹’⁵⁵⁾ 1월 25일에는 ‘제주도 부녀동맹’을 결성하였

50) 『제주신보』, 1947. 2. 20. 경무부의 명령에 따라 국립경찰학교 교관인 김계중(金啓重) 경감과 박계현(朴桂炫) 경사가 신임 강인수 제주경찰감찰청장의 보좌역으로 함께 부임하였다. 그런데 박계현 경사는 1948년 ‘5·1 오라리사건’ 때 경찰간부후보생으로 편성된 진압부대 소대장으로 출동한다.

51) 『제주신보』, 1947. 2. 20.

52) 『제주신보』, 1947. 2. 20.

53) 그 구체적인 증거로는 다음 2가지를 들 수 있다. ① “3·1절을 기하여 이런 폭동을 일으킬 우려는 2월 초순 이래의 정보에 의하여 확인되었었다. 그러므로 경무당국은 2월 하순 기선을 제하여 응원대를 파견한 일도 있었다.”(“3·1 발포사건”에 대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담화문에서 - 『제주신보』, 1947. 3. 22). ② “3·1절을 계기로 불온한 상태가 배태함으로 충남북 응원대 100명을 파견케 되었으니 선처하라는 특명을 받고 부임하였다.”(강인수 전 경찰감찰청장의 이도(離道)에 따른 담화에서 - 『제주신보』, 1947. 4. 28).

54)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결성일자는 金生玟의 증언에 따른다.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535쪽에서 재인용).

55) 『제주신보』, 1947. 1. 10 / 2. 16 / 2. 18. ‘민청’은 1947년 1~2월에 읍·면 단위로 결성되고, 마을단위로 확대 조직되어 당시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청년조직이었다. 결성식에는 지서 주임까지 참석하여 축사를 하기도 했다.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다.⁵⁶⁾ 2월 17일에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교육계·유교·학교단체 등 각계 각층을 총망라한 인사들이 ‘3·1 투쟁기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⁵⁷⁾ 2월 23일에는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선’을 출범시켰다.⁵⁸⁾

제주경찰감찰청은 2월 18일과 22일에 “3·1절 기념행사에 가두시위를 절대 엄금한다”고 발표했다.⁵⁹⁾ 2월 28일 제주도 군정장관 서먼 스타우트(Thurman A. Stout) 소령은 강인수 경찰감찰청장, 경찰고문관 파트리지 대위, 강동효(姜東孝) 제1구 경찰서장, 그리고 ‘3·1 투쟁기념 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의 회합에서 시위는 절대 금지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기념행사는 읍내에서 벗어난 서비행장에서 갖도록 통첩했다.⁶⁰⁾ 그러나 ‘3·1 투쟁기념 준비위원회’는 군정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3·1절 기념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

1-2. 응원경찰 공세기

가. ‘3·1 발포사건’과 ‘3·10 총파업’

1947년 제28주년 3·1 운동 기념일에 3만 명으로 추산되는⁶¹⁾ 군중이 제주북 국민학교에서의 기념행사를 끝내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시위행렬이 이

1, 221쪽).

56) 『제주신보』, 1947. 1. 28.

57) 『제주신보』, 1947. 2. 18.

58) 『제주신보』, 1947. 2. 26. 중앙에서 좌파 세력의 연합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이 1946년 2월 15일에 결성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년이나 늦었다. 제주도 ‘민전’ 결성대회에는 박경훈 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의 참석과 축사가 있었다.

59) 『제주신보』, 1947. 2. 24.

60)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282쪽.

61) ‘달과 개백 이래 최대 인파가 참석했다’는 이 날의 참가자수는 자료마다 다르다. 『동아일보』(1947. 3. 4), ‘조병옥 부장의 3·1사건 담화문’(『제주신보』, 1947. 3. 22), ‘제주도청 파업성명서’(『제주신보』, 1947. 3. 12) 등에는 ‘3만 군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주경찰사』(283쪽)는 2만 5천명으로, 대회 주최측의 보고자료에는 조직 군중 1만 6,600명, 미조직 군중 4천명(『남로당 제주읍위원회, 삼양1구 각 야체이카 귀중(1947. 3. 5)』, 『제주항쟁』, 181쪽)으로, 또 다른 진상보고에는 조직 군중 1만 7천, 기타 합하여 2만 5천명(『남로당 제주읍위원회, 각 야체이카 귀중(1947. 3. 7)』, 앞의 책, 185쪽)으로 기록되어 있다.

미 지나간 관덕정 광장에서 응원경찰은 시위 군중이 아닌 관람 군중을 향해 발포하였고 6명 사망·6명 중상이라는 인명 희생이 발생하였다.⁶²⁾

그러면 경찰은 왜 발포하였는가. 1946년의 '10월 항쟁'을 통해서 시위 군중들로부터 200여 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희생된 경험으로 인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육지출신 경찰들은 겁에 질려있었거나 복수심에 불타있는 상태에서 발포하였던 것 같다.⁶³⁾ 이 날 도립병원 앞에서 있었던 두 번째의 발포사건은 좌익의 시위에 대해서 응원경찰은 언제든지 발포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심리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⁶⁴⁾

충남·북의 응원경찰 100여 명으로는 시위대 해산이나 비상경계근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제주경찰은 가까운 전남경찰에 추가로 응원경찰 100명의 지원을 요청했다.⁶⁵⁾ 그리고 3월 2일부터 '3·1 시위' 주동자 검거에 나선 경찰은 '3·1 투쟁기념 준비위원회' 간부들을 검속하는가 하면 중등학생들도 잡아들였다.⁶⁶⁾ 강인수 경찰감찰청장은 "대규모의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발포하게 됐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시종일관 경찰의 발포 조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그 책임을 시위 군중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제주도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은 조직적인 반경(反警)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초기에는 뼈라를 붙이는 일과 희생자의 구호금 모금을 벌여나갔다. 뼈라를 통해서 는 발포 경찰의 처벌과 경찰수뇌부의 사퇴, 경찰의

62) '3·1절 발포사건'에 대해서는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253~296쪽 참조.

63) 조병옥 경무부장은 '3·1 발포사건'에 대한 답화문에서 "작년 '10월 폭동'의 쓰라린 경험을 참고로 하여 발포하였다"고 토로한바 있다. (『제주신보』, 1947. 3. 22).

64) 미군 정보보고서는 "도립병원 앞의 발포사건은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제주읍에서 발포했다는 경찰은 (가을 폭동 기간에) 대전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1946년 가을 좌익 폭도들에 의해 동료 경찰이 잔혹하게 당했던 사실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한미육군사령부 <주간정보요약>, 1947. 3. 9 ~ 3. 16 (No. 79)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201~204쪽).

65) 제6사단 <정보일지> 1947. 3. 1 ~ 3. 2 (No. 500) /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7. 2. 28 ~ 3. 2 (No. 469)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57쪽 / 106쪽).

66) 3월 2일 하루 동안 학생 2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연행된 학생들에게 무조건 구타와 심지가 고문까지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제주신보』, 1947. 3. 8 / 3. 14).

무장해제, 친일경찰의 축출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도·면 위원회에 당내 조직인 ‘제주도 3·1 사건 대책 남로당 투쟁위원회’(이하 ‘당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당투쟁위원회’가 3·1 사건 대책 투쟁을 전체적으로 지도하기로 하였다.⁶⁷⁾

평화적인 시위 군중에 대한 경찰의 발포에 대해서는 좌·우파 구분 없이 비난의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었다. 3월 10일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각 관공서는 물론 학교·은행·통신기관·운송업체 등 도내 156개 단체와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⁶⁸⁾ 심지어 제주출신 경찰과 미군정청의 통역까지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대파업이었다.⁶⁹⁾

애월과 대정, 중문지서에서는 지서장 이하 경찰관 전원이 동조파업에 들어가거나 사직원을 제출하고 직장을 포기하였다.⁷⁰⁾ 이들은 나중에 조병옥 경무부장의 지시에 의해 제주경찰감찰청에 설치된 사문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 처분을 받았는데 그 수가 66명에 이르렀다.⁷¹⁾ 또한 이들은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아 응원경찰에게 고문을 당하는 등 적지 않은 수난을 당했다.⁷²⁾

그러면 ‘3·1 발포사건’의 발생으로 악화일로에 있었던 제주사태와 관련하여 미군정과 경무부는 제주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가.

미군정 당국은 3월 8일 군정청 특별감찰실장인 제임스 카스텔(James A.

67) 3월 5일에 결성된 ‘당투쟁위원회’(위원장 김용관)는 3월 10일 정오를 기하여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3·1 사건의 투쟁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리·구에 당의 투쟁조직으로서 ‘민전’ 등 표면화된 대중단체의 인사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3월 9일에는 ‘제주도 3·1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순용)가 결성되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당투쟁위원회와 대책위원회의 조직방법 및 파업 후의 조직과 지도 등과 관련한 조직활동, 선전활동, 연락방법, 투쟁슬로건 등 투쟁 방법 전반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지시를 내렸다.(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184~195쪽.;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289~290쪽).

68) 『제주신보』, 1947. 3. 12.; 『독립신보』, 1947. 4. 5.

69) 『제주경찰사』는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166개 기관 단체에서 41,211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290쪽).

70)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294쪽.

71) 관서별로는 제주경찰감찰청 경사 4명·순경 6명, 제주경찰서 경사 3명·순경 39명, 서귀포경찰서 경위 1명·경사 1명·순경 12명이다.(『서울신문』·『독립신보』, 1947. 4. 2).

72)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330~331쪽.

Casteel) 대령을 반장으로 한 조사단을 급파하여 '3·1 발포사건'의 진상조사를 벌였다.⁷³⁾ 미군 조사단이 떠난 다음날인 3월 14일 제주에 내려온 조병옥 경무 부장은 제주도민을 향해 강경하고 위협적인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하였는데, '3·1 사건'을 하나의 '폭동'으로 규정하였다.⁷⁴⁾

그는 제주도청 방문(14일), 제주북국민학교에서의 시국강연(15일), 도(道) 일주의 지방순시(16~17일) 등을 통해 '제주도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매우 불온하다'거나, '조선의 건국에 지해가 된다면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민심 수습보다는 강경 대처의 입장을 밝혔다.⁷⁵⁾

조병옥은 3월 19일 귀경하면서 발표한 '3·1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답화문'(이른바 '3·19 답화문')에서 관덕정 앞의 발포는 '경찰의 정당방위'로, 도립병원 앞의 발포는 '일부 경찰관의 무사려한 행위'로 단정지었다.⁷⁶⁾ 그리고 '3·1 사건'은 좌파 세력이 '북조선의 세력과 통모'하여 일으킨 것으로 규정하였다.⁷⁷⁾

총파업에 동조한 제주출신 경찰관 6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귀향해버린 증문지서에는 3월 15일부터 20여 명의 응원경찰이 배치되었다. 김경술(金京述) 경위가 지휘하는 응원경찰대는 3·1절 행사와 총파업에 가담했던 지역 인사들을 연행하였고, 3월 17일 수감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발포함으로써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 사건도 경찰의

73) 『제주신보』, 1947. 3. 12.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미군정 당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3·1 발포사건'과 총파업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과 대응은 미군 조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미군 정보보고서와 조병옥의 '3·19 답화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74) 『한성일보』, 1947. 3. 15.

75)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319쪽, "제주도 주민 90%가 좌익"이라는 최경진 경무차장의 발언(『한성일보』, 1947. 3. 13), "최소한 제주도 주민 70% 가량이 좌익 성향을 갖고 있다"(주한미육군사령부 <주간정보요약> 1947. 3. 9 ~ 3. 16 (No. 79) - 『제주4·3 자료집-미군정보보고서』, 201~204쪽)는 미군정의 정세 분석 등으로 보아 미군정과 경무부 수뇌진은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동일했다.

76) 『제주신보』, 1947. 3. 22.

77) 『독립신보』, 1947. 3. 21. 조병옥 경무부장이 무슨 근거로 '4·3'도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그 시점에서 이 같은 '북조선 연계(통모)설'을 규정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4·3'의 발발 이후에도 '북한·소련과의 연계설' 또는 '남로당 중앙의 지령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그러한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정당방위로 간주하였다.⁷⁸⁾

전남·북의 응원경찰대가 제주에 도착하던 3월 15일부터 3·1절 행사 주도자·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속이 시작되었다. 조병옥 부장을 수행하여 입도(入道)한 장영복(張永福) 경무부 공안국부국장이 지휘한 검거작전으로 3일만에 약 200명이 검거되었다.⁷⁹⁾ 3월 말에는 검거된 숫자가 300명 정도이고 4월 10일에는 약 500명에 달하였다.⁸⁰⁾ 이 가운데는 고급관리, 경찰관, 교원, 단체간부 등 당시 제주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취조는 육지부에서 내려온 응원경찰들이 거의 전담하였다.⁸¹⁾

3월 16일에는 조병옥의 지시로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육지출신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특별수사과(과장 李虎)가 설치되었다.⁸²⁾ 제주출신 경찰관 일부가 파업에 동참하고 파면되면서 제주경찰은 이미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다. 검거자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1946년의 ‘10월 항쟁’ 사건 수사로 이름을 떨쳤던 각 관구경찰청의 사찰부서 요원들이 적지 않게 파견되었는데⁸³⁾, 수사지휘관도 격상되어 3월 말에는 제1관구(경기)경찰청 부청장 김태일(金泰日)이 수사를 총지휘하였다.⁸⁴⁾ 당시에는 일단 경찰에 연행되면 특별수사과의 강압적인 심문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3·1 사건’ 연루자들의 재판과정⁸⁵⁾에서 고문 문제가 자주 등장함으로써 확인되었다.⁸⁶⁾

78) 『제주신보』, 1947. 3. 24. ‘중문지서 발포사건’에 대해서는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346~351쪽 참조.

79) 『제주신보』, 1947. 3. 20.

80) 『제주신보』, 1947. 4. 4. / 4. 12.

81) 이운방(李運芳)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순회폭력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움을 당했다. 순회폭력이란 5, 6인의 응원경찰대가 1조가 되어 각 면의 주재소를 순회하면서 취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을 감방으로부터 끄집어내어 폭행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이들을 ‘해남부대’라고도 불렀지.”(제주4·3연구소 편, 『4·3과정』 1, 1990. 4, 87쪽). 그런데 전남 해남에서도 전년 10월에 인민항쟁이 있었다.

82) 『제주신보』, 1947. 3. 18.

83)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363쪽.

84) 『독립신보』, 1947. 4. 5.

85) 경찰에 의해 구금된 ‘3·1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군정재판은 1947년 4월 3일 개정되어 진행되다가 조선인 법정으로 이관되어 5월말까지 328명이 회부되었다. 이 가운데 실형선고는 52명에 불과하였고, 52명이 집행유예, 56명이 벌금형으로 풀려 나왔으며, 나머지 168명은 기소유예·불기소 등으로 처리되었다.(『제주신보』, 1947. 5. 26). ‘3·1 사건’

‘3·1 사건’을 전후하여 제주에 파견되었던 응원경찰관 상황을 <표 2>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⁸⁷⁾ 이 기간 중 응원경찰관의 총수는 실제 파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목포경찰 100명을 제외하더라도 421명으로 제주경찰감찰청 소속의 경찰관 수 330명(‘3·1 사건’ 발생 직전인 1947년 2월의 숫자)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표 2> 응원경찰관의 제주도 파견 상황(‘4·3’ 발발 이전)

파견 시기	응원경찰 인원수	출전	철수 시기	출전
1947. 2. 23	충남·충북경찰 100명	①	1947. 4. 초 철수	⑤
1947. 3. 1	목포경찰 100명	②		
1947. 3. 15	전남경찰 122명, 전북경찰 100명	③		
1947. 3. 18	경기경찰 99명	④	1947. 5. 7 까지 전원 철수	⑥

출전 : ① 『한성일보』, 1947. 3. 4.; 『독립신보』, 1947. 4. 5.

② 제6사단 <정보일지> 1947. 3. 1 ~ 3. 2 (No. 500) / 주한미육군사령부<정보일지> 1947. 2. 28 ~ 3. 2 (No. 469)(『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57 / 106쪽).

③ 제6사단 <정보일지> 1947. 3. 12 ~ 3. 13 (No. 511)(『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58쪽).; 『독립신보』, 1947. 4. 5.

④ 『독립신보』, 1947. 4. 5.; 『제주신보』, 1947. 3. 18.

⑤ 『제주신보』, 1947. 4. 4.

⑥ 『제주신보』, 1947. 5. 8.

미군정은 ‘3·1 사건’과 총파업 사태가 마무리되어가자 제주도의 수뇌부를 전던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1947년 3월 31일 제주경찰감찰청장에 김영배(金

공판에서는 김승문·김차봉·조한용·송성흔 등 경찰간부들의 진술을 통해 3·1 투쟁기념 준비모임은 사전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령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모임에도 경찰간부들이 배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제주신보』, 1947. 5. 8). 따라서 ‘3·1 사건은 북조선 세력과 통모하여 미군정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라는 경찰당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게 되었다.

86) 『제주신보』, 1947. 4. 22 / 4. 30 / 5. 10.

87) 육지부의 응원경찰이 시간대별로 몇 명이 파견되고 또 철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대체적인 숫자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그 기록도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英培)를 임명하고, 4월 2일에는 제주도 군정장관을 러셀 베로스(Russel D. Barros) 중령으로 교체했다. 강경 진압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한(3월 14일 제출, 4월 7일 정식 수리) 박경훈(朴景勳) 제주도지사의 후임에 ‘극우주의자’인 한국독립당 농림부장 유해진(柳海辰)⁸⁸⁾을 4월 10일자로 발령했다. 그리고 6월 초에 경찰고문관 파트리지 대위를 수도경찰청 수사와 고문관 래더루로 교체하였다.

경무부는 4월 말 제주출신 경찰관의 대량 사직과 파면으로 부족한 경찰력을 철도경찰 중심의 제주근무 희망자로 보충하였고⁸⁹⁾ 지원병력인 응원경찰은 5월 7일까지 원대 복귀시켰다.⁹⁰⁾

그러나 245명의 철도경찰이 보충되면서 제주경찰은 제주출신과 육지출신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제주에 오기 전부터 ‘3·1 폭동’을 일으킨 제주사람들에 대한 사상적인 편견과 주민들의 육지경찰에 대한 반감이 서로 맞물려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다.⁹¹⁾

4월 28일 애월면 외도지서의 주민 구타사건,⁹²⁾ 5월 하순께 한림지서의 주민 고문사건,⁹³⁾ 6월 6일에는 구좌면 ‘종달리 6·6 사건’이 발생했다. 종달리에서 민청 집회를 취체하던 경찰관 3명이 마을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자 경찰 당국은 수배 명단에 오른 71명 가운데 43명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했는데,⁹⁴⁾

88)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7. 8. 6 ~ 8. 7 (No. 601)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13쪽).

89) 『제주신보』, 1947. 4. 28.

90) 『제주신보』, 1947. 5. 8.

91)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410~411쪽.

92) 『제주신보』, 1947. 5. 10.

93) 한림지서장인 김병덕(金炳惠) 경위와 차석인 김석규(金錫圭) 경사가 민간인 2명에게 고문을 자행한 사건. 문제가 되자 경찰당국에서도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을 전격 구속하고 파면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고문경찰관에 대한 구속 1호로 기록되었다.(『제주신보』, 1947. 5. 26 / 6. 16).

94) 『제주신보』, 1947. 6. 18 / 6. 22 / 7. 12 / 8. 2. 집단폭행 당한 경찰관 3명 중 김순형(金淳亨), 최한수(崔漢洙)는 치료 중 사망하고, 황종옥(黃鍾郁)은 불구자가 되었다는 기록(강용삼·이경수, 『대하실록 제주백년』, 610쪽.;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296쪽)은 신빙성이 없다. “그 당시에 죽은 경찰관은 없다”는 증언과, ‘6·6사건’ 관련자 중 최고형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주모자급인 종달리 민청 부위원장 부옥만(夫玉萬)이 만기 출소할 때까지 적용된 형법은 살인죄나 폭행치사죄가 아닌 상해죄인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제민

이 과정에서 이들 검거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⁹⁵⁾

그리고 경찰의 비리가 불거져 제주경찰서 강동효 서장과 김승문(金升文) 수사제장이 5월 22일 수뢰혐의로 구금되었다.⁹⁶⁾ 이에 따라 제주경찰서장에 제주 출신 김차봉 경감이 발령을 받았으나 제주와 육지출신 경찰간의 갈등으로 3개월만에 경찰복을 벗게 되었고,⁹⁷⁾ 그 후임에 평남출신의 문용채가 임명되었다.

나. '1·22 검거사건'과 '2·7 사건'

미군정과 경무부는 1947년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의 경찰력 증강과 우익세력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였다. 먼저 제1선의 치안유지 강화를 위해 5월 10일부터 제1구서 관내 동문통·서문통·남문통·화북에 파출소를 설치하는 등 경찰관서의 증설을 서둘렀다.⁹⁸⁾ <표 3>은 제1·2구 경찰서 산하의 지·파출소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제주근무를 자원했던 철도경찰 중심의 육지출신 중에 현지에 적응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높은 이직율과 제주도를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경무부는 하루마베 제주경찰관을 증원해야 했다. 이미 계획 중에 있던 제주도 경찰학교를 신설, 신규교육을 위한 교습과를 설치하고 1947년 7월부터 1개월 전후의 단기교육을 거쳐 정기적으로 경찰관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⁹⁹⁾

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450쪽).

95)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444~451쪽.

96) 『제주신보』, 1947. 5. 26.

97) 강용삼·이경수, 『대하실록 제주백년』, 태광문화사, 1984, 572쪽.

98) 『제주신보』, 1947. 5. 14.

99) 제주도 경찰학교가 신설될 계획임을 보도하고 있는 『제주신보』(1947. 1. 26)의 기사로 보아 '신우관 감찰청장 독직사건', '3·1 발표사건' 등으로 그 설치를 미루다가 총파업 사태가 진정되면서 도경찰학교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46년 2월 1일 제주도 경찰학교를 설치했다는 「제주경찰사」(91쪽/179쪽)의 기록은 오기로 보인다.

<표 3> 제주경찰감찰청의 경찰관서 현황

(1947. 3. 1 현재)

경찰서	관할	지서	파출소	출장소	파견소	합계
제1구 경찰서	북제 주군	삼양, 조천, 함덕, 김녕, 세화, 외도, 애월, 한림, 두모, 고산		추자	우도, 저지	13개소
제2구 경찰서	남제 주군	성산, 신산, 표선, 남원, 신호, 중문, 안덕, 모슬포				8개소

(1948. 4. 3 현재)

경찰서	관할	지서	파출소	출장소	파견소	합계
제1구 경찰서	북제 주군	삼양, 조천, 함덕, 김녕, 세화, 외도, 애월, 한림, 두모, 고산, 우도, 저지, 신업, 화북	남문, 동문, 서문, 수상	추자		19개소
제2구 경찰서	남제 주군	성산, 신산, 표선, 남원, 신호, 중문, 안덕, 대정(모슬포), 무릉, 서호				10개소

출전 :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91~132쪽.¹⁰⁰⁾

<표 4>에서 보듯이 1947년 하반기에만 146명의 신규 경찰관이 배출되어 일선 경찰서와 지서 등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증원조치 등으로 1947년 12월에 이르자 제주경찰의 인원은 465명으로 늘어났는데(<표 1> 참조), 이 증가폭은 전국 다른 지역의 경찰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었다. 해방 당시의 경찰과 1947년 말의 경찰관 인원을 비교하면 2배 가량 증가한 셈인데 비해,¹⁰¹⁾ 제주경찰은 같은 기간에 4배 이상 증원되었다.

제주경찰학교에 의한 신규 경찰관의 배출은 계속되어 1948년 한해만도 단기 교육을 거쳐 배출된 경찰관이 344명에 달하였다. 제주경찰학교를 통해서 임용

100) 두모파출소(1946.3)→ 두모지서(1947.2), 우도파견소(1945.10)→ 우도지서(1948.3), 저지파견소(1946.3)→ 저지지서(1948.3), 신산출장소(1945.10)→ 신산지서(1946.12), 무릉출장소(1947.11)→ 무릉지서(1948.3), 서호지서(1948.3). 그런데 지·파출소 연혁에는 신업지서와 화북지서에 대한 기록이 없다.

101) 해방 이후 남한의 경찰관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1945년 11월 현재 15,000명(미국 동군총사령부(GHQ/FEC) 정보치 <주한미군경찰동요약> 1947. 3. (No. 18)(신상준, 앞의 책, 604쪽). ②1946년 중반기 23,655명(조선통신사, 『조선연감(1947년판)』, 1946, 153쪽). ③1947년 8월말 현재 28,852명(조선통신사, 『조선연감(1948년판)』, 1947, 314쪽).

된 경찰관들 중에는 제주출신들이 많았으나 의외로 서청출신들도 상당수 끼어 있었다. 특히 '4·3 봉기'가 일어난 후에는 서청이나 대동청년단(이하 '대청') 등 우익청년단체 출신들이 무더기로 임용되기도 하였다.

<표 4> 제주도 경찰학교 (교습과) 졸업인원

기 별	교육기간	졸업인원	기 별	교육기간	졸업인원
1	1947. 6. 1* - 1947. 7. 31	26**	14	1949. 2. 11 - 1949. 2. 25	40
2	1947. 8. 3 - 1947. 8. 31	60	15	1949. 4. 5 - 1949. 5. 3	40
3	1947. 9. 20 - 1947. 10. 9	32	16	1951. 10. 5 - 1951. 11.30	49
4	1947. 11. 1 - 1947. 11.30	28	17	1951. 12.23 - 1952. 2. 5	53
5	1947. 12.13 - 1948. 1. 13	26	18	1952. 2. 20 - 1952. 3. 10	30
6	1948. 2. 25 - 1948. 4. 3	35	19	1952. 7. 1 - 1952. 7. 31	37
7	1948. 4. 23 - 1948. 5. 8	47	20	1952. 8. 1 - 1952. 8. 31	64
8	1948. 6. 5 - 1948. 6. 30	50	21	1952. 9. 10 - 1952. 10.20	50
9	1948. 11.18 - 1948. 12. 2	58	22	1952. 11.15 - 1952. 12.24	29
10	1948. 12. 8 - 1948. 12.25	128	23	1953. 4. 9 - 1953. 5. 10	43
11	1949. 1. 4 - 1949. 1. 10	54	24	1953. 5. 16 - 1953. 6. 16	42
12	1949. 1. 12 - 1949. 1. 24	38	25	1953. 6. 19 - 1953. 7. 11	87
13	1949. 2. 5 - 1949. 2. 11	93	계		1,239 명

출전 :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182~183쪽.

* '약 3주일에 걸쳐 학습 교련의 강습을 마치고 7월 31일 제1기 졸업식을 거행하였다'는 기사(『제주신보』, 1947. 8. 2) 내용으로 보아 제1기생의 교육기간은 7월 중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경찰사』에는 제1기 수료생이 26명인데 비해 『제주신보』(1947. 8. 2)에는 3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8월에 접어들면서 집회와 배라를 강력 단속하던 경찰은 13일 조천면 북촌리에서 주민들과 충돌하였고, 40명을 검거하여 이 가운데 22명을 송치하였다.¹⁰²⁾

8·15 해방 기념일을 계기로 좌파 세력에 대한 대규모 검거작전에 들어간 경찰은 8월 14일 박경훈(朴景勳) 의장을 비롯한 '민전' 간부와 남로당원, 도청 직원 등 30여 명을 검거하였다.¹⁰³⁾ 그런데 이들 연행자들을 미 CIC와 경찰·검찰

102) 『중앙신문』, 1947. 8. 17. 이 '북촌 배라사건'은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456~465쪽 참조.

103) 박경훈 전 제주도지사와 '민전' 관계자들의 검거는 8·15 기념일을 전후하여 좌익측에

이 합동으로 취조하였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자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¹⁰⁴⁾

한편 인민위원회·민청 등 좌파 세력에 밀려 맥을 쓰지 못하던¹⁰⁵⁾ 제주도의 우파 진영은 1947년 ‘3·1 발포사건’ 이후 경찰력이 좌파 세력을 대거 탄압함으로써 조직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¹⁰⁶⁾ 그리고 서청을 비롯한 우익청년단원들이 9월 7일 제주도식량사무소장 박태훈(朴泰勳) 집단 구타사건, 9월 8일 제주중학교장 현경호(玄景昊)의 부인 폭행사건 등을 일으키면서 백색테러가 횡행하기 시작하였다.¹⁰⁷⁾

우파 세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10월에 ‘대청’ 제주도지단부(단장 金忠熙→金仁善), 11월에 ‘서청’ 제주도지부(위원장 張東春→金在能), ‘조선민족청년단’ 제주도단부(약칭; ‘족청’, 단장 白燦錫)가 결성되었다. 이미 활동 중에 있던 ‘대한독

서 전국적인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위 ‘8·15 폭동음모설’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의 내용을 문제삼아 경찰에서 체포한 것이었다. 박경훈 전 지사가 공동의장으로 있는 ‘민전’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내기로 하고 경찰의 허가를 받아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경찰과 법원 관계자들은 진정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1947년 8월 14일 박경훈 전 지사 등을 체포했다. 곧 제주도 군정장관 베로스 중령과 유해진 도지사·경찰·검찰·법원 간에 좌우익 논쟁이 벌어졌다. 제주도 군정장관은 ‘민전’은 정당하게 등록된 합법적인 단체이며, 박경훈 전 지사를 중도파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삭제하고 기소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박경훈 전 지사 등이 정치적 사념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베로스 중령의 조치에 대해 군정청 사법부와 특별감찰실에서 조사를 벌이게 되었다. 사법부 고문관 존 커넬리 2세(John W. Connelly, Jr)는 조사 결과 미국의 국익을 고려해서인지 박경훈 전 지사 등이 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군정장관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로렌스 넬슨(Lawrence A. Nelson) 중령은 ‘미소공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내기를 희망했던 좌익 인사들에 대한 기소는 불법’이라는 관정을 내렸다.(<넬슨 특별감찰보고서-제주도 정치상황, 1-1, 1-4, 1-5, 1-6, 1-7, 1-19, 1-31, 1-32> -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425~429 / 433~439 / 461~462 / 476~480 쪽).

104) 『제주신보』, 1947. 8. 20.

105)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7. 3. 25 ~ 3. 26 (No. 489)(『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10쪽). ; 金仁善의 증언(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491쪽에서 재인용).

106)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7. 5. 2 ~ 5. 3 (No. 521)(『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10쪽).

107) 『제주신보』, 1947. 9. 10. ;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7. 9. 12 ~ 9. 13 (No. 632)(『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14쪽).

림측성전국청년총연맹'과 '한국광복청년회'가 '대청'의 조직 구성을 둘러싸고 서로 성격이 다른 대회를 발족시키며 대립하고 있을 때,¹⁰⁸⁾ 미 CIC가 개입하여 이를 통합시키는 등 미군정과 경찰은 우파 진영의 세력 확장을 본격적으로 거둬들고 나섰다.¹⁰⁹⁾ 또한 경찰후원회가 결성되면서¹¹⁰⁾ 각 지서마다 '지서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제주도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었다.¹¹¹⁾

1948년 1월 증순경 경찰은 남로당 '당세포'를 검거한데 이어 도당부 조직부 '연락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의 '전향'으로 베일에 가려있던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조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경찰은 1월 22일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가 회합을 갖고 있던 조천면 지부를 덮쳐 106명을 체포하였다. 1월 26일 까지 전도에 걸쳐 115명을 추가로 검거했는데, 총 연행자 221명 중에서 63명이 경찰의 심문을 받고 방면되었다.¹¹²⁾

이른바 '1·22 검거사건'으로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는 남로당 제주도당 안세훈(安世勳) 위원장을 비롯해 김유환(金瑬煥), 김은환(金閔煥), 김용관(金龍寬), 이좌구(李佐九), 이덕구(李德九), 김양근(金良根), 김대진(金大珍) 등 거물급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김달삼(金達三)은 불합허 경찰서로 연행되어 오다 관덕정 앞에서 도주했고, 조몽구(趙夢九)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피신했다.¹¹³⁾

경찰은 '8·15 폭동음모사건'처럼 검거 선봉을 일으켜 놓고도 폭동 지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한데다, '5·10 선거'를 앞두고 미군정에서 정치범에 대한 특사령을 발동하자 제주도 남로당의 거물급 인사들까지 '4·3' 이전 에 모두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22 검거사건'은 조직의 노출이란 치명타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지도부층이 젊은 강경파들에 의해 주도되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무장투쟁의 필연성이 강력하게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¹¹⁴⁾

108) 『제주신보』, 1947. 10. 4 / 10. 6.

109)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7. 10. 13 ~ 10. 14 (No. 658) / 1947. 10. 23 ~ 10. 24 (No. 667)(『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교서』, 116쪽).

110) 『제주신보』, 1947. 10. 22 / 10. 24.

111)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511~512쪽.

112)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2. 6 ~ 2. 7 (No. 753)(『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교서』, 119쪽).

113)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527~530쪽.

1948년 2월 남로당의 이른바 ‘2·7 구국투쟁’에 대비하여 제주경찰은 비상경계에 돌입하였다. 육지와는 달리 2월 7일 당일에는 조용하였으나¹¹⁵⁾ 2월 8일부터 함덕·성산포 등 곳곳에서 단선 반대의 군중시위가 벌어졌다.¹¹⁶⁾

2월 9일에는 안덕면 사계리에서 경찰관 납치사건이 발생하여 경찰관 2명이 마을 청년들로부터 구타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¹¹⁷⁾ 같은 날 함림면 저지지에서 청년들에게 피습 당했다. 2월 11일에는 고산에서 수십 명의 민중이 고산지에서 습격을 시도하는 바람에 경찰이 발포하여 1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도 일어났다.¹¹⁸⁾ 마을 단위의 산발적인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자 경찰은 전도에 걸쳐 시위 주도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검거에 들어갔다.¹¹⁹⁾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여 취조를 한 뒤 훈방의 조건으로 『제주신보』에 남로당 탈퇴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 1947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탈퇴 성명은 처음에는 개인 명의로 발표하더니 1948년 ‘2·7 사건’ 이후에는 마을 단위의 당원 명부가 경찰에 의해 발각되면서 집단으로 발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¹²⁰⁾

1948년 3월로 접어들면서 경찰은 고문 치사사건을 잇달아 일으켰다. 경찰은 3월 6일 조천중학원 2학년 학생 김용철(金用哲)을 고문 치사한 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¹²¹⁾ 3월 14일에는 대정면 영락리 청년 양은하(梁銀河)를 고문 치

114)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534쪽.

115)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2. 13 ~ 2. 14 (No. 759)(『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19쪽).

116) 『제주신보』, 1948. 2. 12.

117) ‘사계리 경찰관 구타사건’은 『제주신보』(1948.2.12.)의 사계리 사건에 대한 문용체 제주경찰서장의 담화에 의하여 ‘경찰관 생매장 미수사건’으로 왜곡 발표되었고, 『제주도지(상)』(1982, 455쪽)와 『제주경찰사』(1990, 296쪽)에는 ‘2월 7일 서광리 경찰관 생매장사건’으로 왜곡되어 관련 자료 등에 반복 인용되어 왔다. ‘사계리 경찰관 구타사건’의 실상은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542~546쪽 참조. 그리고 2월 14일 김영배 경찰감찰청장의 ‘30만 도민에 고향’이라는 담화에는 “안덕면 사계리에서는 경관 납치사건이 발생...”으로 사건의 실상을 바로 잡고 있다.(『제주신보』, 1948. 2. 16).

118) 『제주신보』, 1948. 2. 14.;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547~549쪽.

119) 김영배 제주경찰감찰청장이 밝힌 ‘2·7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경찰지서 및 출장소 피습 6개소, 경찰관 중상 2명·경상 2명·가족 경상 1명, 양민측 피해 3명 구타, 폭도 부상 1명, 테러 9건, 방화 1건, 분화 1건, 시위운동 19건, 교통차단 5개소, 금번 폭도에 가담한 자 약 7,000명, 검거인원 약 200명”(『제주신보』, 1948. 2. 20).

120) 『제주신보』, 1947. 12. 22 / 1948. 2. 22 / 2. 24 / 3. 12 / 3. 30 / 4. 12.

사하였고 사체를 암매장하려 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¹²²⁾ 3월 29일 경찰과 서청단원들이 한림면 금릉리 청년 박행구(朴行九)를 집단 구타한 후 연행하다가 총살하였다.¹²³⁾

이러한 일련의 고문 치사사건은 제주도민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시켰고 ‘4·3’의 발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 ‘민청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제주 청년들은 검거 선포 이후 경찰이든 군인이든, 혹은 대청 같은 우익청년단체에 가담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섬 밖으로 피신하거나 산행하는 길이 남아 있었다. 무언가 선택하지 않고는 버텨 나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려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¹²⁴⁾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에 따른 미군정과 좌·우파 간의 대립으로 육지부에서는 좌파 세력에 의한 시위·지서 습격 등이 2월과 3월 중에 빈발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3월 2일의 함덕지서 습격 시도를 제외하고는 ‘2·7 사건’ 이후 ‘4·3’의 발발 전야에 이르기까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무장투쟁 노선으로 전환한 남로당 제주도당은 지도부의 교체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지역별로 이른바 ‘자위대’를 편성, 한라산의 각 오름에서 무장투쟁을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다. 간헐적으로 입산 청년들의 무장준비 사실이 포착되고 경찰 상부에 보고되었지만, 경찰의 대응태세는 의외로 소극적이어서 후속 조치가 없었다.¹²⁵⁾

121) 『제주신보』, 1948. 3. 12.;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560~564쪽. 이 사건으로 조한용(趙漢龍) 조천지서장을 비롯하여 경대용(鄭大用)·정명옥(鄭明玉)·김천일(金天一)·백옥윤(白玉允) 등 경찰관 5명이 구속되었고, 모두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동신문』·『조선일보』, 1948. 5. 9).

122) 『제주신보』, 1948. 3. 16.;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569~573쪽. 사건이 문제화되면서 조제수(趙才秀) 모슬포지서장을 포함하여 변태문(邊太文) 형사·전인기(田仁基)·남방우(南芳祐)·송윤조(宋允祚)·고응춘(高應春) 순경 등 6명 모두에게 징역 3~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조선일보』, 1948. 6. 15). 그런데 조제수 지서장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성산포경찰서장·서귀포경찰서장·제주도경 수사과장·경무과장을 지낸다.

123)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575~577쪽.

124)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 363~367쪽.

125) 당시 경찰관 문장송(文昌松)의 증언에 의하면, 3월 중순께 애월지서로부터 중산간지대인 어도지경 ‘셋별오름’ 부근에서 ‘청년들이 무장훈련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당시 문용재 경찰서장과 애월지서장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훈련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제민일

2. '4·3'의 발발 이후

2-1. 군·경 갈등기

좌익의 무장봉기가 시작된 1948년 4월 3일 새벽, 도내 24개 지서(앞의 <표 3> 참조) 가운데 11개 지서(제주서 관내 화북·삼양·조천·세화·외도·신엄·애월·한림지서와, 서귀포서 관내 성산·남원·대정지서)가 공격을 받았고, 동시에 경찰과 우익단체 간부의 집이 습격당했다.¹²⁶⁾

'4·3 무장 봉기' 발생 초기에 다른 지방의 소요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한 미군정은 이를 '치안 상황'으로 간주하고 '경찰 작전'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봉기 발생의 급보를 받은 조병옥 경무부장은 조기 진압의 방침을 정하고, 4월 5일 약 100명의 전남경찰을 응원대로 급파하는 동시에 김정호(金正浩) 경무부

보 4·3취재반, 앞의 책 1, 588~589쪽).

126) 아래 <표>는 '1948년 4월 3일' 당일의 피해 상황을 비교해 본 것이다.

구분	피습	인명 피해								건물·기타 피해			
		우익 지서	경찰 사무소	사망	부상	행불 남치	일반인 사망	부상	무장대 사망	지서 파괴	일반가옥 파괴	전화	도로
①제주청	13	1	4	7	2	7	13	3	3	2	1	2	
②조병옥	11		4	7	3	10	32			3	6	4	9
③경미사			4	6	2	7	34	10	4	1	12	4	
④제민일보	11		4	8	2	8	19		3	1		4	

출전 : ①제주경찰감찰청장 발표(『독립신보』, 1948. 4. 7). ②조병옥 경무부장 담화(『서울신문』, 1948. 4. 7). ③제주비상경비사령부 발표(『제주신보』, 1948. 4. 12.; 『조선중앙일보』, 1948. 4. 14). ④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40~41쪽.

자료마다 습격받은 경찰지서 숫자가 다르다. 제주경찰감찰청장은 13개 지서 피습, 조병옥 경무부장은 15개 지서 중에 11개 지서 피습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주경찰사』(324쪽)에는 29개 지·파출소 중에 14개 지서 피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제민일보 4·3취재반은 '4월 3일' 당일 함덕·고산·저지지서 등은 습격을 받지 않았고, 성산·애월·삼양지서는 습격을 받고도 인명 피해가 없었음을 밝혀냈다. 여기에서 경찰관 희생자 4명은 화북지서의 김장하(金章河), 남원지서의 고일수(高一秀), 한림지서의 김록만(金祿萬), 외도지서의 선우중태(鮮于仲泰) 순경이다. '1948년 4월 3일' 단 하루의 상황 기록만 보더라도 기존의 '4·3' 관련 자료 가운데는 사실이 왜곡됐거나 과장된 것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안국장 및 그 대원을 특파하였다.¹²⁷⁾

같은 날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김정호)가 설치되었는데, 김정호 사령관은 사건의 윤곽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 폭동사건은 육지부에서 침입한 악질불량 도배들이 도민을 선동시켜 야기된 것”으로 규정지었다.¹²⁸⁾ 이어서 그는 4월 8일 도내 치안 수습을 위한 포고문을 발표했지만¹²⁹⁾ 사태의 진정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김정호 사령관은 육지에서 파견된 응원경찰대로 각 지서의 병력을 보강하고 특별경찰토벌대를 편성하여 무장대의 주력을 수색 격멸하는 작전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무장대를 앞잡아보고 “반도 소탕은 1주일이면 결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¹³⁰⁾

‘4·3’의 발발 당시에 무장대의 병력은 ‘주력부대 500명 미만, 동조 가담자 1,000~3,00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고,¹³¹⁾ 이들의 무기라고 해야 일제 38식과 99식 소총 30정 정도에 일본도·낫·죽창·철창·사제수류탄과 폭발물·폭팽이 등으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¹³²⁾

이에 비해 경찰은 일제 때의 장비뿐만 아니라 미제 카빈 소총과 경기관총, 미군용 차량, 독자적인 전화와 무선망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최신식 무기와 기동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무장대에 대한 전투정보나 구체적인 실전 준비도 없는 성급한 작전으로 경찰의 사기는 떨어지고, 무장대의 세력은 강해져서 경찰은 제주읍내를 수비하는 데도 급급했다.¹³³⁾

127) 『독립신문』·『서울신문』, 1948. 4. 7.; 『동광신문』, 1948. 4. 8.

128) 『제주신문』, 1948. 4. 8.

129) 『제주신문』, 1948. 4. 10. 포고문은 부락별로 향보단 조직과 교통로 보수, 폭도의 귀순 촉구, 사설청년단체의 무기회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30) 『동아일보』, 1948. 4. 30.

131) ‘4·3 무장대’의 숫자는 자료마다 다르다. ① 무장폭도 500명, 지방폭도 1,000명(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11쪽). ② 500~600명(대검찰청, 『좌익사건실록 제1권』, 1965, 380쪽). ③ 300~400명(김대봉 경무부 공보실장의 기자회견 - 『조선일보』, 1948. 5. 6). ④ 300명(김익철, 『4·3의 진실』, 『4·3은 말한다』 2, 1994, 299쪽). ⑤ 3,000명(김봉현·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제주민중항쟁』 1, 1988, 220쪽). ⑥ 주력 500명, 동조자 3,000명(존 메릴, 앞의 글, 167쪽).

132)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95~98쪽.

이에 따라 경무부는 4월 10일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을 제2차 응원대로 파견하였다.¹³⁴⁾ 그리고 김영배 경찰감찰청장이 모슬포 주둔 경비대 제9연대를 직접 방문하여 경비대 병력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¹³⁵⁾ 미군정은 제주도 도령을 공포하여 선박의 출·입항을 금지함으로써 외지와의 해상교통을 일체 차단하고 미군합정을 동원하여 해안을 봉쇄하였다.¹³⁶⁾ 이어서 경찰력만으로 제주사태 해결의 한계를 인식한 미군정은 4월 17일 제9연대에 경찰의 협조 아래 진압작전에 참가할 것을 명령하였다.¹³⁷⁾

경비대의 개입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경무부는 표면적으로는 선무공작을 실시하는 것처럼 하면서 강력한 소탕전을 펼칠 준비를 하였다. 선무공작을 위해 파견된 김대봉(金大奉) 경무부 공보실장은 입도(入道) 다음날인 4월 17일 기자회견과 회견하고 “지난 ‘3·1 사건’에서 ‘2·7 사건’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잘못된 행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한다”¹³⁸⁾면서 사태 수습에 애를 썼다.

그러나 4월 18일 김정호 사령관이 발표한 ‘사건 진압을 위한 경고문’은 김대봉 실장이 4월 16일에 대신 발표한 조병옥 부장의 ‘도민에 고향’이라는 선무문의 내용처럼 강경 기조를 띠고 있었다.¹³⁹⁾ 이들 발표문에서 경무부 수뇌진은 무턱대고 ‘4·3 봉기’를 소련의 사주를 받은 ‘외부의 지령설’과 ‘국제공산주의와

133) 경찰의 사기 저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① 4월 7일 한림면 저지서에서는 무장대가 접근해오자 경찰관들이 겁을 먹고 지서를 포기하고 모두 도주해 버렸는데 비어버린 지서건물은 무장대에 의해 전소되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68쪽). ② 경찰도별대가 폭도와 조우하면 원거리 사격만 할 뿐 전진하는 자가 없었다. 200~300미터의 거리를 두고 돌담 뒤에 숨어서 몇 시간씩이나 사격만 하고 전진할 생각을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폭도들이 용감하게 돌격해오면 도별대는 전의를 잃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을 친다.(김익철, 앞의 글, 302쪽).

134) 『동광신문』, 1948. 4. 13.

135) 9연대 정보주임 李允洛의 증언(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118쪽에서 재인용).

136) 『조선일보』, 1948. 4. 13.; 『동아일보』, 1948. 4. 17.

137) 육군본부, 앞의 책, 11쪽.(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122쪽에서 재인용).

138) 『제주신보』, 1948. 4. 18. 제주출신인 김대봉 실장은 “청년단체가 경찰에 협조하는 것은 좋으나 그 기회를 얻어서 무기를 갖고 테러·폭행·그 외의 경찰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제주도의 언론인이 일부 말단 경관에 의하여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들었으면서 “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양성할 것이며 언론인을 통하여 참다운 여론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139) 『제주신보』, 1948. 4. 18 / 4. 20.

의 연계설'에 의한 것으로 물고 갔다. 그리고 김대봉 실장의 노력과는 반대로 경무부는 제주도 유일의 신문인 제주신보사의 송신기를 차압함으로써 언론에 족쇄를 채워버렸다.¹⁴⁰⁾

제속 수세에 몰리던 경찰은 4월 말에 이르자 그 동안의 추락한 위신을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토벌전을 전개하였다. 제주비상경비사령부가 발표한 인명피해 통계를 보면, 적어도 1948년 4월은 무장대의 일방적인 공세기였음에도 '폭도'의 사망자가 경찰관이나 일반인(우익·양민) 보다 더 많으며, 4월 20일 이후에는 '폭도'의 사망자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군 정보보고서가 '폭도'의 사망자에 대해서 축소 기록의 의혹을 받거나 신원 미확인자 사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¹⁴¹⁾ '초도화작전'은 아닐지라도 4월 말에는 경찰에 의해 이미 '무차별' 토벌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¹⁴²⁾

위상문제를 비롯하여 평소 경찰과 갈등을 빚어온 경비대는¹⁴³⁾ '4·3' 사태를

140) 『독립신보』, 1948. 4. 28.

141) 다음은 '4·3'이 발발한 '4월의 사망자'를 비교한 <표>이다.

구분	제주비상경비사령부 발표		미군당국 발표	
	① 4. 3 - 4. 19	② 4. 3 - 4. 25	③ 4. 2 - 4. 26	④ 4. 3 - 4. 29
경찰관	7	7	8	9
일반(우익·양민)	25	32	28	25
폭도	29	47	15	12
신원미확인자				19

출전 : ① 『조선중앙일보』, 1948. 4. 23. ② 『서울신문』, 1948. 5. 3. ③ 『동아일보』, 1948. 4. 29. ④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4. 30 ~ 5. 1 (No. 823)('제주 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19쪽).

142) '4·3' 초기 경찰에 의한 초도화작전은 당시 9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중령의 주장(김익렬, 앞의 글, 301~305쪽)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미군은 '경찰의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제주경찰감찰청에서는 4월 2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공산폭도들이 숨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들을 기습하여 60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기록만 남기고 있다.(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4. 26 ~ 4. 27 (No. 819)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24쪽).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육군 중과와 만주군 대위로 근무했던 김정호 사령관과 문용채 제주경찰서장의 경력으로 보아 초도화작전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추정된다.

143) 경찰과 경비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갈등 관계가 있었다. ① 경찰은 경비대를 '경찰의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경찰 예비대'로 규정한 반면에, 경비대는 '경찰의 보조적 역할'을 부정하고 국군의 모체가 될 '국군 예비대'로 생각하고 있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112쪽). ② 경찰은 경비대를 좌익분자가 많이 침투되어 있는 믿을 수 없는 불온집

제주도민과 경찰간의 싸움으로 간주하여 이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게다가 무장대는 경찰이라고 하면 생사를 결단하고 덤벼들다가도 경비대가 나타나면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등 경비대를 적대시하지 않았다.¹⁴⁴⁾

경찰력의 한계를 느낀 미군정이 9연대에 재산(在山) 무장대의 진압을 명령하였으나, 김익렬(金益烈) 연대장은 경찰의 토벌 위주의 작전으로 오히려 입산자만 양산시켰다고 분석하고, 제주도 군정장관 존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대령과 연대고문 드루스 대위와의 협의를 거쳐 ‘화평·구순 공작’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¹⁴⁵⁾

4월 20일쯤부터 무장대와의 연락을 시도하던 김익렬 연대장은 정보주임 이윤락(李允洛) 중위를 대동하고 4월 28일 무장대 총책임 김달삼(金達三)과 협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들은 가까스로 3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 이른바 ‘4·28 평화협상’을 이끌어냈다.¹⁴⁶⁾

대립과 갈등을 내재해 온 경찰과 경비대는 ‘4·28 협상’의 추진과 타결을 둘러싸고 마침내 충돌하게 되었다. 그 동안 ‘공산 폭동’ 운운하면서 조기의 무력진압을 장담해온 경찰은 김익렬 연대장의 ‘화평 정책’에 몹시 당황해 했고, ‘4·28 협상’이 벌어지던 날 김정호 사령관은 제주를 떠나 급히 상경했다. 경찰의 현지 토벌사령관으로서 조병옥 부장 등 당시 경무부 수뇌부에게 현지의 급박한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일제 지배하에서 ‘사전경험’을 쌓았던 친일협력자에 의해 장악되었고 이데올로기적 색깔은 명백히 우익이었으며, 그들의 취조방식은 민중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각종 고문을 사용하는 등 구식 관행을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반대하는 자들이 경비대에 입대하였으며, 이들 집단 사이에는 때때로 충돌이 일어났다.(존 메릴, 앞의 글, 174쪽). ③ 당시 경비대는 주식·부식은 물론 전투장비 보급에서도 경찰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졌다. 9연대의 장비는 구 일본군이 사용하던 낡은 99식 소총 정도인데 반해, 경찰은 미제 카빈 소총과 기관총, 미군 수송장비에 신식 무전기 등 상당한 기동력과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김익렬, 앞의 글, 276~277쪽).

144) 조덕승, 「유혈의 제주도」, 『신천지』, 1948년 7월호(『제주민중항쟁』 3, 소나무, 1989, 48쪽). 무장대는 경찰 살해에 순경 1만원, 경사급 1만 5000원, 경위급 이상 2만원의 보상을 걸었다.(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4. 7 ~ 4. 8 (No. 803)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20쪽).

145) 김익렬, 앞의 글, 307~309쪽.

146) 김익렬, 앞의 글, 326~329쪽 참조.

그런데 김정호 사령관은 귀경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사태와 관련하여 제 산 무장대의 숫자 및 군사 장비, 외지와의 연락 가능성, 백정 출신의 폭도 등등 터무니없는 낭설을 유포하기도 하였다.¹⁴⁷⁾

한편 국제정치 문제와 관련하여 본국 정부로부터 조기 진압의 압력을 받고 있던 군정장관 윌리엄 딘(William F. Dean) 소장¹⁴⁸⁾은 김익렬 연대장에게 그의 정치고문을 파견하여 조속한 진압과 초토화작전의 실행 설득을 시도하였다.¹⁴⁹⁾ 그러나 설득에 실패하고 '4·28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딘 소장은 4월 29일 황급히 제주 현지로 내려갔다.¹⁵⁰⁾

이처럼 딘 소장과 경무부 수뇌부는 '4·28 평화협상'을 파기시키고 '공산분자'들을 조속히 '토벌'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음을 공감하고 있었다. 상황을 반전시킬 계기가 필요했던 이들에게 4월 30일 제주읍 오라리에서 발생한 대청단원부인 피살사건은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딘 소장을 수행하여 제주에 온 미군 정보기관의 장교와 경무부의 지시를 받은 제주경찰감찰청(청장 최천, 부청장 박근용)은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역할을 분담하였을 것이다.

이리하여 5월 1일 장례식이 끝난 후 서청과 대청단원들을 동원하여 방화사건을 일으키고,¹⁵¹⁾ 불타는 오라리 마을을 무대로 미군 촬영반의 '입체 촬영'¹⁵²⁾과

147) 김정호 사령관의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이다.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 반도들이…약 3개월을 지탱할 식량과 우수한 군비를 가지고…그 지도자는 상당한 병법의 훈련을 받고 실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도를 체포·문초하여 보면 대개 백정들로 좌익 계열에서는 일부러 잔악한 살인을 감행하기 위하여 남조선 각지로부터 백정을 모집하여 다 제1선에서 경찰관과 그 가족, 선거위원 등을 살해하는 도구로 쓰는 형편이다.”(『동아일보』·『자유신문』, 1948. 4. 30).

이에 반하여 4월 28일 제주를 떠나 5월 4일 귀경한 김대봉 공보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폭동에 팔도군이 참가하였다는니 기관총을 가지고 있느니 하는 풍설이 있었으나 그것은 전연 낭설이고, 폭도들은 주로 제주도민이며 그 수효는 약 300~400명으로 추측되고 있다”면서 외부와의 연계설을 부인하고 있다.(『조선일보』, 1948. 5. 6).

148) 김익렬은 그의 유고에서, 4월말 소련이 ‘제주 4·3 봉기’와 관련하여 미군정의 실정을 문제삼자 미국 정부가 딘 소장에게 ‘조속한 진압’을 명령했으며, 소련의 선전공세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제주사태를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하라는 지시도 내려갔다고 하였다.(김익렬, 앞의 글, 307~308쪽).

149) 김익렬, 앞의 글, 312~314쪽.

150) 『서울신문』, 1948. 5. 4 / 5. 7.

151) 당시 9연대장과 연대 정보주임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경찰의 후원을 받은 ‘우익단체

동아일보 기자의 ‘중군 르포’ 기사¹⁵³⁾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윤락 9연대 정보주임의 주장처럼 ‘제주학살을 점화시킨 역사적인 계기가 된 오라리사건’¹⁵⁴⁾은 미군정과 경찰의 계획적인 음모로 탄생한 합작품인 셈이었다.

김정호 사령관이 제주 현지에 다시 귀임한 직후인 5월 3일에는 미고문관 드루스 대위의 인솔 아래 하산한 200여 명의 귀순자를 제주비행장에 설치한 수용소로 호송해오는데, 정체불명의 무장대로부터 총격을 받은 ‘5·3 기습사건’이 터졌다.

미군들이 즉각 반격하였고 부상당한 무장대를 생포하여 드루스 대위가 심문하였다. 그들은 제주경찰서 소속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폭도와 미군과 경비대 장병을 사살하여 폭도들의 귀순공작 진행을 방해하는 임무를 띤 특공대’라고 자백하였다. 제주도 군정당국이 물증을 제시하며 경찰에 진상을 따졌더니, 김정호 사령관은 ‘경찰과 미군·경비대를 이간시키기 위해 폭도들이 경찰로 위장하여 저지른 소행’이라고 잡아떼었다.¹⁵⁵⁾

이후 경찰의 귀순 방해공작은 더욱 노골화되어 갔다. 경찰은 폭도로 가장하여 민가를 방화하고는 폭도의 소행으로 선전하고 다녔다. 이렇게 되자 증지되었던 전투가 다시 시작되었다.¹⁵⁶⁾

의 소행’임을 밝혀냈지만, 미군정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경찰의 주장을 수용하여 오라리사건을 ‘폭도들의 행위’로 규정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158~168쪽).

152)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on Cheju-do)로 명명된 이 무성기록영화는 방화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해 ‘폭도의 소행’으로 조작 편집되었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이 당시 사건을 체험했던 오라리 주민과 오라리 출신 경찰관들을 만나 영화 장면에 나오는 사건을 대조·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여인은 가공의 인물이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172~176쪽).

153) 『동아일보』, 1948. 5. 9. 이 르포 기사도 오라리사건을 ‘폭도의 소행’으로 왜곡하였다.

154)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169쪽.

155) 김익렬, 앞의 글, 334~336쪽. 김정호 사령관은 자신들의 음모와 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드루스 대위를 습격했다가 생포된 경찰 지휘자(경위)의 신병을 인수한 후 살해하였다. 그리고는 제주군정장관에게 그는 ‘공산분자로서 제주경찰서에 근무하다가 폭동사건이 발생하자 부하들을 데리고 입산한 자’라고 하면서 ‘그 자가 어젯밤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감시 소홀을 틈타 자살하였으므로 사체를 검증하여 보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156) 김익렬, 앞의 글, 336~337쪽.

딘 소장의 제주 방문 이후 ‘화평’ 정책이 ‘토벌’ 정책으로 급선회한 상황에서 5월 5일 제주 현지에서는 이른바 ‘5·5 최고수뇌회의’가 열렸다.¹⁵⁷⁾ 그러나 이 회의는 김익렬과 조병옥의 충돌로 중단이 되었고, 다음날 미군정이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 그 후임에 박진경(朴珍景) 중령을 임명함으로써 이제 ‘4·3’의 진로는 경찰측이 주장했던 ‘무력에 의한 진압정책’으로 결정되었다. 그것은 서울로 돌아온 딘 소장이 5월 6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주장처럼 제주도 사태를 ‘외부의 사주에 의한 공산 폭동’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서 잘 알 수가 있다.¹⁵⁸⁾

미군정과 이승만, 한민당 등의 단정 추진 세력에 대항하여 좌파 진영과 김구(金九) 계열의 우파, 김규식(金奎植) 계열의 중도파 세력은 ‘5·10 단독선거’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에서도 5·10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관리사무소와 선거관리 위원들에 대한 무장대의 습격은 더욱 치열해졌고¹⁵⁹⁾ 일부 중산간 마을에는 투표함마저 제대로 수송되지 않았다.

이에 조병옥 경무부장은 선거일을 이틀 앞둔 5월 8일 ‘제주도 사건의 치안수습 대책’을 발표하였다.¹⁶⁰⁾ 조병옥 부장은 사태의 원인은 무시한 채 경찰력의 증강을 통한 물리적 진압에 의한 수습책만을 강조하였고, 5월 8일 경찰전문학교 정예부대를 제주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선거는 실패로 끝났다. 제주도의 ‘5·10 선거’는 남제주군의

157)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192~197쪽 참조. 이 회의에는 딘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옥 경무부장, 송호성 경비대사령관, 제주군정장관 맨스필드 대령, 유해진 제주도지사, 경비대 9연대장 김익렬 중령, 최천 제주경찰감찰청장, 딘 소장 전속통역관 김모 등 9명이 참석했다. 최천 경찰감찰청장은 ‘4·3’을 국제공산주의자들이 사전에 계획한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토벌’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익렬 연대장은 ‘선선무 후토벌’을 주장했으나, 조병옥 경무부장이 김익렬 연대장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면서 회의는 중단이 되었다.

158) 『조선일보』, 1948. 5. 7.

159)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2, 66~74쪽. 1948년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된 선거인등록은 등록율이 전국적으로 91.7%인데 비해 제주도는 64.9%로 가장 낮았다. (『경향신문』, 1948. 4. 13).

160) 조병옥 경무부장이 제시한 수습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당면 치안의 수습책 : 경찰전문학교의 정예부대 출동, 유능 형사대 파견과 상당 기간 주재. ②치안수습의 영구적 조치 : 제주경찰학교 강화와 현존 경찰관의 재교육 실시, 지방 사정에 적응할 인사채원과 경찰사기 및 능률 양양, 경찰 정원 증가와 경찰기구 강화(동제주와 서제주에 경찰본서 신설). (『경향신문』, 1948. 5. 9).

투표율이 86.6%, 복제주권 갑구 43%, 을구 46.5%로 3개 선거구에서 62.8%의 투표율을 보였다. 특히 과반수 투표에 미달한 복제주권의 2개 선거구는 전국 200개 선거구 가운데 ‘5·10 선거’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미군정의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2-2. 군·경 합동 토벌기

가. 응원경찰의 초기 토벌 활동

‘5·10 단선’의 저지에 일단 성공한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 진영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더욱 높였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관 가족이나 대동청년단 가족 등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살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응원경찰을 주축으로 한 경찰 토벌대는 이때 벌써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벗어난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토벌 행위를 자행하였다.¹⁶¹⁾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라는 인식을 주입 받고 파견된 응원경찰대는 ‘제주섬은 곧 적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다.¹⁶²⁾ 당시는 제엄 상황도 아니었고, 게다가 전투상황이 아닌 곳에서도 경찰은 양민들을 무차별하게 즉결처분하였다.

서청까지 가세된 경찰토벌대는 토벌에 나섰다가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족족 붙잡아 “폭도들이 있는 곳을 대라”며 심하게 취조하기도 하였고, 입산 혐의자들에 대한 취조나 재판회부도 없이 현장에서 사살하거나 잔인한 가혹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또 ‘도피자 가족’이란 누명을 씌워 입산자의 늙은 부모나 어린 동생까지도 대신 사살하는 이른바 ‘대살’(代殺)이라는 만행도 저질렀다. 이에 따

161)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미군사령관 로스웰 브라운 대령조차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주민학살과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그는 “진압에 참가한 경찰관이 양민을 학살한 일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재 5~6명의 경찰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 취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내 전 경찰관에 대해서는 ‘고문 철폐’의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했다. (『자유신문』, 1948. 6. 18).

162) 조덕송, 앞의 글, 45쪽. 제주 파견 응원경찰대가 제주항 부두에 도착하자 인물자가 응원경찰대(100명)를 앞에 두고 좌후 혼시로 “이제 제1선에 왔다. 제군의 목숨은 나라에 바친 것…”이라며 비장한 목소리로 어떤 종류의 각오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다.

라 주민들은 마을 어귀나 주변의 동산에 ‘빗개’라 불리는 보초병을 두고 경찰토 별대가 나타나면 피신하기에 바빴다.

또한 경찰당국은 무장대의 습격으로 인해 인명희생을 당한 피해자 집안의 청년들에게 복수의 기회를 준다면 대거 경찰관으로 영입하여 활용하였고 곳곳에서 ‘피의 보복’을 불러일으켰다.¹⁶³⁾

‘5·10 선거’ 직후인 5, 6월 상황은 시기적으로 초토화작전이 벌어지기 훨씬 이전인데도 좌·우익간에 험악한 사건들이 많았다.¹⁶⁴⁾ 5월 13일 새벽 한림면 저지 마을은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김인하(金仁河) 순경과 우익 인사 3명이 피살되고 저지지서가 소실되었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함덕지서가 피습을 받아 지서주임 강봉현(康鳳現) 경사를 비롯한 김사승(金思承)·고선삼(高善三)·부두천(夫斗千)·양맹세(梁孟世)·송만석(宋萬石)·이인옥(李仁玉) 순경 등 7명의 경찰관이 희생되었고, 다음 날에는 한림지서가 피습을 받아 강태경(姜泰京) 순경이 숨졌다. 제주읍 도두리에서는 우익 인사 연쇄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응원경찰과 서청 등 토벌대가 5월 20일 주민 10명을 학살하였다.

5월 20일 대정지서가 9연대 탈영 군인들에게 습격을 받아 서덕주(徐德柱)·김문희(金文熙)·이환문(李煥文)·김일하(金壹河) 순경 등 경찰관 4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처럼 무장대의 공세가 치열해지자 조병옥 경무부장은 5월 18일 수도경찰청의 최난수 경감이 지휘하는 형사대 수십 명과 철도경찰관 수백 명을 파견하면서¹⁶⁵⁾ 특별담화를 통해 ‘실력으로써 폭도들을 진압 섬멸할 방침’임을 천명하였다.¹⁶⁶⁾

<표 5>는 ‘4·3’의 발발 이후 응원경찰관의 제주도 파견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5·10 선거’의 파탄에 따라 경무부는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본격적인 ‘유혈 진압’작전에 돌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3) 『조선중앙일보』, 1948. 7. 24.

164) ‘1948년 5월 상황’은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 23~88쪽 참조.

165) 『조선일보』, 1948. 5. 18.

166) 『동아일보』, 1948. 5. 19.

〈표 5〉 응원경찰관의 제주도 파견 상황(‘4·3’ 발발 이후)

파견 시기	응원경찰 인원수	출전	철수 시기	출전
1948. 4. 5	제8관구(전남) 경찰 100명	①		
1948. 4. 10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	②		
1948. 5. 8	국립경찰전문학교의 정예부대(경찰 간부후보생) 100명	③		
1948. 5. 19	수도경찰청 최난수 경감 이하 형사대 OO명, 철도경찰 000명	④	철도경찰 350명은 철도경찰 300명(48.7.10~7.19 파견)과 교대	㉑
	철도경찰 350명, 제8관구 및 제6관구(전북) 경찰 100명, 총합 450명	⑤		
1948. 7. 10	수도경찰청 주철순 경감 인솔 00명	⑥	1948. 10. 4 철수	㉒
1948. 7. 10, 7. 19	철도경찰 100명 철도경찰 200명, 합 300명	⑦		
1948. 8. 6	제1관구(경기) 경찰 00명	⑧		
1948. 8. 28	수도경찰 100명	⑨	1948. 10. 1 철수	㉓
1948. 8. 31	제7관구(경남) 경찰 00명	⑩		
1948. 8. 말	각 경찰관구 800명(8월 28일의 수도경찰 100명과 8월 31일의 7관구 경찰 00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⑪		
1948. 10. 2	수도경찰청 유충열 경감 인솔 00명	⑫	1948. 12. 2 철수	㉔
	제8관구 수사과 부과장 김영태 이하 경찰 52명	⑬		
1948. 11. 3	철도경찰 00명	⑭	1948. 12. 21 철수	㉕
1949. 2. 19	제주도 파견 경찰특별부대(지휘관 김태일 경무관) 505명	⑮	1949. 5. 16 철수	㉖

출전 : ① 『독립신보』, 1948. 4. 7.

② 『동광신문』, 1948. 4. 13.

③ 『경향신문』, 1948. 5. 9.; 『현대일보』, 1948. 5. 15.

④ 『조선일보』, 1948. 5. 18.

⑤ 『서울신문』, 1948. 5. 21.

⑥ 『조선중앙일보』, 1948. 7. 11.

⑦ 『조선일보』, 1948. 7. 10.

⑧ 『조선중앙일보』, 1948. 8. 7.

⑨ 『조선중앙일보』 · 『동아일보』, 1948. 8. 29.

⑩ 『서울신문』, 1948. 9. 7.

⑪ 『조선중앙일보』, 1948. 9. 1.; 『서울신문』, 1948. 9. 5.

⑫ 『조선일보』, 1948. 10. 3.

⑬ 『동광신문』, 1948. 12. 4.

⑭ 『조선중앙일보』, 1948. 12. 29.

⑮ 『경향신문』 · 『국도신문』 · 『자유신문』 · 『조선일보』, 1949. 5. 19.

㉑ 『조선일보』, 1948. 7. 10.

⑤ 『국제신문』, 1948. 10. 7.

⑥ 『동아일보』, 1948. 10. 3.

애월면 하귀리에서는 5월 12일 경찰관들이 주민 4명을 외도지서로 연행한 후 학살하였고, 5월 22일·25일·26일에 주민 7명을 사살했다. 5월 24일·25일에 무릉지서 주둔 용원경찰대가 무릉2리 주민 9명을 사살하였고, 5월 27일에는 중문 주둔 용원경찰대가 주민 4명을 총살했다. 저지지서 주둔 용원경찰대는 5월 29일 한림면 상명리에서 주민 10명을 학살하였고, 다음날 청수2구를 기습하여 주민 4명을 총살하였다. 구좌면 하도리에서는 5월 30일 세화지서 주둔 용원경찰대가 주민 6명을 연행한 후 학살하였다.

경찰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던 5월 24일에 딘 군정 장관은 북제주군 2개 선거구의 '5·10 선거'를 무효 선언하고 6월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¹⁶⁷⁾ 이에 앞서 미군정은 재선거의 시행에 따른 사전 정치작업을 위해 미6사단 20연대장 로스웰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사태의 조기 진압 책임자로 현지에 파견하였다.¹⁶⁸⁾

제주사태의 원인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브라운 대령은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라며 “약 2주일이면 평정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¹⁶⁹⁾ 그러나 브라운 대령의 강경 토벌작전은 오히려 입산자의 숫자만 늘렸고, 마구잡이 토벌양상을 보이며 엄청난 포로와 사살자 숫자를 양산했을 뿐 사태의 평정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¹⁷⁰⁾

167) 『조선일보』, 1948. 5. 27.

168) 5월 중순경 제주지역 미군사령관으로 파견된 브라운 대령은 경비대·해안경비대와 경찰 등을 총괄하는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토벌작전을 독려하였다. 브라운 대령의 지휘 아래 경찰은 해안 일주도로에서 4km 이내의 치안유지를 맡고, 경비대는 중산간 및 산악지대의 전투를 담당하는 협력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때로는 군·경 합동작전이 전개되기도 했다.(조덕송, 앞의 글, 47쪽). 그러나 경찰과 경비대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여 군정 장관 딘 소장도 이러한 갈등은 최소화되고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브라운 대령의 제주도 관련 보고서, 4-1〉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356쪽).

169) 『조선중앙일보』, 1948. 6. 8.

170) 브라운 대령은 제주에서의 활동 내용을 <1948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도에서의 활동보고서>에 담아 군정장관 딘 소장에게 제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무장별 강경진압론자라면 알려졌던 그의 모습과는 다른 점도 보인다. 5월 22일에 채택한 ‘폭

제주비상경비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4·3’ 초기에 해당하는 약 50일 동안(4월 3일~5월 25일)의 사망자는 150명으로 나타났다.¹⁷¹⁾ 그런데 경찰관과 그 가족·양민·관공리가 31명인데 비해 ‘폭도’는 119명으로, ‘폭도’의 사망숫자가 ‘우익 진영’ 사망숫자의 4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5월 27일 유동열(柳東悅) 통위부장이 발표한 ‘포로’는 3,126명이며,¹⁷²⁾ 6월 12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비대와 경찰에 붙잡힌 ‘폭도’가 약 6,000명에 달하고 있다.¹⁷³⁾

‘1948년 4~5월’을 무장대의 공세기로 본다면 토벌대에 사살된 ‘폭도’, 붙잡힌 ‘포로’ 또는 ‘폭도’들이 과연 ‘한라산 무장대’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¹⁷⁴⁾ 그리고 최천 제주경찰감찰청장이 6월 11일자로 정직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양민학살·고문행위 등 옹원경찰들의 무리한 토벌작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한 문책성 인사로 추정되고 있다.¹⁷⁵⁾

토벌작전이 한창이던 5월 28일 반공 일변도의 강경정책을 펴온 유해진 제주도지사가 경질되고¹⁷⁶⁾ 이례적으로 제주출신 임관호(任琯鎬)가 새 지사로 임명

동진압책’에 의하면, 해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무기를 소지한 폭도는 체포하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엄단한다”며 경찰의 임무를 분명하게 제한하였다. 반면에 경비대에게는 모든 무장대를 진압하라는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였다.(<브라운 대령의 제주도 관련 보고서, 4-2>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356~358쪽).

171) 『대동신문』, 1948. 5. 29.

172) 『서울신문』, 1948. 6. 3.

173) 『조선중앙일보』, 1948. 6. 12.

174)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군정당국은 ‘무장폭도 500명, 동조자 1,000명’이라 발표했는데, 그들 스스로 추정했던 ‘폭도’ 숫자보다 10배 이상의 ‘포로’를 검거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사태는 해결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았다.

② 현지 취재기자도 ‘폭도’의 정체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포로들이 후송되어 온다. 자동차로 가족이나 실려가는 젊은 사람들, 도보(徒步)로 걸터거리고 끌려오는 노소(老少)에다 부녀까지 끼여있는 일련(一聯), 비는 아득도 개이지 않는다. 꾸부린채 말없이 이끌어가는 그들의 안색은 그들의 외복과 같은 색깔이다. 감히 그들을 어느모로 보아야 폭도라고 부를 수 있을런지. 12,3세 되는 소년이며, 60이 넘는 늙은이며, 부녀자까지 무엇 때문에 폭도 규정받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되었는가.”(조덕송, 앞의 글, 49~50쪽).

175) 『한성일보』, 1948. 6. 18.

176) 유해진 제주도지사는 그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좌익으로 간주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함으로써 좌익을 지하로 몰고 갔으며, 그 결과 좌익과 그 동조자들이 점점 증가했다. 김영배 제주경찰감찰청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그는 반대파 척결에 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의 재임기간 중에 경찰은 수없이 테러를 자행했고, 경찰의 고위직

되었다. 6월 10일에 딘 군정장관은 복제주군 갑구·을구의 재선거마저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¹⁷⁷⁾ 그리고 정직 상태에 있던 최천 청장의 후임으로 6월 17일 제8관구경찰청 부청장 김봉호(金鳳昊) 총경을 발령했다.¹⁷⁸⁾ 6월 18일에는 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부하들에게 피살되고 그 후임으로 최경록(崔慶祿) 중령이 임명되었다. 미군정은 경찰책임자와 도지사를 제주출신으로 교체하여 도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 했으나,¹⁷⁹⁾ 응원경찰대를 비롯한 육지출신 경찰이 제주경찰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었다.

한림면 금악리에서는 6월 7일 저지저서 응원경찰대가 불구자인 소년과 노인, 부녀자 등 5명을 총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미군 CIC가 조사에 나서 저지저서장 등 관련자를 체포하기도 했다.¹⁸⁰⁾ 애월면 장전리에서는 6월 12일 제주경찰서 소속 응원경찰과 서청단원들이 주민 10명을 학살하였다.¹⁸¹⁾ 6월 16일에는 조천면 북촌리 포구에서 우도지사 주임 양태수(梁泰秀) 경사와 진남호(陳南豪)

은 대부분 육지에서 모집된 경찰들이 차지했다. 이전에도 전·현직 제주도 군정장관들 모두 그의 무능과 문제점을 알고 해임을 건의하였으나 거부되었다. 군정청 특별감찰관인 로렌스 넬슨 중령은 1947. 11. 12~1948. 2. 28까지 감찰활동을 수행하고, 1948년 3월 23일 유해진 지사의 교체를 건의하였으나 딘 소장은 이를 거부했다.(<넬슨 특별감찰보고서-제주도 정치상황, 1-1, 1-3, 1-7, 1-9, 1-10, 1-15, 1-16, 1-19> - 『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425~433 / 438~442 / 446~453 / 461~462쪽).

177) 『서울신문』, 1948. 6. 13.

178) 『동아일보』, 1948. 6. 19.

179) '5·10 선거'의 파탄과 6월 23일의 재선거까지 무기연기함으로써 위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미군정이 강경 진압이 예상되는 가운데 돌연 경찰책임자와 도지사를 제주출신으로 교체한 이유는 무엇일까. 브라운 대령의 '2주일 내 평정 완료' 작전마저 실패한 후에 예상되는 다음 작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미군장교가 김익렬 연대장에게 권유했던 초토화작전일 것이다. 그런데 미군정은 초토화작전을 왜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까. 이유는 한국인 손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 "한국 군인들은 우리가 그들을 훈련하는 목적이 미국인이 피를 흘리는 대신 피를 흘리고 미국을 위하여 쏘는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주한미군사 고문단 서한>, 1949. 8. 19 - 『제주4·3자료집-미군정 보고서』, 361쪽). 따라서 전국경찰청장회의에 참석했던 김봉호 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미군정은 일단 정부가 출범하면 제주사태를 한국인의 손으로 완전히 해결하려는 작전계획을 은밀히 수립하고 있었다. (『서울신문』, 1948. 9. 3). 제주에서 더 이상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출범해야 미국에게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신생정부에게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군정은 유화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180)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 102~103쪽.

181)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 89~92쪽.

순경이 무장대에게 피살되었다.¹⁸²⁾

6월 24일 부임한 김봉호 청장은 7월 1일부터 어획금지를 해제하고 일반 도민의 여행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등 유화정책을 펴나갔다.¹⁸³⁾ 김봉호 청장은 7월 15일경 기자 회견에서 “4·3 사건의 발생 원인은 과거 경찰관의 도민에 대한 비행, 관공리의 악질배 도량(跳梁), 주민을 선동하는 모당(某黨)의 모략에 있다”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 ‘비행경찰관의 내부 숙청 단행·다수의 양민 보호’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¹⁸⁴⁾

그러나 사형(私刑)을 자행하는 경민(警民)간의 복수전으로 불안한 상태는 여전하였다. 일부 경찰관이 휴가를 얻어 경찰관 가족·친척에 대한 가해혐의자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수사형을 가하다가 상부에 발각되어 엄중 단속을 받는 일도 있었다.¹⁸⁵⁾

제주경찰의 사찰 완화 방침과 행정당국의 민심 수습에의 부심, 국방경비대의 특수 경우를 제외한 작전행동의 보류,¹⁸⁶⁾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군정이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7월의 제주도는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경무부 수뇌부는 이러한 소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가.

제주사태와 관련하여 최난수 경감의 “강력한 무장부대의 용원이 필요하다”는 발언(6월 21일)¹⁸⁷⁾이나 “근본 방침은 종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재천명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담화(6월 23일)¹⁸⁸⁾를 보면 경찰은 오로지 무력진압에 의한 사태 수습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관된 입장에서 경무부는 김봉호 제주경찰감찰청장의 유화정책 실시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소강상태의 지속을 풍전정적(風前靜寂)의 상황으로

182)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 93~96쪽.

183) 『대동신문』, 1948. 7. 6.

184) 『조선중앙일보』, 1948. 7. 30.

185) 『조선중앙일보』, 1948. 7. 17.

186) 『대동신문』, 1948. 7. 8.

187) 『동아일보』, 1948. 6. 24.

188) 『현대일보』, 1948. 6. 24.

판단하였다.¹⁸⁹⁾ 따라서 평온한 수단으로는 제주사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수개월간 간단없이 지속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¹⁹⁰⁾

이에 따라 경무부는 철도관구 경찰청 소속 경찰관 300명을 차출하여 7월 10일에 선발대 100명을 제주로 내려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7월 19일 출발하기로 되었으며, 지난 5월에 파견된 철도경찰과 교대한다고 발표하였다.¹⁹¹⁾ 또한 7월 10일 수도경찰청 소속의 주철순(朱哲淳) 경감이 제주도 제3차 토벌대 00명을 인솔하고 제주로 향했다.¹⁹²⁾

한동안 소강상태로 잠잠하던 제주도는 '8·15 정부 수립'과 '8·25 북조선 선거'에 대비한 비상경계 조치로 출렁거리기 시작하였다. 8월 17일 제주도 해상에 정체를 모를 무장선박이 출몰하였다는 조선해안경비대의 발표가 있었고,¹⁹³⁾ 8월 19일에는 무장대의 습격을 받아 한림지서장 이화영(李華暎) 경사가 피살되었다.¹⁹⁴⁾ 그리고 '4·3 봉기'의 지도자인 김달삼 일행이 제주를 탈출하여 8월 25일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였다.¹⁹⁵⁾

김봉호 제주경찰감찰청장이 밝혔듯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리부터 계획

189) 고병익, 「제주도사태 수습에 관한 사건」, 『민중경찰』, 경무부 교육국, 제2권 제5호(통권 10호), 1948. 8. 48~52쪽. ; 경무부장 조병옥 <제주도 사태 해결에 관한 견해>, 1948. 7. 23(『제주4·3자료집Ⅱ-미국무성 제주도 관계문서』, 213~216쪽).

190) 경무부가 마련한 '좌익폭도 근절책'은 다음과 같다. ①도내 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통일 치안 대책기구로 가칭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설치 ②귀순 심사기관 설치 ③귀순자로 반공단체인 가칭 '도민생생회' 조직 ④집단부락과 보강연좌집(10戶式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법)제도 실시 ⑤애국청년단체 중흥 ⑥도로망의 정비 - 中腹道路(산의 정상으로 향하여 최종부락을 관통하는 한라산 중북을 일주하는 도로)와 중황도로 개통 ⑦일반행정과 경찰행정에 대하여 - 제주출신과 육지출신 경찰관의 배합 활용. 제주도를 전라남도에 소속시켜 수시로 인사교류 ⑧배치, 작전, 용병상에 대하여 ⑨치안병력 일원화.

191) 『조선일보』, 1948. 7. 10.

192) 『동광신문』·『조선중앙일보』, 1948. 7. 11.

193) 『한성일보』, 1948. 8. 21. 그러나 '괴선박 출현'에 대해서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F-6'으로 표시하여 정보가치가 없는 신뢰도 판정불가의 정보로 처리했다.

194) 『조선일보』, 1948. 8. 21.

195) 『조선중앙일보』, 1948. 8. 25. 8월 21일부터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는 남조선의 지하선거를 통해 선출된 각 지역 대표 1,080명중 1,002명이 참가하여 8월 25일 남한 대의원 360명을 선출하였는데, 같은 날 선출된 북한 대의원 212명과 함께 '조선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되어 있던 결정적인 토벌전을 재개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¹⁹⁶⁾ 그런데 ‘김달삼의 이북행’은 무장대 지도부가 북한을 지지함으로써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모든 저항이 소련 또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인식케 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또한 그의 월북은 이승만 정권에게 ‘제주도 무장대’를 신생정부의 정통성 자체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각인시켰다.¹⁹⁷⁾

정부 수립과 함께 모든 행정권이 미군정청에서 한국정부로 이양됐으나,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 장군 사이에 체결된 ‘한미 군사안전장점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하던 1949년 6월 말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정에 의거 8월 26일 ‘주한미군고문사절단’이 설치되었고, 그 산하에 ‘임시군사고문단’(PMAG)을 두어 윌리엄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을 단장에 임명했다.

중앙당국의 전면적인 무력소탕 방침에 따라 8월 말부터 무장응원대를 속속 제주도에 파견하기 시작했고, 8월 25일 제주비상경비사령부는 ‘최대의 토벌전이 있으리라’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¹⁹⁸⁾ 8월 28일 수도경찰청에서 약 100여 명을 선발하여 파견¹⁹⁹⁾하는 등 각 경찰관구로부터 선발된 800명에 달하는 응원경찰대들은 29일에 이미 선편으로 제주에 도착하였다.²⁰⁰⁾

10월로 접어들면서 제주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10월 1일 남원면 한남리에 주둔하고 있던 응원경찰대(수도경찰청 중부경찰서 소속)가 무장대와 교전 중 김경렬(金璟烈) 경사와 김제규(金濟圭) 순경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고,²⁰¹⁾ 때를 같이하여 증문면 도순리에 주둔 중인 응원경찰대가 습격을 받아 정찬수(鄭燦洙)·박흥주(朴興柱)·최영규(崔永奎)·김병호(金柄浩) 순경 등 5명

196) 『서울신문』, 1948. 9. 3.

197) 체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 275쪽.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김달삼의 이북행은 해주의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한 남한 각 지역 대표 1,002명 중의 하나일 뿐이다.

198) 『서울신문』, 1948. 9. 3.

199) 『조선중앙일보』, 1948. 8. 29.

200) 『조선중앙일보』, 1948. 9. 1.

201) 『자유신문』, 1948. 10. 2.; 『국제신문』, 1948. 10. 7.

이 전사하였다.²⁰²⁾ 이에 앞서 9월 20일을 전후하여 제주읍 관내 13개 구장(區長)과 북제주군 관내 5개 면장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사표를 제출했다.²⁰³⁾

이와 같은 제주 현지 상황의 재악화는 무력에 의한 사태의 조기 매듭을 추진 하던 신생정부에게는 더욱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10월 2일 수도경찰청의 유충렬(柳忠烈) 경감이 인솔하는 응원경찰대²⁰⁴⁾와 제8관구경찰청의 김영태(金永台) 수사와 부과장이 지휘하는 응원부대(52명)²⁰⁵⁾가 제주로 급파되었다.

중앙정부는 은전책을 지향해 온 제주출신 김봉호 청장을 10월 5일자로 전격 사퇴시키고 그 후임에 경무부公安과장 홍순봉(洪淳鳳)을 발령했다.²⁰⁶⁾ 이것은 제주출신의 경찰청장을 통해 평화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던 중앙정부의 방침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10월 11일에는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고 사령관에 광주주둔 제5여단장 김상겸(金相謙) 대령이 임명되었다.

단독정부에게 제주사태는 단순한 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장애물이었고, 미국에게는 냉전 초기 자신들이 설정하려는 세계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골칫거리였다. 이제 평남출신인 홍순봉 경찰감찰청장의 등장과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창설로 제주사태는 유혈의 참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나. 숙경(肅警)작업과 ‘서정 경찰’

10월 17일 9연대장 송요찬(宋堯讚) 소령은 “군은 정부의 최고지령을 봉지하여… 전도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을 금지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²⁰⁷⁾ 미군정장관의 정치고문과 미군 장교가 김익렬

202)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35쪽. 제주시 충혼묘지 경찰관 묘역의 비석에 의해 추정하고 있는 희생자이다.

203) 『국제신문』, 1948. 10. 3.

204) 『조선일보』, 1948. 10. 3.

205) 『동광신문』, 1948. 12. 4.

206) 『조선일보』, 1948. 10. 6.

207) 『조선일보』, 1948. 10. 20.

연대장에게 제안했던 초토화작전의 예고였다.

이 포고문에 따라 토벌대는 무장대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증산간 마을을 집중 공격해 청년을 포함한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거나, 증산간 일대를 수색하다가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총격을 가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토벌작전으로 노인·부녀자·어린이 그리고 밭에서 일하던 주민들도 많이 희생되었다. 해변 마을은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혐의가 있거나 경찰지서 피습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해당 지역에 대한 토벌대의 보복살해가 이어졌다.

10월 19일 제주에 파병될 예정이던 여수 주둔 제14연대가 총부리를 돌려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여순사건’은 제주도 사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제주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인 김상겸 대령이 파면되고 그 후임으로 9연대장 송요찬 소령이 임명되었다.²⁰⁸⁾ 또한 ‘여순사건’으로 9연대와 제주도 경찰당국은 당장 내부의 적색분자를 색출해야 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숙군(肅軍)·숙경(肅警)작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여순사건’으로 사기가 오른 무장대는 10월 23일 새벽 제주읍 삼양지서, 조천면 함덕지서·조천지서를 습격하였고 오전에는 제주읍을 내습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경찰은 곧장 무장대를 반격하여 퇴각시켰다.²⁰⁹⁾ 10월 27일 새벽 에월지서가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김종석·손귀현·순경 등 2명이 사망했다.²¹⁰⁾ 그리고 10월 28일 새벽 삼양지서가 무장대의 공격을 받아 교전 중 김병규(金秉奎)·최형락(崔亨洛)·순경 등 경찰 3명과 무장대 3명이 사망하고 경찰 5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그 전날 삼양지서에 감금했던 삼양리 청년 9명을 총살했다.²¹¹⁾

10월 28일 9연대는 숙군작업²¹²⁾과 동시에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29일 새벽 에

208) 군이 토벌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9연대장이 제주도경비사령관을 겸직하여 경찰과 경비대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휘체제를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209) 『국제신문』, 1948. 10. 29.

210)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84쪽.

211)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98~100쪽.

212) 10월 28일 밤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9연대는 군 내부의 적색분자를 색출·숙청하는 숙군작업을 진행하였다. 연대본부가 자리한 제주읍에 주둔하고 있던 제1대대는 제주출신 장병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연대본부 기간요원들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장병

월면 고성리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무장대를 기습했다.²¹³⁾ 토벌군은 이 과정에서 미처 피신하지 못한 노약자·여자 등이 포함된 마을 주민 20명을 끌고 가 총살하였다.²¹⁴⁾

고성리 전투에서 무장대는 병력·무기·비밀서류 등의 손실로 전투력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 전투를 계기로 무장대는 경비대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제 경찰 외에도 군대라는 막강한 상대와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서게 되었다.

제주도 경찰당국은 11월 1일 남로당 프락치들의 ‘제주 적화음모’를 사전에 적발·분쇄하였다고 발표했다.²¹⁵⁾ 이 사건은 제주경찰감찰청 사찰과장 박대의(朴大義) 총경의 지시로 특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²¹⁶⁾ 경찰 프락치만도 11명에

들이 군사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학살당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118~132쪽).

213) 이 고성리 전투에서 사살된 무장대의 숫자는 자료에 따라 2명에서 135명에 이르기까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애월 및 대정지부장 등 9명을 포함한 무장폭도 40명 사살, 포로 20명(『국제신문』, 1948. 11. 2). ②폭도의 유기시체 수백 명, 포로 200여명(『조선일보』, 1948. 11. 3). ③2명 사살(고성리 주민들의 증언). ④4명 사살, 20명 체포(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0. 30 ~ 11. 1 (No. 977)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45쪽). ⑤135명 사살(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1. 2 ~ 11. 3 (No. 979)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45쪽).

214)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84~87쪽.

215)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 정보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찰 및 정부 관리들 암살하고 동시에 폭동과 혼란을 일으켜 제주도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음모가 무장대의 작전 개시 30분 전인 11월 1일 새벽 4시에 밝혀졌다. 이 음모에 연루된 75명이 체포됐다. 그 중에는 경찰도 몇 명 포함되어 있다.”(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1. 2 ~ 11. 3 (No. 979)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45쪽). 그런데 제주경찰사에는 이 사건이 ‘11월 7일’에 발생한 것처럼 잘못 기록되어 있다.(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312~313쪽).

216) ‘경찰 프락치사건’ 수사는 제주경찰감찰청의 구대 이발사인 서용각(徐容珪) 순경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당시 제주경찰감찰청 사찰과에서 사상범을 다루었지만, 사상범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1948년 6월에 특별수사대가 비상경비사령부 직속으로 편성되었다. 특별수사대는 경위가 대장이고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사전담반은 4개 반으로 편성되었는데 각 반에는 경사 반장과 형사 2명씩 배치되었다. 이 특별수사대에서는 생포된 무장대원들을 넘겨받아 혹독한 심문을 통해 토벌작전에 유용한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사상적으로 의심이 있는 자들을 연행하여 그 계보를 들춰내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특수업무 때문에 특별수사대원이 되려면 수사능력도 특출해야 하고 특히 사상적으로 ‘붉은 물’이 조금도 없다는 검증을 받아야 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136쪽).

달했는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새벽에 세포들에 대한 검거작전이 전개되어 83명이 검거되었다.²¹⁷⁾

‘경찰 프락치사건’은 수사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제주출신 경찰관들이 더욱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에 2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특별수사대는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고 전면 해체되었다. 경무부는 전국 각도에서 노련한 형사진을 차출하고, 수도경찰청 최난수 경감을 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대를 재편성하였다. 특별수사대는 대장 휘하에 경위 3명·경사 5명·형사 3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제주출신은 프락치사건 수사에 활약이 컸던 김병택(金秉澤) 경사뿐이었다.²¹⁸⁾

9연대 정보과와 헌병대, 경찰 특별수사대와 사찰과, 미군 CIC, 서청 등의 토벌당국은 11월에 접어들면서 도청 공무원·재산관리처 및 식량공사 직원·법조·교육·언론계 인사 등 제주읍내의 유지 대부분을 농업학교에 설치한 9연대 임시수용소에 구금하였다. 초토화작전을 벌이기에 앞서 당시의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토벌대는 이들에게 온갖 폭행과 고문을 가하다가 처형하였다.²¹⁹⁾

고성리 전투 이후 토벌당국의 본격적인 토벌에 맞서서 무장대는 11월 2일 한림 주둔 경비대를 공격한데 이어 11월 5일 중문지서와 안덕지서를 향해 공격을 가했다. 당시 중문지서에는 경찰관이 17명 가량 있었는데 새벽에 기습을 받아 김호석(金昊錫)·김권석(金權錫) 순경이 전사하였다. 같은 날 안덕지서도 습격을 받았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중문지서를 지원하기 위해 서귀포에서 출동한

217) 그런데 ‘11·1 경찰 프락치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에 대한 공식기록은 전혀 없다. 다만 1960년 6월 국회에 신고된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나 증언에 의해 이창우(李昌佑)·송창열(宋昌燦) 형사, 이성지(李成枝)·이기두(李起杜)·현보하(玄普河) 순경 등으로 추정할 뿐이다. 미군 정보보고서의 프락치 혐의자 검거 숫자 ‘75명’과는 달리 당시 특별수사대 제1반장 김병택(金秉澤) 경사는 ‘83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을 A·B·C급으로 나누어 A급으로 분류된 20명을 군 정보기관에 인계했는데 아직까지 이들의 행방이 묘연하다. 군 정보기관에서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들을 처단한 뒤 시신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벌당국이 이들을 제주 바다에 수장(水葬)하였다는 증언들이 있다.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137~143쪽).

218)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143쪽.

219)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176~237쪽 참조.

경찰은 ‘어둔마루’에 배복해 있던 무장대의 공격을 받아 김남군(金南郡) 경사가 희생되고 김재환(金在煥) 순경이 총상을 입었다.²²⁰⁾

중문지서와 안덕지서 피습사건 직후 토벌대의 보복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러한 학살은 주민들의 도피 입산을 초래했고, 토벌대는 ‘도피자 명단’을 작성해 피신자의 가족들을 학살하였다. 주민집단학살은 중문면에서는 서청과 경비대가 앞장섰고, 안덕면에서는 철도경찰이 전면에 나섰다. 11월 1일부터 토벌대의 학살이 이미 시작된 안덕면에서는 안덕지서의 피습 직후에 철도경찰 ‘오학룡(吳學龍) 부대’가 덕수리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였다.²²¹⁾

경무부의 경찰관 보충계획에 따라 1947년 4월 말부터 제주에 파견된 철도경찰은 그 일부가 제주경찰에 편입돼 지서에서 근무하기도 했지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제주경찰감찰청의 지서와 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1948년 ‘5·10 선거’의 실패 직후에 파견된 수백 명의 철도경찰은 제주경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추정된다. 단위 부대마다 약 15명 가량으로 구성된 철도경찰은 지휘자인 대장(장위 계급)의 이름을 따 ‘xxx 부대’라고 불렀다. 당해 지역의 지서주임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주둔지역을 이동하면서 토벌전에 나선 철도경찰에 현지 제주출신 경찰은 꿈쩍도 못했고, 철도경찰은 지역에 따라선 서청에 비견될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더욱이 함정토벌까지 벌여 도민들을 더욱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²²²⁾

아직 중산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초토화작전이 전개되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1월 4일과 6일 군·경 합동토벌대는 서귀면 서호리·서흥리·호근리 일대에서 노인과 여인 또는 어린이 등 주민들을 무차별로 학살하였다.²²³⁾ 그리

220) 이 중문지서 피습사건 기록이 자료마다 다르다. ① 군(『대비정규전사』, 63쪽)과 경찰(『제주경찰사』, 313쪽) 자료에는 발생일(11월 3일)·피해상황 등에 오류가 있다. ② ‘폭도’ 50명이 사살되었다는 기록(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1. 5 ~ 11. 6 (No. 982) / 11. 6 ~ 11. 8 (No. 983)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보고서』, 146쪽)은 사살된 ‘폭도’가 3명이라는 증언에 비취볼 때 전과를 과장 보고했거나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을 사살한 후 ‘폭도’로 위장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238~250쪽).

221)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250~260쪽.

222)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260~263쪽.

고 11월 6일에 경찰은 9연대와 함께 안덕지서 축성작업에 동원되었던 사제리 주민들을 지서에서 집단 학살하였다.²²⁴⁾

토벌대가 마을을 비운 틈을 타 무장대는 11월 7일 서귀포를 기습해 민가에 불을 질렀고, 특별한 교전이 없이 백경석(白經錫)·임동창(林東昌)·김병익(金秉翼) 순경이 희생되었다.²²⁵⁾ 이 사건으로 토벌대의 보복총살이 시작되었고 서홍리 주민들이 집단 학살되었다.²²⁶⁾ 같은 날 서귀포에 일시 머물던 9연대와 남원지서 합동의 군·경 토벌대는 남원면 수망·의귀·한남리 등 중산간 마을에 대한 무차별 방화와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 세 마을은 초토화작전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초토화되어 버렸다.²²⁷⁾

11월 11일 새벽 애월면 신엄리를 습격한 무장대의 우익가족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토벌대는 애월면 금덕리(현재의 유수암리)를 덮쳐 피신 중에 있던 마을 주민 수십 명을 신엄지서 옆 밭에서 집단 학살하였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신엄지서에 갇혀있던 수산리 주민과 애월면 중산간에서 끌려온 주민 10여 명을 같은 장소에서 집단 학살하였다.²²⁸⁾ 그런데 경찰은 ‘폭도’ 80명을 사살했다고 보고하고 있다.²²⁹⁾

9연대 장병에 대한 숙청과 경찰 프락치의 색출작업을 통해 군과 경찰 내부의

223)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268~275쪽. 계획적인 또는 정상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군·경 합동토벌대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즉흥적인 또는 비상적인 작전을 전개할 때에는 군토벌대의 요구에 경찰이 수동적으로 지원·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224)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264~267쪽.

225) 무장대의 서귀포 기습 방화사건의 전개과정과 피해상황은 미군 정보보고서, 『제주경찰사』(314쪽), 신문(『경향신문』·『동아일보』, 1948. 11. 12)의 보도 내용 등 자료마다 다르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의 채록증언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276~280쪽). 그리고 다음의 기사가 흥미를 끈다. “전국통일학생총연맹”에서는 제주도 주민에 대한 선무공작을 위해 계몽대를 파견하였는데, 파견된 계몽대장 백경석과 문화부차장 김병익이 11월 7일 서귀포에서 폭도의 습격을 받아 순사하였다.”(『독립신문』, 1948. 11. 18).

226)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282~286쪽.

227)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290~296쪽.

228)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298~305쪽.

229)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1. 10 ~ 11. 12 (No. 986)(『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46쪽).

장애요인이나 저항세력을 사전에 제거한 데다가 제주읍내의 지식인·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대거 처형함으로써 이제 무차별 초토화작전을 본격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서청은 1947년 '3·1 사건' 이후부터 단원들을 제주도에 파견하고 있었지만 '4·3' 이후에는 더욱 조직적으로 파견하였다. '4·3'이 발발하고 진행되면서 조병옥 경무부장과 경비대사령부의 요청을 받은 문봉제(文鳳濟) 서청위원장은 서청 제주진압부대로 '서청 전투경찰대'와 '서청 대대'를 급조하여 파견하였다.²³⁰⁾

공산주의와 유사한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극도의 복수심 섞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 서청단원들은 경찰·군인의 신분으로 혹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빨갱이 사냥'에 매달렸다. 서청단원들은 경찰 또는 군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이미 미군 장교들의 요청에 의해 경찰과 경비대를 지원하여 왔고, 임시경찰로 활동하였다.²³¹⁾

230) 서청은 테러·살인·뇌물수수 등 경찰이 손수 나서기에 부담스러운 불법적인 일을 주로 대행했다. 이러한 '더러운 일'들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측에서는 그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법이다. 미군정 시기에 서청이 경찰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제주에 파견되고 활동했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언에 의해 확인될 뿐 공식적인 문헌 자료에는 나타나있지 않다.

① 문봉제, 「서북청년회(40)」(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1973. 2. 9.; 건국청년운동협의회,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 1989, 1352쪽. 1948년 4월 6일경 조병옥이 문봉제를 불러 “대부분의 경찰관과 군인이 제주도 출신자이고 친숙한 관계와 혈연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그들로는 치안유지가 어려우니 반공정신이 강하고 북한에서 반공투쟁을 경험한 서청단원 500명을 경찰에 지원 입대시켜 달라. 그런데 사태가 위급하니 24시간 안에 차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2일 후 선발대 200명이 전투경찰대대로 편성되고 이렇다 할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대대장 최치환(崔致煥) 경감 인솔하에 제주로 향했다. 약 한달 후에는 300명의 서청전투경찰대가 제주도에 추가 파견되었다.

② 문봉제, 앞의 글, 1973. 2. 9.; 건국청년운동협의회, 앞의 책, 1350~1351쪽.; 이경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 상, 삼성문화개발, 1989, 120쪽. 서청단원으로 편성된 1개 대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경비대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9연대장 송요환은 서청 제주지부장 김재능(金在能)을 앞세우고 상경하여 문봉제에게 서청 병력지원을 요청했다. 문봉제의 지시로 경복지부의 서청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700명으로 편성된 보병대대가 9연대에 편입되었다. 서청 경복지부 감찰위원장 김연일(金連一)이 대대장이 되었는데, 서청 대대는 기본훈련도 생략하고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군가 대신 서청 행진가를 불렀다. 또한 군복을 입었지만 일부 지휘관을 제외하고는 계급장도 없었다. 서청 대대는 2연대가 9연대를 교대하여 배치된 후에도 상당기간 제주도에 주둔하였다.

231)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9. 30 ~ 10. 1 (No. 951) / 1948. 10. 30 ~ 11. 1

서청은 1~2백 명으로 편성된 토벌대를 계속 파견하여 진압병력의 강화를 도왔는데, 서청단원들은 2~3일 동안의 훈련만 받고 곧장 순경 계급장을 달았다. 또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바로 경사나 경위 계급장을 달고 일선 지서주임 등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악명을 떨친 자들도 적지 않았다.

‘여순사건’ 이후 이승만 대통령과 내무장관은 경비대와 경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청단원을 경비대에 약 6,500명, 경찰에 약 1,700명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단원 20명 당 경사 1명, 50명 당 경위 1명, 200명 당 경감 1명의 비율로 서청의 일부 단원들을 임명하여 경찰의 중간간부나 하급간부로 양성하기로 하였다.²³²⁾

이러한 방침에 따라 평남출신의 홍순봉(洪淳鳳) 제주도경찰국장과 김재능(金在能) 서청 제주지부장은 직접 상경하여 서청을 상대로 지원을 독려하였고, 11월 중순께 제주경찰에 서청단원 200명이 1차로 배속되었다. 이들은 이른바 ‘200명 부대’²³³⁾로 불렸는데 경찰전문학교에서 14일간의 단기교육을 마친 후 경찰복을 입고 제주도에 내려왔다. 정부 당국은 계속하여 청년단체들을 대상으로 경찰·경비대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서청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없었다.²³⁴⁾

(No. 977)(『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42~143 / 145쪽). 이복출신이 아닌 최천 경찰감찰청장도 김재능 서청 제주지부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좌익의 아지트를 차례로 공격하였다고 한다.(이경남, 앞의 책, 121쪽).

232)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2. 4 ~ 12. 6 (No. 1005)(『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49쪽).

233)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1233~1236쪽)에 기록되어 있는 ‘서청 200명 부대 명부 및 근무처’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선 부대원의 수가 274명에 이르고 홍순봉 경찰국장이 포함되어 있다. 200명 부대가 파견된 이후인 12월 19일 서청단원 250명과 함께 제주에 도착하여 경찰에 투신한 박형요(朴亨堯)의 증언에 의하면, 250명 중 임승현(林承鉉; 경사 임용, 경위로 승진, 표선지서 주임, 제주도경찰국 경보주임) 등 25명만 경찰이 됐고 나머지 225명은 군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200명부대가 파견된 시기를 전후하여 제주에서 근무하였던 이복출신 경찰관들까지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200명 부대의 일원이었던 김시훈(金時訓)의 증언에 의하면, 200명 중 서울에서 14일 동안 교육받은 189명은 ‘제주경찰 9기’이고, 정용철(鄭鏞哲; 경위 임용, 삼양지서 주임)을 포함하여 김재능을 따라 먼저 제주에 내려온 11명은 ‘제주경찰 10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경찰사』(182쪽)에는 ‘제주경찰 9기’는 1948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교육을 받은 58명이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서청 200명 부대는 이와는 별도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151 / 156~157쪽).

234)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2. 12 ~ 12. 13 (No. 1011)(『제주4·3자료집-미

서청 경찰대원들은 월급이나 식량보급도 받지 못하고 현지에서 조달해야 했다.²³⁵⁾ 일선 지서마다 경찰후원회가 조직돼 이들을 뒷바라지했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한계를 드러냈으며 자연히 민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금품을 착취하거나 강탈하는 행위가 허다했다.²³⁶⁾

군과 경찰에 서청단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제주출신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같은 제복을 입어도 일단 사상적으로 의심받았고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에도 급급했다. 무장대에게 현상금이 걸릴 정도로 사상적인 문제가 없는 사찰담당의 핵심 경찰간부조차 ‘빨갱이’로 몰려 고초를 치르기도 했다.²³⁷⁾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의 집권층은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부치면서 반공에 투철한 서청에게 제주도민의 생사여탈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이었다.²³⁸⁾

11월 9일 서청 제주지부장 김재능은 물자보급에 불만을 품고 김두현(金斗鉉) 제주도청 총무국장을 연행하여 고문 살해하였다. 서청은 제주도 행정의 2인자까지 거리낌없이 학살하고는 공산분자로 몰았으며, 홍순봉 경찰국장은 이를 목인하였다.²³⁹⁾

금품이나 빼앗는 폭력집단에서 무장까지 하게 된 서청은 더 나아가 정식 군인이나 경찰로 변신하였고, 이들은 구좌면 행원리·월정리에서 주민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다. 10월 말부터 11월 13일까지 행원리에서 수십 명의 양민들이 학살되었는데,²⁴⁰⁾ 국내의 각종 군·경 자료에도 이즈음 해변 마을인 행원리에서 무장대와 토벌대간에 교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보고서에는 ‘폭도 115명 사살’이라는 전과로 둔갑되어 있다.²⁴¹⁾

군정보고서』, 149쪽).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서청단원 약 620명이 수도경찰청의 감독아래 12일 동안의 훈련을 받고 정규 경찰로 임명돼 제주도·여수·강원도에 배치되었다.”

235)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159쪽.

236)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312~314쪽.

237)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154~155쪽.

238)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151~153쪽.

239)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1. 12 ~ 11. 13 (No. 987)(『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46쪽). ;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163쪽.

240)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307~311쪽.

241)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1. 15 ~ 11. 16 (No. 989)(『제주4·3자료집-미

다. 초토화작전과 무차별 학살

무차별로 마을을 방화하고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는 이른바 ‘초토화작전’이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개되었다.

11월 13일과 15일에 이미 무차별한 집단학살을 자행한 후인 1948년 11월 17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법적 근거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하였다.²⁴²⁾ 그리고 토벌대는 무장대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구실 아래 중산간 마을 주민에게 해변 마을로 이주하라는 ‘소개령’(疎開令)을 내렸다. 그런데 이 소개령이 모든 마을에 채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을에 들어닥친 토벌대는 모든 가옥에 불을 지르고 노약자·어린이까지 닥치는 대로 살해하였다. 주민들은 난리를 피해 소개하거나 중산간 지대의 동굴에 은신 또는 입산해야 하는 양자택일만 있을 뿐이었다.

토벌대는 중산간에서 소개되어 온 사람들을 무조건 무장대의 지원자로 여겼으며, ‘도피자 가족’이라는 등의 이유를 붙여 학살하거나 소개지에서 간간이 이어진 무장대의 습격사건 뒤에는 이들을 화풀이 희생양으로 삼았다. 토벌대는 무장대와 교전을 벌인 것이라기보다는 은신해있던 불가항력의 주민들을 총살하거나, 중산간 마을의 소개민 또는 해변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고문과 학살극을 벌였던 것이다.²⁴³⁾ 토벌대는 또한 이 당시에 마을의 대청단장을

군정보고서」, 147쪽).

242) 관보 제14호(대통령령 제31호, 1948. 11. 17)와 관보 제26호(대통령령 제43호, 1948. 12. 31)에 따르면 1948년 11월 17일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1948년 12월 31일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계엄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김순태, 「제주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147~179쪽 참조.

243) 이러한 주민집단학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표선면 가시리는 소개령이 내려기 전인 1948년 11월 15일에 30여 명, 해변마을로 소개한 뒤인 12월 22일에 국민학교에 수용된 소개민 76명이 토벌대에 의해 무차별로 집단 학살당했다. 1948년 말 주돈군이 2연대로 교체된 후에도 참혹한 상황은 계속되었다. 당시 350여 가호의 마을인데 ‘제주도의 회 4·3특위’의 피해 조사에 의하면 신고한 사망자 353명과 유족이 없거나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 148명, 함께 50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 93~99쪽). ② 군·경 합동토벌대는 1948년 12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표선면 토산리 주민 약 150명을 무차별 학살하였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 102쪽).

비슷한 간부들과 경찰관 가족들까지도 무차별 총살했다.

그리고 초토화작전 초기에 숨어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토벌대는 해변 마을에 ‘노력 동원령’을 내리거나 ‘자수공작’ 등의 ‘함정토벌’을 벌여 수많은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였다.²⁴⁴⁾

제주도의 9연대와 대전 주둔 2연대(연대장 威炳善 중령)가 교체되는 시기는 9연대의 학살극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다.²⁴⁵⁾ 희생 사례별로 볼 때 그 전까지는 그나마 억지 ‘협의’라도 붙이려 애썼으나, 이때에는 협의 여부를 불문하고 마치 총살시킬 ‘머릿수’를 채우려 광분한 것처럼 무차별한 학살극을 벌였다. 이에 대해 미군 정보보고서는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평가하면서 “2연대 성공자들의 훌륭한 업적에 부응하려는 욕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²⁴⁶⁾ 9연대가 교체에

244) 다음은 ‘함정토벌’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① 1948년 12월 5일 외도지서에서는 장작을 마련해야한다며 동원령을 내려 이에 따라 집합했던 애월면 하귀·상귀·고성·광령리 청년 100여 명을 제주경찰서로 끌고 갔다가 옥지형무소로 보냈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구형무소에 감금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학살당했다.(『제민일보』, 1999. 4. 30. 제443회, 초토화작전 - 제주읍①, 외도리). ② 1948년 12월 초순께 토벌대의 ‘자수공작’에 따라 조천면 관내 200명 가량의 청년들이 군 주둔지인 함덕국민학교를 찾아가 자수하였다. 그러나 토벌대는 12월 21일 이들 중 150명을 ‘토벌 가자’며 숙여 ‘박성내’라는 냇가로 끌고 가 총살한 후 휘발유를 뿌려 태웠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4, 제11장 초토화작전① - 조천면). ③ 1949년 1월 3일 외도지서 경찰은 ‘인공기’를 들고 ‘갈증의’(감물을 들인 전통적인 제주의 노동복)를 입은 무장대로 위장하는 함정을 파서 이들에 걸쳐 제주읍 도평리 주민 70명 가량을 학살하였다.(『제민일보』, 1999. 5. 21. 제445회, 초토화작전 - 제주읍③, 도평리). ④ 1949년 1월 12일 무장대의 습격을 받은 남원면 의거리 주둔 2연대 2중대는 ‘자수공작’의 함정에 걸려든 수감자 80여명을 보복 학살하였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 140~141쪽).

245) 9연대의 주민학살과 관련하여 미군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① 12월 18일 9연대 2대대가 제주도를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 작전을 전개했다. 9연대는 이 작전에서 민간인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남자 130명을 사살하고 5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소총 1정과 칼 40자루, 장 32개를 노획했다.(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2. 23 ~ 12. 24 (No. 1021)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52쪽).

② 1948년 7월에 11연대의 철수로 다시 제주도에 주둔하게 된 9연대는 11연대의 ‘무대응’ 정책을 즉각적으로 무차별적 진압으로 대체하였다. 9연대는 폭도들과의 전쟁에서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9연대는 동시에 모든 저항을 없애기 위해 ‘모든 중간간 마을 주민들이 무장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하였다. 학살의 대부분은 9연대가 주둔한 1948년 12월까지 자행되었다.(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9. 3. 30 ~ 4. 1 (No. 1097) -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68~169쪽).

246)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2. 16 ~ 12. 17 (No. 1015)(『제주4·3자료집-미

앞서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을 진압한 2연대만큼 공격을 세우려 욕심을 부렸다는 의미였다. 토벌군의 교체는 대대 병력 단위로 일시에 이뤄졌는데, 2연대 선발대가 12월 17일 오후 8시에 제주에 도착했고 9연대 선발대는 12월 19일 밤 11시에 대전에 도착했다.²⁴⁷⁾ 12월 29일야야 연대교체가 마무리되었다.

‘4·3’ 당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희생자의 90%가 토벌대에게 학살당했으나, 남원면 남원리와 위미리, 구좌면 세화리, 애월면 구엄리, 표선면 성읍리 등은 무장대에게도 큰 희생을 당하였다.²⁴⁸⁾

무장대는 1948년 11월 28일 경찰지서 소재지인 남원리와 위미리를 동시에 습격하여 주민 60여 명을 무차별로 학살하였다. 당시 남원지서에는 용원경찰 20여 명을 포함해 약 30여 명의 경찰병력이 있었다.²⁴⁹⁾ 1948년 12월 3일 세화리를 공격한 무장대는 주민 48명을 무차별로 학살하였는데, 당시 세화지서에는 본서 직원 15명과 용원경찰인 충남부대 20명 등 약 35명 가량의 경찰이 있었다.²⁵⁰⁾

1948년 12월 19일 무장대는 신엄지서를 공격하는 체 하다가 구엄리를 집중 공격하여 주민 23명을 학살하였다.²⁵¹⁾ 이 때 구엄리 피습 소식을 듣고 애월지서의 문익도(文翼道) 경사가 출동하다 무장대의 공격을 받아 희생되었다.²⁵²⁾ 그런데 이들 사건에서는 무장대가 마을을 방화하고 주민들을 학살하는 동안에

군정보고서』, 150쪽).

247)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2. 19 ~ 12. 20 (No. 1017)(『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51쪽).

248) ‘4·3’의 발발 후 한동안 무장대의 공격대상은 경찰, 서청, 대청, 토벌대에 협조하던 우익인사 또는 그 가족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토벌당국의 ‘소개령’은 중산간마을과 해변마을을 갈라놓았고, 해변마을의 민보단을 앞장세운 토벌작전은 ‘제주도민끼리 싸우게 하는 대결구도’를 조장했다. 무장대는 1948년 11월 중순 이후 토벌대의 초도화작전이 전개되면서부터는 ‘토벌대 편’이라고 판단되는 마을을 집중 공격하였다. 이러한 무장대의 습격은 토벌에 동원되고 있는 해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복과 월동용 식량확보를 위한 자구책에서 비롯되었다.

249)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 122~130쪽. ;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 11. 29 ~ 11. 30 (No. 1000)(『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48쪽).

250)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 48~51쪽.

251) 『자유신문』, 1948. 12. 21.

252) 『제민일보』, 1999. 2. 19(제437회, 초도화작전 - 애월면①, 구엄리).

경찰은 지서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다가 무장대가 물러가면 화풀이 상대로 주민들을 보복 학살하였다. 1949년 1월 13일에는 군·경 합동토벌대가 마을을 비운 사이를 틈타 무장대가 성읍리를 공격하여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였는데, 확인된 희생자만도 34명에 달했다.²⁵³⁾

이처럼 몇몇 마을에서 벌인 무장대의 무차별 주민학살사건은 무장대와 일반 주민 사이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무장대는 스스로 고립되었고 해면 마을 주민들은 우익청년단에 적극 가담하거나 경찰에 투신하는 등 자발적인 토벌대 협조자가 되었다.

〈표 6〉 제주도 경찰국의 경찰관서 현황

(1949. 1. 18 이후)

경찰서	관할구역	지서	파출소	출장소*	파견소*
제주경찰서	제주읍, 애월면, 조천면, 추자면	삼양, 화북, 외도, 애월, 신업, 하귀, 조천, 함덕, 도두(1949.초)	남문, 동문, 서문, 수상	신촌(1948.4), 추자	어도·장전(1949.초), 아라·금덕·유신·해안·소길(1952)
서귀포경찰서	서귀면, 남원면, 중문면	남원, 위미, 신희, 서호, 중문, 도순(1949.초)		하원(1949.초)	신희(1949.초), 감산(1952)
모슬포경찰서	한림면, 대정면, 안덕면	한림, 두모, 고산, 저지, 무릉, 대정, 안덕		귀덕(1949.초), 금릉(1950.12), 조수(1950.초)	어도·고림(1952)
성산포경찰서	구좌면, 성산면, 표선면	김녕, 세화, 우도, 신산, 표선, 성읍		송당(1949.3), 표선면 세화(1949. 초)	알토산·웃토산(1949. 초)

출전 :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91~132쪽. ;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 ; 『제민일보』, 1998. 4. 25(제412회)~1999. 8. 28(제456회). ; 『제주신보』, 1950. 8. 1~1953. 7. 27.

* 주로 마을 주민과 당시 경찰관의 증언, 제주신보 기사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악된 것이어서 각 경찰서 관내의 출장소와 파견소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다.

한편 무장대의 마지막 공세에 대응하여 정부는 경찰력 강화를 위해 1949년 1월 18일 모슬포(제3구)경찰서와 성산포(제4구)경찰서를 증설하였다.²⁵⁴⁾ 그리고

253)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 87~90쪽.

무장대의 기습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경찰국→경찰서→지서→출장소→파견소'의 경찰구조에서 경찰관 출장소와 경찰관 파견소를 대거 신설하였다. <표 6>은 경찰서 증설에 따라 조성된 관할 구역과 각 경찰서 산하의 지·파출소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초토화작전 시기에 토벌당국은 마을 주민들과 재산 무장대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마을이나 주요 길목 등에 강고한 석성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한라산 밀림에 인접한 주요 거점마다 무장대에 대한 방어와 효율적인 토벌을 위해 각 경찰서별로 주둔소를 설치하였는데 전도에 40개의 주둔소가 있었다.²⁵⁵⁾ 경찰은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돌로 성을 쌓고 막사를 짓고 주둔경찰의 취사까지 담당하도록 하였다.²⁵⁶⁾ 주둔소와 경찰서 사이에는 무선으로 연락을 취했고 주둔소 사이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었으나 무장대가 자주 전화선을 끊어버렸다고 한다.²⁵⁷⁾

주둔소는 경찰이 고정 배치되는 정식 주둔소와 작전 때만 임시로 주둔하는 임시 주둔소가 있었다.²⁵⁸⁾ 명도암 주둔소, 관음사 주둔소, 붉은오름 주둔소 등의 정식 주둔소에는 무보수 경찰과 마을에서 강제로 차출한 청년들이 보초를

254) 『자유신문』, 1949. 1. 20.

255) 『제주신문』, 1952. 1. 6. 제주경찰서 관내 주둔소는 영평, 관음사, 어승생, 아라, 해안, 와흘 등지에, 서귀포서 관내는 모라오름, 녹하지오름, 법정오름, 시오름, 쌀오름, 예촌, 수악교 등지에 설치되었다.

256) 제주4·3연구소 편, 『4·3장정』 5, 1992, 79쪽. ① 시오름 주둔소 : 서귀포 서호리 해발 420m의 중산간에 위치한 '시오름 주둔소'는 높이 3m, 성굵너비 1m, 성의 3개의 모서리에 세워진 보초막 둘레가 각각 6m, 성 전체 둘레가 약 120m인 삼각형 형태로 1949년 초에 축성되었다. 서귀포경찰서에서 강정·범판·서호·호근 등지의 마을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여 한 달만에 쌓은 이 주둔소는 경찰 1명과 마을 청년 5~6명이 상주하여 보초를 섰다. 이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수류탄 2개와 99식 총 7자루가 전부였다. 성안에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근무자나 토벌군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마을 부녀자들이 살았다. 또한 토벌군들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여 명 이상이 갈 수 있는 마루방도 있었다. (『4·3장정』 5, 76~81쪽). ② 녹하지오름 주둔소 : 성 전체의 둘레가 120m 안팎의 사각형 모양의 주둔소로 60여 명의 군·경 병력이 동시에 취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창룡의 증언).

257) 당시 경찰관 좌옥윤(左玉允)의 증언.

258) 당시 경찰관 고창룡(高昌龍, 제주경찰 10기생)의 증언.

었다.

토벌대의 주민집단학살은 계속되었다. 1949년 1월 17일 조천면 북촌리에서는 이동중인 군인들이 무장대의 기습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자 군인들은 곧바로 인근 마을인 북촌리 주민 320여 명, 구좌면 동북리 주민 86명을 집단 학살하는 이른바 ‘북촌 학살사건’이 터졌다.²⁵⁹⁾ 그리고 2월 18일 무장대가 제주읍 도두리를 습격한데 대한 보복으로 토벌대는 2월 20일 제주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던 도내 전역의 주민 76명을 집단 학살하였다. 피살자 중에는 여성 5명과 중학생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²⁶⁰⁾

토벌당국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경찰의 작전 결과 폭도 사살 98명, 포로 64명이라는 전과를 올렸고 카빈 1정과 일제 소총 1정을 노획했다”²⁶¹⁾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문의 ‘노획한 무기’와, 이범식(李範奭) 총리 겸 국방장관²⁶²⁾이 1948년 12월 8일 국회에서 “현재 폭도수는 50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²⁶³⁾를 보면 정부의 ‘폭도 토벌’은 완전한 허구임을 알 수 있다.

1949년 2월 19일 서울지구의 특별경비대 및 철도경찰대 405명과 충남경찰 100명으로 구성된 경찰특별부대(지휘관 金泰日 경무관) 505명이 제주도에 파견되었다.²⁶⁴⁾ 그리고 3월 2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劉載興 대령, 참모장 咸炳善 중령)가 설치되면서 마무리 진압작전이 전개되었고, 4월 9일에는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제주도를 방문할²⁶⁵⁾

259)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 34쪽.

260)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9. 3. 2 ~ 3. 3 (No. 1077)(『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62쪽).

261)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9. 3. 15 ~ 3. 16 (No. 1088)(『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65쪽).

262) 초토화작전 당시 군·경 수뇌부는 다음과 같다. : 이범식 국무총리(1948. 8~1950. 4) 겸 국방장관(~1949. 3), 이응준(李應俊) 총참모장(1948. 12. 5~1949. 5. 8), 윤치영(尹致暎) 내무장관(1948. 8~1948. 12), 신성모(申性模) 내무장관(1948. 12~1949. 3).

263) 『국제신문』, 1948. 12. 9. 이범식 국무총리는 제주사태와 관련하여 4월부터 12월초까지의 전투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육군은 연인원 약 5,000명이 출동하여 1,000명 내지 2,000명으로 추산되는 폭도와 102차에 걸쳐 교전하였는데, 적에게 준 손해는 유기시체 421·포로 5,719명이며, 국군 측의 손해는 전사 3명·전상 8명이다.”(『한성일보』, 1948. 12. 10).

264) 『경향신문』·『국도신문』·『동아일보』·『자유신문』·『조선일보』, 1949. 5. 19.

정도로 정부의 통치력이 회복되어갔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194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토벌작전의 결과 ‘폭도’ 사살 1,075명, ‘폭도’ 체포 3,509명, ‘폭도’ 투항 2,063명이라는 전과가 나왔다. 그러나 미군정보고서는 이 자료에 언급된 ‘폭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유에 대해 “토벌대가 섬 중산간 지역에 사는 주민 모두를 통상적으로 폭도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²⁶⁵⁾

그런데 유엔 한국위원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49년 3월과 4월의 토벌과정에서 ‘폭도’ 2,345명, ‘민간인’ 1,668명이 살해되었고, 투항한 무장대 동조자는 3,600명에 이르고 있다.²⁶⁷⁾ 당시 토벌대는 무장을 갖춘 ‘폭도’의 주력부대를 300~4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간인 희생자는 물론이고 ‘폭도’ 희생자의 대다수는 토벌작전으로 인해 학살된 무고한 중산간 부락의 주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살은 병산의 일각일 따름이고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희생자들이 마을 곳곳마다, 한라산 기슭마다 숨겨져 있다.

미군정보고서는 “제주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민 1만 5천명이 살해당하고 주택의 1/3이 파괴되는 등 적대적인 이태올로지 대립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현장”이었다면서, 특히 “사망자의 최소한 80%가 토벌대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²⁶⁸⁾

일부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집단학살은 군과 서청, 그리고 응원경찰이 자행했다. <부록-표 5>는 토벌대의 민간인 학살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²⁶⁹⁾

265)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9. 4. 8 ~ 4. 11 (No. 1101)(『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74쪽).

266)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9. 5. 6 ~ 5. 9 (No. 1113)(『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78쪽).

267) 존 메릴, 앞의 글, 194쪽.

268)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9. 3. 30 ~ 4. 1 (No. 1097)(『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68~173쪽).

269) <부록-표 5>는 제민일보 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 3·4·5권과 동 신문의 연재 기사(1998. 4. 25, 제412회 ~ 1999. 8. 28, 제456회)에 실린 마을별 학살 상황을 1948. 5. 11~1949. 4. 5 까지 일자별로 학살 집행자를 경찰·군·서청 등으로 구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서청은 ‘민간인’ 신분의 서청을 말하며, 학살 집행자의 구분이 불확실한 경우

1948년 '5·10 선거' 직후 6월 중순까지는 응원경찰이 활발하게 토벌에 나섰으나 정부의 수립을 전후한 9월까지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10월 이후에는 정부의 완전 소탕 방침에 따라 군대가 토벌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집단학살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경찰의 학살행위는 꾸준히 이어져 <부록-표 5>의 희생인원 4,206명 중 경찰에 의한 학살이 602명(14.3%)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군·경 합동토벌에 의한 학살 중 경찰의 몫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다. 또한 장경근(張曠根) 내무차관의 발표에 의하면, 경찰특별부대가 파견되어 활동하였던 1949년 2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불과 80일 동안 경찰이 올린 전과는 '폭도' 사살 495명, '포로' 1,524명인데 비해 경찰 피해는 중·경상 5명으로 나타났다.²⁷⁰⁾ 이 기간과 <부록-표 5>의 기간에 중복되는 인원(16명)을 제외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학살이 확인되는 인원만도 1,081명에 이른다.

1960년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崔天)에 제출된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에 의하면, 인명피해 1,457명(남자 1,172명, 여자 285명) 중 군에 의한 학살 588명(40.4%), 경찰에 의한 학살 439명(30.1%), 기타 불명인 것 등은 430명(29.5%)으로 나타났다.²⁷¹⁾

따라서 1949년 6월 이후 특히 2연대의 철수 이후에 경찰전투대가 잔여 무장대의 토벌에 적극 나서게 되면서부터 자행한 학살과, 그리고 군·경 합동토벌에 의한 학살 중 경찰의 몫까지 포함하면 경찰에 의한 학살집행 비율은 20%를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는 토벌대로 분류했는데, 이것은 대개의 경우 군 또는 군·경 합동토벌에 의한 학살로 추정할 수 있다. 희생인원은 제민일보 4·3취재반에 의해 그 신원이 확인된 숫자이고, 팔호 안의 숫자는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자와 미확인자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기재된 희생인원은 전체 피학살자수 3만여 명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4,200여 명에 불과하다. <부록-표 5>는 논문 편집상의 이유로 부록에 배치하였다.

270) 『경향신문』, 1949. 5. 22.

271)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3, 313쪽. 국회 조사활동 구역에 갑작스럽게 제주도가 포함되면서 조사단이 내도(來道)하기까지 불과 4, 5일 만에 신고서 접수이 급히 이뤄졌다. 때문에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신고서 접수가 마감됨으로써, 판명된 인명 피해는 실제 사망자 숫자의 5%에도 못 미치는 1,457명에 그쳤다.

제주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자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되어 작전부대는 5월 17일 서울로 개선하였고, 제주도 파견 경찰특별부대도 140회 이상의 소탕작전을 수행하고 다음날 귀경하였다.²⁷²⁾ 그 후 잔여 무장대 소탕작전에 나선 2연대는 6월 7일 작전 중 무장대 총사령관 이덕구(李德九)를 사살함으로써²⁷³⁾ 제주도의 토벌전은 사실상 종식된 셈이었다.

그러나 ‘4·3’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제주도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처절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토벌대는 과거 한번이라도 토벌대에게 끌려갔던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장대에게 식량을 제공했거나 도장을 찍은 ‘명단’이 발견됐다면 예비검속하였다. 예비검속 대상자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던 경찰은 주로 해변 마을인 덕분에 그간 별 사건 없이 지낸 마을 주민이거나 또는 그간 ‘죄’가 없다하여 무사했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학살하였다.²⁷⁴⁾

그러면 예비검속은 무슨 근거로, 누가 명령해 어떤 식으로 처리하였는가. 토벌당국의 예비검속의 명분은 ‘적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는 자를 미리 제거한다’는 것이나, 예비검속의 희생자 중에 교사 등 유식자와 지역 유지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앞서 초토화작전때 벌어졌던 불법 학살극에 대해 말문을 막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당시 서귀포경찰서장은 제주도경국장으로부터 명령을 받고²⁷⁵⁾ 예비검속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는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검거하여 A·B·C·D로 분류하고, A·B·C급은 일단 억류했다가 석방시켰으나 D급은 총

272) 『조선일보』, 1949. 5. 18.; 『경향신문』, 1949. 5. 19.

273) 『동아일보』·『조선일보』, 1949. 6. 10.;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9. 6. 13 ~ 6. 15 (No. 1128)(『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181쪽).

274) 토벌당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된 한림·대정 지역의 2백여 명 중 1백 32명을 1950년 8월 20일 대정면 송악산 석알오름에서 학살하고 ‘백조일손지표’하였다. 당시 희생자 유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군·경은 검속자들을 배에 싣고 한 바다에 나가서 돌덩이를 매달고 수장시켜버리기도 하고 집단 총살을 한 후 매장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275) 보도연맹원 및 경찰 감시 대상자의 집단학살은 주로 경찰이 맡았고 형무소 재소자 학살은 군이 주로 관계하였다. 경찰의 학살 명령은 조병옥 내무부장관이 발령하여 치안국장과 각 도경국장을 거쳐 예하 경찰서로 하달되었다.(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612쪽).

살했다”²⁷⁶⁾고 밝혔다.

전술한 <표 4>의 제주도 경찰학교 교습과의 신규교육 졸업인원을 보면, 초 토화작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1948년 11월 중순 이후에 교육받은 제9기 수료생은 58명이다. 그리고 9연대와 2연대가 교체되는 시기를 전후한 1948년 12월 중하순경에 교육을 받은 제10기의 배출인원은 무려 128명에 달하고, 1949년 2월 초순에 입교한 제13기 졸업인원은 93명이나 된다. 이 시기에 경찰력이 크게 증강되었고 토벌대는 민간인 집단학살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하였다.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어서 경찰당국은 9기생을 특채로 모집하였는데, 정규교육도 시키지 않고 총 쏘는 법만 가르치고 토벌일선에 내보냈다고 한다.²⁷⁷⁾

<표 7> 제주도 경찰학교 (강습과) 졸업인원

기별	교육기간	졸업인원	기별	교육기간	졸업인원
1	1950. 11. 18 - 1950. 12. 2	73	4	1951. 1. 19 - 1951. 1. 27	39
2	1950. 12. 9 - 1950. 12. 22	79	5	1951. 2. 5 - 1951. 2. 25	39
3	1951. 1. 4 - 1951. 1. 17	59	6	1951. 2. 27 - 1951. 3. 3	26

출전 :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183쪽.

그런데 1949년 중반기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과 1951년 하반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신규 경찰인력의 모집과 배출이 없다. 대신에 ‘강습과 교육’ 즉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화교육이 실시되는데,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거 제주도에 들어온 육지부의 경찰경력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이 편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7>과 같이 강습과 교육과정을 통해 6기에 걸쳐 315명의 경찰인력이 배출되었는데, 증언에 의하면 이 기간에는 ‘특강 OO기’ 식으로 기수를 표기하였다.²⁷⁸⁾

276) 김호겸(金浩謙)의 증언. 그러나 채미교포 이도영 박사는 “당시 경찰은 좌익활동 혐의자를 잡아가다 A·B·C·D로 분류해 군에 넘겼다”면서 “C·D급은 처형하고 A·B급은 구금하다가 전쟁이 진정국면에 들어가거나 9·28 수복 등 승전 상황이 되면 풀어줬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00. 1. 11).

277) 高昌龍의 증언.

278) 김시훈(金時訓)은 서청의 ‘2백명 부대’의 일원으로 제주경찰에 재직 중 1949년 7월에

한편 해병대사령부가 제주도에 주둔하면서 해병대 2개 중대에 각 경찰서 소속 토벌대가 편입된 군·경 합동토벌대(해병대사령관이 총지휘)가 조직되어 토벌작전에 나섰다.²⁷⁹⁾

이성주(李成株) 도경국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의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1950년 8월 애국청년들을 대상으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의용경찰대(대장 姜必生 경위)를 조직하였다.²⁸⁰⁾ 이들은 제주도경찰국 직속으로 훈련과 무장을 갖추는 등 국립경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나, 경비는 각자가 부담하는 ‘무보수 경찰’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잔여 무장대의 소탕에 경찰토벌대인 신선대(대장 許昌洵 경위)와 맹호대가 활약하였다.²⁸¹⁾

이경진(李慶進) 도경국장은 1952년 11월 1일 ‘전방전투사령부’(일명 ‘100사령부’, 사령관 金源湧 총경)를 설치하고,²⁸²⁾ 그 예하에 3개 대대 12개 중대(중대 인원 25명, 소대 인원 12명)를 편성하여 잔여 무장대의 완전 소탕작전에 들어갔다. 각 대대 병력은 본부중대 요원을 포함하여 110명 가량으로 경찰서 또는 지서 소속으로 있으면서 차출하였고 3개월마다 교체하였는데, 100사령부의 총 병력은 330명 정도였다.²⁸³⁾ 100사령부 소속 대원들은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에

사표를 내고 2연대 군속으로 제주를 떠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재입소한 전직 경찰관이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이전의 경찰경력을 바탕으로 복직하려고 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경찰모집이 있기에 다시 지원, 1950년 10월 1일 입교하여 조천중학교에서 14일 훈련을 받고 ‘특강 1기’로 제주경찰에 복귀하였다. 이때 그와 함께 87명의 경찰이 배출되었다고 하는데 『제주경찰사』의 졸업인원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경찰특강 1기생인 김병숙(金柄淑)은 1950년 10월 20일에 경찰학교를 수료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279) 高昌龍의 증언에 의하면, 해병대 2개 중대에 제주경찰서+모슬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성산포경찰서가 편입되어 군·경 합동토벌대가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1949년 5월 15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 제2연대는 동년 8월 13일 독립제1대대(대대장 金龍周 소령)에게 토벌임무를 인계하고 인천으로 이동하였고, 독립제1대대가 동년 12월 27일에 철수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 申鉉俊 대령, 참모장 金聖憲 중령)는 동년 12월 28일 제주에 도착하여 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3월 21일 제주도에 육군 제1훈련소, 기타 부대가 창설되고 포로수용소가 설치됨에 따라, 이의 안전을 위해 1953년 1월 29일 유격전 특수부대인 무지개부대(부대장 朴蒼岩 소령)를 파견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신상준, 앞의 책, 597~598쪽에서 재인용.)

280) 『제주신보』, 1950. 8. 5. /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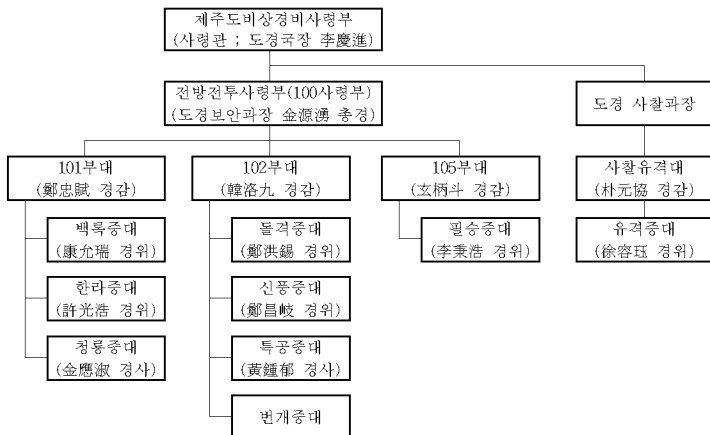
281) 『제주신보』, 1950. 8. 26 / 9. 16.

282)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318쪽.

283) 高昌龍의 증언.

서 2주일간 훈련을 받고, 카빈 또는 M-1 등의 소총과 수류탄 2개로 무장하여 계속 산 속에서 주둔하며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²⁸⁴⁾ 또한 도경국장 직속으로 도경 사찰과장 휘하에 사찰유격대를 별도로 운영하였다.²⁸⁵⁾ 당시 100사령부를 비롯한 경찰 토벌부대의 편제를 <표 8>과 같이 재구성해보았다. 이외에도 한 재길(韓在吉) 경감이 지휘하는 xxx 부대, 장석관(張錫罐) 경감이 지휘하는 경찰 전투대가 활동하였다.²⁸⁶⁾

<표 8> 경찰 토벌부대 편제



출전 : 『제주신보』, 1952. 11. 1 ~ 1954. 1. 31.

경찰 토벌부대의 철저한 소탕작전으로 1952년 1월 초에 76명이었던 잔여 무

284) 左玉允의 증언.

285) 『제주신보』, 1953. 4. 17 / 1954. 1. 15.

286) 『제주신보』, 1953. 1. 28 / 1. 30.

장대는 1953년 11월 초에 12명, 1954년 1월 중순경에 6명으로 줄어들었고,²⁸⁷⁾ 마침내 1954년 9월 21에는 한라산 입산 금지를 전면 해제함으로써 만 6년 6개월에 걸친 ‘제주4·3’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러나 ‘4·3’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찰관의 희생도 잇달았다. 안덕지서의 윤홍범(尹弘範) 순경이 1948년 12월 29일 출동 중 희생되었고, 1949년 1월 24일에는 이영호(李永浩) 경사, 김승은(金承銀)·고태수(高太秀)·김시택(金始澤) 순경 등 경찰관 4명이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사망하였다.²⁸⁸⁾ 1950년 9월 15일 무장대를 추격하던 서호지서의 변시윤(邊時胤) 순경이 역습을 당해 희생되었고, 1951년 3월 22일 무장대의 공격으로 조수길(趙秀吉) 경사가 사망했다.²⁸⁹⁾

‘제주4·3’ 당시 전사한 경찰관과 부상 경찰관은 270명에 달하였는데, 1953년도에 조성된 사라봉 충혼묘지에는 군전사자 440기·경찰전사자 122기, 합계 562기가 안장되었다. 그러나 1985년도에 속칭 ‘99골’로 이전한 제주시 충혼묘지에는 군인 494기·경찰 145기, 합계 639기가 안장되어 있다.²⁹⁰⁾

제주시 충혼묘지 경찰관 묘역의 전사자 139명 가운데 ①무장대가 기세를 올리던 시기(1948. 4. 3~11. 7)의 희생자가 39명(28%)인 반면에, ②토벌대의 초토화작전 시기(1948. 12. 5~1949. 3. 1)에 17명(12%)이, ③무장대가 거의 궤멸되 잔여 세력 몇 명만 남아있던 시기(1949. 5. 25~1956. 9. 30)에는 83명(60%)이 각각 희생되었다.²⁹¹⁾

287) 『제주신보』, 1952. 1. 6 / 1953. 11. 3 / 1954. 1. 15.

288)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 293쪽.

289)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 179 / 189쪽.

290) 제주도경찰국, 앞의 책, 341~374쪽. 『제주경찰사』에는 ‘제주4·3’ 당시의 경찰전사자 122명 명단과 전사자 92명 명단이 게재되어 있고,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된 145명의 전사 경찰관 명단이 게재되어 있다.

291) 경찰전사자 145명 중 최후의 빨치산 오원권이 생포된 1957년 4월 이후의 전사자 5명과 제주도를 벗어나 여수지구에서 전사한 1명을 제외한 1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먼저 '4·3' 시기에 활동하였던 제주경찰의 인적 구성과 그 성격을 분석하여 이들의 성향과 '4·3'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주경찰은 간부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일제경찰 경력자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극우 보수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고, 야만적인 사상 탄압이나 고문·테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제주경찰의 상층부와 하층부는 육지에서 파견된 상당수의 응원경찰·철도경찰·서청출신 경찰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이들은 제주만의 고유한 언어와 습속, 저항과 자치주의의 전통, 고립무원의 섬이라는 지리적 변방성 등의 요인으로 제주도민을 '섬 것들'이라며 멸시하였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하의 일본인들보다 더 혹심하게 제주도민들을 다루었다. 여기에 반공이데올로기가 결부되면서 '섬 것들'은 '동포'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었다. 이렇듯 육지경찰이 들어와 갖가지 횡포와 만행을 부리자 혈연적 유대가 강한 제주공동체는 '육지 것들'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제주도 제59군정중대와 미군정청 특별감찰관도 지적하였듯이, 육지출신 경찰들이 소수의 극좌분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온건 좌파와 중도파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폭력행위와 지속적인 탄압을 가함으로써 '4·3 항쟁'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제주경찰의 시기별 활동을 통하여 '4·3'의 원인과 주민학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규명하였다.

① '경찰조직 형성기'에 경찰은 도(道) 승격을 계기로 경찰기구 및 인력의 확충을 꾀하는 한편, 좌파 세력이 강한 제주도에 응원경찰의 파견을 통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② '응원경찰 공세기'에는 응원경찰의 '3·1절 발포'와 이에 항의하는 주민층의 '3·10 총파업'이 있었다. 그런데 미군정과 경찰은 3·1절 시위와 총파업을 '폭동' 또는 '북조선 세력과의 통모'로 규정하였고, 응원경찰을 추가 파견하

여 대대적인 검속과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였다. 또한 경찰력의 증강, 우익청년 단체의 육성과 세력 확장을 꾀하는 한편, '8·15 폭동음모사건', '1·22 검거사건', '2·7 검거사건' 등 제주의 좌파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은 '4·3' 주도세력들의 저항을 유발하여 무장봉기가 감행됨으로써 '4·3'의 발발에 육지출신 경찰들은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군·경 갈등기'에는 위상문제를 비롯하여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경비대와 경찰은 '4·3'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다. 미군정과 상황인식을 같이 한 경찰은 '4·3'을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폭동'으로 규정하여 초기의 무력 진압을 주장한 반면에, 9연대는 '제주도민과 경찰과의 충돌'로 보고 화평 정책을 추진하여 '4·28 평화협상'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갈등은 '5·1 오라리 방화사건', '5·3 기습사건' 등 경찰의 방해공작으로 표출되었고 결국 경찰의 주장대로 무력에 의한 토벌정책으로 급선회하였다.

④ '군·경 합동 토벌기' 초기에는 제주도 '5·10 선거'의 파탄으로 응원경찰이 토벌의 전면에 나섰다. 계엄상황도 아니었고 전투상황도 아닌 곳에서도 경찰은 비무장의 주민을 '폭도'로 사살하거나 '포로'로 붙잡아 고문하였다. 7, 8월의 소강상태를 거쳐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면적인 무력소탕 방침에 따라 최대의 응원경찰대가 투입되었고 제주경찰의 책임자가 이복출신으로 교체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 무장대에 대해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세력으로 인식하였고, 초토화작전을 위해 해안선 5km 이상 지역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이어서 '여순사건'의 발생으로 9연대의 '숙군'과 함께 '경찰 프락치' 색출작업을 벌였고 제주읍내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대거 처형하였다.

미군정과 경무부는 서청을 경찰 보조기구인 임시경찰로 활용하는 등 서청과 간접적 비공식적 협조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은 정식경찰로 임용하여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로 격상하였다. 이승만의 사주를 받은 서청은 민간인 신분으로 또는 군인이나 경찰의 신분으로 '제주학살'의 선봉에 나섰다.

군이 토벌의 전면에 나서면서 군과 경찰은 중산간 지대와 해변 마을을 각각

분담하거나 군·경 합동으로 무장대를 토벌하는 등 협조체제로 전환하였고 엄청난 학살을 자행하였다.

중앙집권적 경찰체제하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경찰 수뇌부는 제주사람은 ‘빨갱이’라는 편향된 이념을 응원경찰에게 주입시키고 주민학살을 사주하였다. 당시에 ‘빨갱이’는 ‘죽여야 할 자’, 더 나아가 ‘죽여야 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²⁹²⁾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므로 경찰은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그들을 학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폭도’ 수는 불과 5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미군정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제주 4·3’에 대한 진압은 ‘폭도 토벌’이 아니라 비무장의 마을 주민을 집단 학살한 엄청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

‘4·3’의 기간을 통틀어 전체 피학살자 3만 명의 90% 정도가 토벌대에 의한 학살이고, 이 중에 20% 이상이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경찰관 전사자는 139명(군인 전사자는 494명)이다. 그런데 경찰 전사자의 60%가 ‘폭도’들이 거의 궤멸돼 ‘잔여 공비’ 몇 명만 남아있던 시기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하면 경찰은 대개가 무장대와 직접 교전을 피하고 꼼짝 았다가, 무장대가 물러가면 마을에 있는 불가항력의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 학살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무장대 세력이 거의 약화된 이후에야 방심한 경찰이 비로소 ‘적진’인 한라산 밀림 속으로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학살의 최고·최종 책임은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한국군과 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한 미군에게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청장에서 일개 지서의 순경에 이르기까지 제주 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를 포함하여 주민집단학살 지시에 항거한 경찰은 극히 드물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4·3’ 시기에 제주경찰이 수행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92) 황상익,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337쪽.

첫째, 제주경찰은 소극적 의미의 치안 유지 활동이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건국'과 '호국'을 위한 '준군사적인 전투 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제주경찰은 각종 조작 행위 및 고문과 집단 학살을 자행한 '국가폭력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중앙집권적 경찰체제하에서 제주경찰은 미군정과 조병옥·이승만 등 '단정 추진 세력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제주경찰은 친일파 또는 이복출신이라는 배경을 지닌 '극우반공주의자들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4·3' 당시의 경찰의 작전명령서 또는 작전일지, 일일동향 보고, 인사명령서 등의 1차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제주경찰의 활동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제주경찰의 고위직 간부들의 일제시대 또는 해방 이후의 경력이 제대로 추적 안된 경우도 많았다. 계속적인 추적 보완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 록

<부록-표 1> '4·3' 전후의 제주도 경찰 최고 책임자

성명	계급	재임시기	재임기간	출신지	일제 및 해방이후 경력
姜仁秀*	감찰관	1946. 7.31 -1946. 9. 7	4월	전남	여수경찰서 순사(1930), 여수경찰서 경부보(1937), 장진경찰서 경부보(1940), 해방이후 나주경찰서장(1946.2.1-5.18), 제주경찰서장(1946.5.18-8.22), 제주감찰서장, 경찰전문학교 총무과장(1947), 전남경찰청-여순사건에 피살(1948)
金大奉	감찰관	1946. 9. 8 -1946.12. 2	3	제주	일본 동지사대 경제학부, 제주교회 부설 영흥학교 교사, 해방이후 초대 제주감찰청장, 경무부 공보실장(1947-1948), 내부부버서실 총무과장(1949)-남북(1950)
申宇均*	감찰관	1946.12. 3 -1947. 2.19	3	충남	충남 서천경찰서 순사(고등계형사, 1937), 제주감찰청 총무과장(1946.9.18-11.21), 복시환사건으로 파면(1947)
姜仁秀*	감찰관	1947. 2.20 -1947. 3.30	2	전남	위와 동일
金英培	총경	1947. 3.31 -1948. 4.16	14	서울	일본 와세다대학, 인천상업전문학교교장, 서울대 사무국장(1947), 전남경찰청장 보좌관(1948), UN한국재건단 서울사무소 인사관
崔 天	총경	1948. 4.17 -1948. 6.16	2	경남	신간회, 항일활동, 경남반탁투쟁위부위원장, 인천경찰서장(1947-1948.3), 경북도경 경무과장(1949.5-1950.5), 경남도경국장(1950.7-1950.11), 국회의원(3,4,5대), 국회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위위원(1960)
金鳳昊*	총경	1948. 6.17 -1948.10. 5	4	제주	동경제대 정치학부, 고등문관시험 합격, 신의주경찰서 경부(1942), 제2관구(강원도)경찰청 부청장(1946), 제5관구(경북)경찰청 부청장(1949), 상공부 광경과장(1949), 외자청 조정국장(1952), 변호사
洪淳厚*	경무관	1948.10. 6 -1949. 7.28	10	평남	평양고보 중퇴, 일제경찰로 경부보 시험 합격(1922), 경부승진(1923), 만주군무(1935, 만주국행정참사관), 경찰전문학교 교양과장(1947), 경무부 공안국부국장(1948), 반민법과 동시 헌병으로 피신, 헌병대장·헌병학교장, 6대치안국장(1952.3.18-5.25), 대한방범시보 사장
沈亨澤	경무관	1949. 7.29 -1950. 4.26	9	평남	전남광주경찰서장(1945.11-1946.5), 전남도경경무과장(1946)충남도경국장(1950), 전남도경국장(1950.8-1951.4)
李成株	경무관	1950. 4.27 -1950.10.11	6	함남	독축국민회청년단·대동청년단 위원장, 대한청년단 부단장(1948), 치안국 사찰과장(1949.6.13-1950.4.26), 경남·충북도경국장(1950-1952), 9대 치안국장(1953.10.5-1954.3.27), 국회의원(3,4대)
李鍾樞	경무관	1950.10.12 -1951. 4.18	6	평남	평양사범학교, 고등문관시험 합격, 전남포부 재무과부서기(1939), 덕천군수, 해방이후 광주사법학교장(1945), 경찰전문학교장(1950.7.28-10.11), 치안국 교육과장(1951.4.19-5.2)

참고) ① <부록-표 1>, <부록-표 2>, <부록-표 3>, <부록-표 4>에서 ' * '는 일제경찰 경력자, ' # '는 일본군 출신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이다. ② 趙俊泳: 인사명령만 있었을 뿐 현지에 부임하지 않아 당시 제주도경국장은 공석이었다.(『제주신보』, 1951. 8. 18).

성명	계급	재임시기	재임기간	출신지	일제 및 해방이후 경력
尹明運*	경무관	1951. 4.19 -1951. 7. 8	3월	황해	경성철도학교, 용산경찰서 순사(1932), 경성본정경찰서 순사부장(1937), 경성본정경찰서 경부보(1940), 영등포·종로·성동경찰서장(1945-1950), 수도경찰청 보안과장, 강원도경국장(1950.1-1950.8), 태백산지구 전투경찰대사령관(1950), 전북도경국장(1951.7-1951.11), 치안국 정보·경무과장(1951.12-1952.7), 서울시경국장(1952.9.8-1953.10.5), 국회의원(4,5대)
趙俊泳	경무관	1951. 7.27 -1951. 8.16	1	경북	보성전문학교, 문경·상주·대구경찰서장(1945.11-1947.9), 경북도경 통신·보안과장(1947.9-1949.2), 전남도경 보안과장(1949.7-1950.1), 경북도경국장(1950.1-1951.7)
尹錫烈	경무관	1951. 8.17 -1952.10.12	14	경북	철도경찰본대 경비과장(1949), 대구철도경찰대장(1949-1950)
李慶進*	경무관	1952.10.13 -1954. 8.27	22	서울	상업학교, 동대문경찰서 순사(1937), 해방이후 경기도경 수사과장, 전북도경 보안과장(1949.12.3-?), 삼척·춘천·공주·영도경찰서장(1950.12-1952.10), 전방전투사령부(제100사령부) 설치(1952.11)

<부록-표 2> '4·3' 전후의 제주도 관내 경찰서장

경찰서	성명	계급	재임시기	재임기간	출신지	일제 및 해방이후 경력
제주경찰서장	朴炯奎*	경부	1945.10.21 - 1946. 1.18	3월		일제 순사부장, 해방이후 전남제주경찰서장
	金昌禧*	경감	1946. 1.18 - 1946. 5.18	4	제주	제주경찰서 순사(1930-37)·순사부장, 해방이후 전남제주경찰서장
	姜仁秀*	경감	1946. 5.18 - 1946. 8.22	3	전남	<부록-표 1> 참조
	姜東孝*	경감	1946. 8.22 - 1947. 5.24	9	제주	여수경찰서 순사(1930), 구례경찰서 순사(1932), 제주경찰서 순사(1937), 수뢰험의 해임
	金次鳳*	경감	1947. 5.24 - 1947. 9.26	4	제주	일본중앙대 법과, 여수경찰서 순사(고등계형사, 1937), 제주감찰청 총무과장(1946.11.21-1947.1.21), 제주감찰청 부청장(1947.1.21-5.24), 제주읍장(1948)
	文龍彩#	경감	1947. 9.26 - 1948. 5. 4	7	평남	만주군 대위, 해방이후 군영, 김익렬과 소위임관 동기, 7연대 창설요원, 제주도경 수사과장(1947.7.?-9.26), 16연대장(1950.6.10-?), 준장 예편
	成凡用*	경감	1948. 5. 4 - 1948. 8. 3	3	전북	경읍경찰서 순사(1932·1937), 제주감찰청 수사과장(1948.2.10-5.3)
	張永萬*	경감	1948. 8. 3 - 1949. 2.18	6	경북 전북	영주경찰서 순사(1932), 군산경찰서 순사(1937)
	朴大義	총경	1949. 2.18 - 1949.10.18	8	충남	제주감찰청 사찰과장(1948.5.7-9.18), 경남도경 근무(1950.7.28-?)

경찰 서	성명	계급	재임시기	재임 기간	출신 지	일제 및 해방이후 경력
제주 경찰 서장	柳根德	총경	1949.10.26 - 1950. 9.23	10월	전남	강릉경찰서장(1950.9-1952.5), 강원·충북도경 정보과장(1951-1953)
	李正肅*	총경	1950. 9.24 - 1951. 4.25	7	전남	제주경찰서 순사(1932·1937), 해방후 전남경찰청(경위), 곡성·광산·담양·광주경찰서장(1946-1948), 제주도경 경무과장(1949.10.21-1950.9.24)
	鄭周八*	총경	1951. 4.26 - 1952. 9.16	17	강원	고성경찰서 순사(1937), 인제·춘천경찰서장(1947-1949), 경남도경 정보·수사·보안과장(1953-1955), 장흥·여수·조치원경찰서장(1955-1959), 서울시경 수사과장(1960)
	朴仁燮*	총경	1952. 9.17 - 1953.10.30	14	황해	충로경찰서 순사(1937), 전남·경기·전북도경 정보과장(1953-1958), 영동경찰서장(1958-1959)
	辛尙洙	총경	1953.10.31 - 1954. 4. 5	6	경북	의성·상주·포항경찰서장(1949-1951), 경남도경 정보과장(1955), 강원도경 정보과장(1957)
	崔蘭洙*	총경	1954. 4. 6 - 1954.10.15	6	충북	동경법정대학, 군산경찰서 순사부장(1937), 고창경찰서 경부보(1939), 4·3당시 제주특별수사대장(1948.5.18-7.초?, 1948.11-1949.1),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반민특위위원 암살음모(1948), 대구철도·남원경찰서장(1950-1953), 충남·전남·전북도경 정보·수사과장(1953-1955), 춘천·김제경찰서장(1956-1959)
서귀 포경 찰서 장	劉起柄*	경감	1946.11.14 - 1948. 6. 2	19월	제주	제주경찰서 순사(1930·1932), 강진경찰서 경부보(1939), 제주도경 경무과장(1948.11.13-1949.11.2), 영암·무안경찰서장(1950-1952)
	劉在景	경감	1948. 6. 2 - 1948. 6.10	8일	평남	함양경찰서장(?), 거제경찰서장(1949)
	劉起柄*	경감	1948. 6.10 - 1948.11. 3	5월	제주	위와 동일
	全世傑	경감	1948.11. 3 - 1949. 3.10	4	함남	순직(경감에서 총경 추서, 1951.1.11)
	鄭東源	경감	1949. 3.10 - 1949. 6. 8	3		
	金浩謙#	경감	1949. 6. 8 - 1950.12. 3	18	경기	만주군 하사관, 경찰전문학교 경리과장(1947), 제주비상경비사령관 부관(1948), 제주경찰서 총무주임(1949), 양산(1953)·거제(1954)·과주경찰서장(1957)
	金成一	경감	1950.12. 3 - 1951. 7.19	8	평남	순직(경감에서 총경 추서, 1952.7.22)
	董得春*	경감	1951. 7.19 - 1952.10.31	15	함북	함북 훈음경찰서 순사(1937), 모슬포경찰서장(1950.12.2-1951.7.18)
	金洪權	경감	1952.10.31 - 1953. 4.28	6	함북	서청 전투경찰대, 모슬포경찰서장(1953.8.19-1954.10.15)
	許昌洵	경감	1953. 4.28 - 1954. 4.19	12	함북	서청 전투경찰대, 제주도경 사찰계장(1950), 제주특별수사대장(1950), 신선대장(1950), 경찰전투대 유격대장(1952), 성산포경찰서장(1952.11.19-1953.8.18)

경찰 서	성명	계급	재임시기	재임 기간	출신 지	일제 및 해방이후 경력
모슬 포경 찰서 장	文亨淳	경감	1949. 1.18 - 1949.11. ?	10월	이북	만주독립군, 서청 전투경찰대, 세화지서장(1948.2), 제주경찰청 기동대장(1948.?-1949.1.18), 성산포경찰서장(1949.11.?-1950.12.1), 경남 함안경찰서장(1951)
	康文植	경감	1949.11. ? - 1950.12. 1	13	제주	서귀포경찰서 전투중대장(1948), 성산포경찰서장(1949.1.18-11.?, 1953.8.19-11.10)
	董得春*	경감	1950.12. 2 - 1951. 7.18	7	함북	위와 동일
	韓在吉	경감	1951. 7.19 - 1951.12.30	4	제주	김녕지서장(1947), 제주도경 보안과 기동대장(1953)
	康文植	경감	1952.11.19 - 1953. 8.18	9	제주	위와 동일
	金洪權	경감	1953. 8.19 - 1954.10.15	14	함북	위와 동일
	康文植	경감	1949. 1.18 - 1949.11. ?	10	제주	위와 동일
성산 포경 찰서 장	文亨淳	경감	1949.11. ? - 1950.12. 1	13	이북	위와 동일
	金寶鉉	경감	1950.12. 2 - 1952.11.18	23	제주	
	許昌洵	경감	1952.11.19 - 1953. 8.18	9	함북	위와 동일
	康文植	경감	1953. 8.19 - 1953.11.10	3	제주	위와 동일
	玄柄斗	경감	1953.11.11 - 1954.10.15	11	제주	일본관서대 법과, 제주경찰서 수사계장(1949.1), 성산포경찰서 경무주임(1949.7), 제주도경 보안과 작전계장(1952), 105부대장(1953), 모슬포서장(1954.10.15-1957.8.1), 서귀포서장(1957.9.18-1958.6.1)

참고) 모슬포경찰서장 관련 한낙구(韓洛九) : 제주경찰서 사찰계장(1953), 102부대장(1953), 모슬포경찰서장(1954.1) - (『제주신보』, 1953. 7. 15 / 1954. 1. 31), 전북도경 정보과장(1960).

<부록-표 3> ‘4·3’ 전후의 제주도 경찰국 간부의 출신과 경력

직명	성명	재임시기	출신 지	일제 및 해방이후 경력
총무 · 경무 과장	申宇均*	1946. 9.18 - 1946.11.21	충남	<부록-표 1> 참조
	金次鳳*	1946.11.21 - 1947. 1.21	제주	<부록-표 2> 참조
	趙漢龍	1947. 1.21 - 1947. 3.10	제주	한림지서 주임(1946), 제주경찰서 총무계장(1947.3.10-?), 제주도경 통신과장(1947.1.21-4.1), 조천지서장 재임중 김용철 고문치사사건(1948.3.6) 혐의-징역

직명	성명	재임시기	출신지	일제 및 해방이후 경력
총무·경무과장	田文淳*	1947. 3.10 - 1947. 9.26	평북	용진경찰서 경부보(1932), 제령경찰서 경부(1937), 제주도경 수사과장(1947.9.26-1948.2.10, 1953.10.18-1955.2.5)·통신과장(1947.5.8-11.17), 충무·밀양·영도경찰서장(1949-1950), 경남도경 수사·경무과장(1950-1952), 전남도경 경무과장(1953)
	李炯錫*	1947. 9.26 - 1947.12. 4	평북	일본육사(45기), 일본군 장교(중좌, 스마트라철도부대사령관), 충무과장 사퇴후 특별임용으로 경비대 입대, 판구사령관, 소장 예편, 전사편찬위원장 역임
	田文淳*	1947.12. 4 - 1948. 5. 4	평북	위와 동일
	金永磷*	1948. 5. 4 - 1948.11.13	전남	목포경찰서 순사(1932), 제주경찰서 순사(1937), 서귀포경찰서 수사계장(?-1947.5.24), 성산포지서장(1947.5.24-?), 제주도청 충무국 회계과장(1949)
	劉起柄*	1948.11.13 - 1949.11. 2	제주	<부록-표 2> 참조
	李正庸*	1949.11. 2 - 1950. 9.23	전남	<부록-표 2> 참조
	玄圭柄	1950. 9.24 - 1952. 5. 9	경북	정읍·이리·군산경찰서장(1948-1950), 충북도경 경무과장(1952-1953), 경찰전문학교장(1953), 제주도경국장(1956-1957), 치안국 경무과장(1957-1958), 전남도경국장(1958), 변호사
보안·공안장	姜基泉*	1952. 5.10 - 1954. 9.22	제주	제주경찰서 순사(1937), 제주도경 수사과장(1946.11.21-1947.2.14), 제주경찰서 충무계장(?-1947.3.10), 서귀포경찰서 공안계장(1947.3.10-5.24), 서귀포서 수사계장(1947.5.24-?), 제주지검 수사과장(1949), 제주도경 사찰과장(1951.5.3-1952.5.10)
	崔正植*	1946.11.21 - 1947. 1. 3	전북	명치대 경제학과, 담양경찰서 순사(1937), 제주통운회사 지배인, 제주목재회사와 통조림회사 대표취체역, 제주경찰에서 파면(1947.1.3), 전남도경 정보과장(1949.4.13-7.13), 장흥경찰서장(1949.7.13-10.22), 제주도경 보안과장(1951.8.27-1952.5.20)
	金泰岩*	1947. 1. 3 - 1948. 5. 7	전남	완도경찰서 순사(1932), 성산포지서 주임(1946)
	康成謨	1948. 5. 7 - 1948. 9.18	제주	일제대 중문면 서기, 서귀포 제력가, 해방후 독립촉성국민회 활동, 제주경찰청 공안과장 특채, 반민특위 황해·제주지부 사무국장 겸 조사관(김구 추진, 1948.9-1949.4), 서귀면장(1949.4-1950.7), 제주주둔 해병대가 학살·수장(1950.7), 제주도경 통신과장(1947.11.17-1948.9.18)
	裴一範*	1949.11. 2 - 1951. 4.18	경북	종로경찰서 순사(1937), 만주국 간도성 경위 역임, 전남경찰부 경무과 근무(1946), 장성·보성·구례경찰서장(1948-1949), 치안국 근무(1951.4.19-?)
	金基蕤	1951. 4.19 - 1951. 8.26		용인경찰서장(1949-1950), 국회경비대장(1952), 부산중부·진해경찰서장(1952-1953)
	崔正植*	1951. 8.27 - 1952. 5.20	전북	위와 동일, 휴직(1952.5.20)

직명	성명	재임시기	출신지	일제 및 해방이후 경력
보안· 공안과장	金源湧	1952. 5.25 - 1953.10.30	전북	일본중앙대. 치안국 근무(총경, 1951.4.5-?). 제100전투경찰사령관(1953). 경찰전문학교 근무(1953.12.15-?). 전북도경 경비·보안과장(1954-1957). 원주경찰서장(1957-1958)
	康達庸	1953.10.31 - 1954.10.15	제주	제주농업학교. 제주경찰서 사찰주임(1948). 제주도경 사찰과 분실장(1949). 제주경찰서장(1954.10.16-1955.4.27). 제주도경 경무과장(1956.8.7-11.15, 1957.7.10-11.15). 전북도경 경비과장(1958-1959). 조치원경찰서장(1959-1960)
수사과장	姜基泉*	1946.11.21 - 1947. 2.14	제주	총무·경무과장 참조
	金元浩*	1947. 3.10 - 1947. 7. ?	제주	제주경찰서 순사(1932·1937). 제주감찰청 수사과 근무(1946). 한림지서 주임(1947.1.21-3.10)
	文龍彩#	1947. 7. ? - 1947. 9.26	평남	<부록-표 2> 참조
	田文淳*	1947. 9.26 - 1948. 2.10	평북	총무·경무과장 참조
	成凡用*	1948. 2.10 - 1948. 5. 3	전북	<부록-표 2> 참조
	張熙重	1948. 5. 3 - 1948. 9.18		가평경찰서장(1949.3.2-12.4). 광산경찰서장(1951-1952). 서남지구전투경찰대사령부 근무(경감, 1953)
	金吉明*	1949.11. 2 - 1951. 4.25	전남	곡성경찰서 순사(1930·1937). 진도경찰서장(1948). 치안국 근무(1951.4.26-?)
	金九坤*	1951. 4.26 - 1951. 8.26	경남	함안경찰서 순사(1937). 충북경찰학교장(1951.8.27-?). 경남도경 수사과장(1952)
	白漢鍾	1951. 8.27 - 1953.10.16	경남	만주 신경법정대 정치과, 전북도경 경무과장(1950). 치안국 근무(1953.10.17-?). 부령·동래경찰서장(1954-1955). 진해경찰서장(1957-1958). 경기도경 보안·경비과장(1958-1960)
	田文淳*	1953.10.17 - 1955. 2. 5	평북	위와 동일
통신· 경비과장	趙漢龍	1947. 1.21 - 1947. 4. 1	제주	총무·경무과장 참조
	玄梧鳳	1947. 4. 1 - 1947. 5. 8	제주	일본홍국상업학교. 제주경찰감찰청 공보실장(1947.5.8-6.?). 상공부법령제정. 국회의원(4.6,7,8,9,10대)
	田文淳*	1947. 5. 8 - 1947.11.17	평북	총무·경무과장 참조
	康成謨	1947.11.17 - 1948. 9.18	제주	보안·공안과장 참조
	崔權洙	1949.11. 2 - 1951. 4.25	전남	전남·전북·서울시경 통신과장(1951-1959). 남대문경찰서장(1960)
	元甲喜	1951. 4.26 - 1952.11. 5	충남	충남도경 통신과장(1954-59). 홍성·천안경찰서장(1959-1960)
	崔東坤	1952.11. 5 - 1954. 4.10		강원·전북·서울시경 통신과장(1955-1960). 경기도경 경무과장(1960)

직명	성명	제임시기	출신지	일제 및 해방이후 경력
사찰·정보과장	朴大義	1948. 5. 7 - 1948. 9.18	충남	<부록-표 2> 참조
	李斗煥*	1949.11. 2 - 1951. 4.25	전남	화순경찰서 순사부장(고등계형사, 1930·1937). 전남 배급통제회 서기장. 전남 임업합명회사 전무취체역. 전남도경찰부 특무계장(1945). 해방이후 광산·진도·보성·전남광주경찰서장(1946-1948). 치안국 정보수사과 근무(1951.4.26-?). 충북도경정보과장(1951-1952)
	姜基泉*	1951. 5. 3 - 1952. 5. 9	제주	충무·경무과장 참조
	朴文琪*	1952. 5.10 - 1953. 3.31	경남	부산경찰서 순사(고등계형사, 1932·1937). 동래·마산·부산 중부경찰서장(1946-1951). 경남도경 경무과장(1950). 전남·경북도경 정보과장(1953). 서울시경 보안과장(1955). 종로·전남광주·대구경찰서장(1954-1957). 영등포·마포·동대문경찰서장(1957-1960)
	董胎藝*	1953. 4. 1 - 1953.10.30	함남	원산경찰서 순사(1937). 제주감찰청 사찰주임(1948.7). 전북 장수경찰서장(1950). 경남도경 사찰과장(1952). 전북도경 사찰·정보과장(1953-1955). 전남·서울시경 정보과장(1955-1957). 정읍경찰서장(1958-1959)
	李湧垠	1953.11. 9 - 1955. 8.17		완도·별교경찰서장(1948). 강원도경 경비과장(1955-1956). 경기도경 정보과장(1960)

참고) 董胎藝와 관련 : 동태운 또는 동태훈(薰)으로 기록된 자료도 있다.

<부록-표 4> '4·3' 관련 경찰 수뇌부와 용원경찰 간부의 출신과 경력

성명	출신지	일제시기 경력	해방이후 경력
趙炳玉	충남	송실전문. 콜롬비아대. 연희전문교수. 신간회 중앙위원. 민중대회 사건으로 투옥. 보인광산회사(1937-1945)	경무부장(1945.10.21-1948.8.31). 한민당 총무. 내무부장관(1950.7-1951.5). 국회의원(3,4대). 민주당 대통령후보
崔慶進*	함남	구주제대 법문학부. 고등문관시험 합격. 함경남도 경부(1937). 평남 강동군수(1938). 평남경찰부 보안과장 경시(1941). 총독부 학무국·경무국 사무관(1943-1944). 방위총본부원(1945)	초대 경무부 차장. 변호사 개업. 한국전쟁시 남북
金正浩# (晧)	전남	법정대학. 일본육군 중좌	제5관구(경북)·제3관구(충남)경찰청장(1946.10.5-1947.4.23). 경무부 교육국장(경찰전문학교장 겸)·공안국장(제주비상경비사령관 겸) ; 1948. 4.5-5.?). 육군106사단장. 육본 병무감. 준장예편. 국회의원(3대)

성명	출신지	일제시기 경력	해방이후 경력
趙炳奭*	충남	경성제대 법과,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 전남내무부 지방과 속 (1939). 전남 경부 (1942). 강원도 경부 홍천군수(1942)	제2관구(강원)·제6관구(전북)경찰청장(1946). 경무부 감찰실장(1947.2). 경무부 수사국장(1948)
張永福*	평남	평양상업학교, 평남 영원경찰서 순사(1932). 양덕경찰서 경부보(1937). 평양경찰서 경부보(1939)	경무부 공안국부국장. 제주읍 3·1절 발포사건 진상조사위원(1947.3.14-3.19). 제주감찰청장고문관(1947.3.14-3.31). 경기도경국장(1948-1950). 치안국 정보·경무과장(1950-1951). 경북·충북도경국장(1953-1955). 치안국 보안·경비·수사과장(1954-1956). 전북도경국장(1958-1959)
金泰日*	평남	명지대, 평남 중화경찰서 순사(1932). 영원경찰서 경부보(1937). 개천경찰서 경부보(1939)	제1관구·수도경찰청 부청장(1947). 제주감찰청장 고문관(1947.3.14-3.31). 치안국 비상경비사령관(1949). 제주도폭도진압경찰 총지휘관(1949.2.19-5.15). 경찰전문학교장(1949-1950). 치안국 경무과장(1950-1951)
李 虎	함남	일본 와세다대 법과	제주특별수사과장(1947.3.16-5.7). 목포감찰서장(1949). 대동청년단 목포단부 고문(1949)
申道宗	전북	고창중학, 먼서기	제주특별경비과장(1947.3.16-5.7). 무주경찰서장(1947-1948). 충남 금산·부안·남원·정읍·김제·영진경찰서장(1948.3-1956.2). 충남도경 수사과장(1956). 울산경찰서장(1956). 제주도경 수사과장(1956-1957). 전북도경 경무과장(1958-1960)
崔致煥#	경남	만주신경관학교	제주용원경찰(1948). 치안국 경무과(총경,1949). 지리산지구건투경찰대사령관(1949.9.27-?). 국립경찰전문학교(1949.12.3-?). 치안국 보안·경무과장(1950-1954). 경남·전북·충북·서울시경국장(1954-1958). 경무대비서관(1958). 공보처장(1960). 국회의원(5,6,7,10,12대). 경향신문사장(1971-1974)
金京述*	충북	보은경찰서 순사(1937)	증문지서 용원경찰(1947.3). 보은경찰서장(1946.11-1947.8). 제천·영동경찰서장(1947.8-1950.11). 대구철도경찰대장(1951.8.27-?). 전남도경 수사과장(1952-1954). 경남도경 수사·경비과장(1955-1957). 충북·경남도경 정보과장(1957-1959)
朱哲淳			수도경찰청 소속(경감). 제주특별수사대장(1948.7.10-10.4)
柳忠烈	전북	서울 숭문중학	제주용원경찰(1948.10.2-?). 마포·용산경찰서장(1950-1953). 서울시경 경무과장(1953-1954). 서울중부·인천경찰서장(1954-1956). 제주도경국장(1957.4.4-10.17). 충남·경남·서울시경국장(1957-1960). 벽성대학장
金永台*	전남	명지대 법학부, 나주경찰서 순사(1937)	전남경찰청 수사과부과장(1948). 제주용원경찰대 중대장(1948.10.2-12.2). 고흥·화순·나주·영암·장성경찰서장(1948.11-1953.6)

<부록-표 5> 토벌대의 민간인 학살 상황

(1948. 5. 11 ~ 1949. 4. 5)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5. 11	한림(귀덕)	3	토벌대	10. 16	서귀(법환)	1	군
5. 12	애월(하귀)	4	경찰	10. 20	한림(대림)	2	서청
5. 14?	구좌(송당)	10 (행불)	군	10. 24	제주(도남,해안)	4	군
5. 20	제주(도두)	10	경찰, 서청	10. 25	제주(아라), 증문(상예)	6	군
5. 22	애월(하귀)	1	경찰	10. 26	대정(신평,무릉,일파), 한림(금악,상명), 조천(조천,함덕)	27	군
5. 25	애월(하귀)	3	경찰, 서청	10. 27	애월(상가)	3	군
	대정(무릉)	10	경찰	10. 27	성산(고성,오조)	5	서청
5. 26	애월(하귀)	3	경찰	10. 28	제주(삼양)	9	경찰
5. 27	증문(상예,하예)	4	경찰	10. 29	애월(상가,금덕,어도,고내), 제주(아라,봉개,회천)	11	군
5. 29	한림(상명)	10	경찰		애월(소길)	1	경찰
5. 30	한림(청수)	2	경찰	10. 30	애월(고성,상귀,광평,장전,금덕,고내), 제주(화북,영평), 한림(수원), 조천(대홀)	74	군
6. 1	구좌(하도)	6	경찰				
6. 6	제주(외도)	1	토벌대	10. 31	조천(신희,와산), 증문(색달), 애월(남읍)	7	군
6. 7	한림(금악)	5	경찰		구좌(행원), 제주(읍내)	6	서청
6. 10	제주(도평)	1	토벌대	11. 1	조천(함덕), 제주(봉개,회천,해안)	11	군
6. 12	애월(장전)	10	경찰, 서청		안덕(갑산)	3	경찰
8. 1	애월(어음)	1	토벌대	11. 2	성산(은평,난산,오조)	6	서청
10. 9	남원(하례)	2	군		한림(상명), 제주(오등,봉개)	4	군
10. 10	성산(신평)	2	경찰	11. 3	성산(삼달)	6	경찰
10. 11	애월(금덕)	17 (행불)	군		성산(고성,은평)	4	서청
10. 13	대정(동일)	1	경찰		제주(연동), 남원(의귀)	8	토벌대
					애월(어음)	1	경찰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11. 4	대정(일과), 안덕(사제,감산,덕수), 서귀(서호), 조천(함덕,신흥)	40	군	11. 11	애월(하귀), 중문(중문)	4	경찰
	대정(동일)	1	경찰	11. 12	서귀(서흥,토평), 제주(삼양,화북), 조천(와산,신촌), 중문(중문,회수), 애월(신임)	42	군
11. 5	중문(중문,대포), 제주(읍내,도평,오동,내도), 남원(의귀,하례)	50	토벌대		애월(수산)	12	경찰
	안덕(덕수)	8	경찰	11. 13	구좌(행원), 조천(교래,와흘,신흥), 서귀(상효), 안덕(상창,창천,감산), 중문(상예), 애월(상가,하가,소길,신임,상귀)	131	군
11. 6	대정(면직원), 안덕(서광), 서귀(서흥,호근), 남원(수망), 애월(어도), 조천(조천), 제주(읍내,오동,삼양), 성산(수산)	58	군		안덕(서광)	1	경찰
	안덕(사제), 구좌(김녕), 한림(금악)	11	경찰	11. 14	제주(회천,오동,아라,오라)	10	군
11. 7	중문(중문), 남원(의귀,수망,한남), 구좌(행원), 제주(오동)	25	군	11. 15	표선(가시), 서귀(하효,토평,서흥), 중문(도순,대포), 안덕(동광), 대정(신평,구역), 애월(고성,광령), 제주(도남)	117	군
	대정(영락)	1	경찰		성산(신평)	2	경찰
	구좌(월정), 한림(저지)	2	서청	11. 16	조천(신촌), 중문(강정,월평,상예), 대정(상모), 한림(수원,귀덕)	26	군
11. 8	구좌(행원), 남원(태흥)	4	군		안덕(덕수,상창,창천)	6	경찰
11. 9	애월(금덕), 구좌(행원), 한림(상명,귀덕,명월), 중문(중문)	9	군		성산(수산), 남원(태흥,의귀), 중문(대포,상예), 대정(무릉)	25	군
	중문(중문)	1	경찰	11. 17	중문(중문)	1	경찰
	구좌(월정), 제주(읍내)	3	서청, 토벌대		조천(선흘), 구좌(종달,하도,월정), 대정(영락), 제주(노형,영평)	29	군
11. 10	서귀(서호), 구좌(행원), 한림(고산), 구좌(덕천)	13	군	11. 18	구좌(행원), 남원(의귀), 중문(대포,상예), 애월(고성,광령)	40	군
	구좌(월정)	3	서청				
11. 11	서귀(서흥,상효,서귀), 애월(금덕,장전,상귀,수산), 조천(대흘,와흘,함덕), 제주(용강,월평,봉개), 중문(색달,중문), 대정(무릉), 남원(의귀)	65	군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11. 19	대정(신도)	7	경찰		조천(와산,선홀)	9	군
	중문(중문)	18	서청	11. 27	한림(조수,낙천)	7	경찰
11. 19-20	제주(노형)	23	토벌대		성산(은평)	1	서청
11. 20	조천(와산,대홀), 대정(인성,보성,안성,구억,삼포), 애월(어음), 제주(용강)	38	군	11. 28	조천(대홀,선홀,신촌), 남원(태홍,수망,의귀), 중문(하원,하예), 대정(영락)	40	군
	구좌(한동), 한림(금악)	4	경찰		구좌(상도), 남원(의귀), 안덕(서광), 대정(신도)	14	경찰
11. 21	서귀(호근), 중문(강정,도순), 안덕(서광), 대정(신평)	42	군	11. 29	구좌(하도), 성산(성산), 남원(수망), 중문(회수)	28	군
				11. 30	성산(수산), 서귀(상호)	12	군
					남원(의귀), 중문(용흥,도순)	10	군
11. 22	조천(와산), 서귀(하효), 안덕(서광), 제주(도평)	6	군	12. 1	안덕(서광)	29	경찰
	서귀(신호), 한림(조수)	8	경찰	12. 2	서귀(호근), 중문(하원,상예)	15	군
	성산(은평)	7	서청		서귀(서귀)	4	서청
11. 23	조천(선홀), 구좌(하도), 중문(용흥), 안덕(상천,동광)	28	군	12. 3	조천(대홀), 대정(가파)	5	토벌대
	중문(중문), 안덕(창천)	5	경찰	12. 4	구좌(평대,종달?), 중문(하원,도순,상예), 대정(영락), 한림(상명,금악,명월)	54	토벌대
	중문(상예)	5	서청		구좌(종달), 안덕(상창,감산), 대정(무룡,신도)	29	경찰
11. 24	조천(선홀)	1	군		구좌(하도), 중문(중문), 안덕(광평), 한림(금악,명월), 제주(오라)	52	토벌대
	중문(하원), 안덕(창천,감산)	3	경찰	12. 5	구좌(상도), 중문(색달), 애월(장전,하귀,상귀,고성,광령)	22(행불 8 포함)	경찰
11. 25	조천(선홀,함덕), 성산(신평), 중문(도순)	20	군	12. 6	구좌(새화,하도,상도), 대정(인성,보성,안성,구억,삼포), 한림(청수)	28	토벌대
	중문(색달,중문), 안덕(창천,감산)	12	경찰		대정(신도), 한림(조수)	5	경찰
	중문(상예)	1	서청				
11. 26	조천(선홀,신촌), 안덕(신평)	34	군				
	한림(조수)	1	경찰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12. 7	구좌(평대), 안덕(창천), 한림(청수, 저지, 금악, 상대, 대림, 귀덕), 제주(해안, 노형)	48	토벌대	12. 14	구좌(상도), 대정(동일), 애월(상귀)	14	경찰
					한림(수원)	2	서청
12. 8	안덕(창천, 감산), 한림(조수, 낙천), 애월(하귀), 제주(이호)	21	경찰	12. 15	남원(수망), 중문(대포, 색달, 상예), 안덕(상천), 한림(청수)	24	토벌대
	조천(신홍), 중문(도순), 안덕(창천), 한림(청수)	13	토벌대		한림(조수)	7	경찰
	한림(조수)	3	경찰	12. 16	조천(신촌, 북촌), 서귀(토평)	30	토벌대
12. 9	조천(와홀), 남원(한남), 대정(일파), 한림(상명, 금악, 동명, 수원, 귀덕)	28	토벌대		한림(두모)	2	경찰
	대정(신도)	3	경찰	12. 17	표선(세화), 중문(강정, 도순, 대포, 색달, 중문, 상예, 하예), 애월(고내, 상가, 하가, 신업)	137	토벌대
12. 10	중문(하예), 대정(가파), 제주(화북)	9	토벌대		중문(회수), 애월(소길), 제주(용강)	11	경찰
	애월(장진, 하귀, 광평)	18	경찰	12. 18	구좌(하도, 종달), 안덕(동광, 상천), 한림(귀덕), 제주(영평)	39	토벌대
12. 11	남원(한남), 한림(금악, 명월, 동명, 귀덕)	13	토벌대				
	한림(조수)	2	경찰		한림(낙천)	9	경찰
12. 11-12	안덕(동광)	30	경찰	12. 18-19	표선(토산)	150여명	토벌대
12. 12	제주(읍내), 남원(신례), 서귀(토평), 대정(인성, 보성, 안성), 애월(상가)	13	토벌대	12. 19	애월(고내), 제주(외도)	5	토벌대
	남원(신례), 애월(소길, 하귀)	20	경찰	12. 20	구좌(평대, 하도), 남원(신례)	15	군
	남원(신례)	4	학생연맹	12. 20-22	남원(신홍)	70	토벌대
12. 13	구좌(행원), 대정(상모, 하도), 남원(한남)	76	군	12. 21	조천(와홀, 신촌, 조천, 신홍), 구좌(종달)	78(150)	토벌대
	남원(신례), 중문(회수), 대정(무릉)	20	경찰		애월(광평)	2	경찰
12. 14	한림(청수, 금악, 동명, 상대, 귀덕)	12	토벌대	12. 22	조천(와산, 대홍), 구좌(동북), 표선(가시)	90	토벌대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12. 23	조천(함덕), 구좌(동북), 제주(읍내), 한림(동명, 한림, 귀덕)	19	군	1. 6	애월(어도), 제주(용담, 읍내)	14	토벌대
				1. 7	대정(인성, 보성, 안성)	1	군
12. 24	구좌(덕천, 평대), 제주(읍내), 한림(청수)	5	군	1. 8	남원(신례), 안덕(창천), 애월(어도)	15	토벌대
12. 25	구좌(동북), 서귀(서흥)	9	토벌대		안덕(상창, 갑산)	7	경찰
	구좌(덕천)	16	경찰	1. 9	성산(시흥, 고성, 신산), 남원(의귀), 구좌(한동)	28	군
12. 26	조천(대흘), 구좌(동북)	27	토벌대	1. 10	대정(인성, 보성, 안성, 상모, 하모), 중문(영남), 남원(의귀)	22	군
12. 27	한림(조수), 제주(외도)	2	경찰		구좌(송당), 한림(청수)	4	경찰
	제주(삼양)	11	토벌대		안덕(동랑), 남원(의귀)	11	토벌대
12. 28	애월(남읍, 하귀, 상귀, 고성, 광령), 제주(오라)	55 (72)	토벌대	1. 11	제주(이호)	3	경찰
12. 29	대정(인성, 보성, 안성)	2	군		남원(의귀), 한림(상명, 명월, 동명, 한림), 애월(어도)	92	군
12. 31	조천(북촌)	4	경찰	1. 12	제주(도두)	50	토벌대
	남원(의귀), 애월(고성), 제주(도평)	3	군		성산(고성, 난산), 표선(성읍)	34	군
1949년 1. 1	조천(함덕)	12	토벌대	1. 13	표선(성읍), 제주(이호)	31	경찰
1. 2	대정(인성, 보성, 안성)	1	경찰		구좌(송당), 표선(성읍), 남원(수망), 서귀(호근), 제주(아라)	36	토벌대
	성산(오조, 성산), 남원(의귀), 애월(고성)	28	군	1. 14	서귀(신효), 한림(판포)	2	경찰
1. 3	대정(상모, 하모, 일파), 한림(금동)	4	군		구좌(송당), 제주(외도)	2	경찰
	한림(청수)	2	경찰	1. 15	한림(청수, 명월), 애월(어음, 남읍, 장전)	36	토벌대
1. 3-4	제주(도평)	70	토벌대		조천(북촌)←구좌(덕천, 동북), 제주(읍내)	400여명	군
1. 4	중문(월평, 대포, 회수, 상예, 하예), 남원(의귀), 한림(금악, 명월, 동명), 애월(고성)	38	토벌대	1. 17	대정(무릉)	4 (행불)	경찰
	대정(인성, 보성, 안성), 중문(중문, 상예), 제주(용담)	10	군				
1. 5	구좌(동북), 대정(동일)	7	경찰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학살일	피해 마을	희생 인원	가해자
1. 18	구좌(행원), 한림(청수)	6	토벌대	2. 13	제주(외도, 읍내)	5	경찰
1. 19	조천(대흘), 성산(성산), 제주(외도)	8	토벌대	2. 14?	남원(한남)	5	토벌대
1. 20	남원(의귀), 제주(노형)	10	군	2. 14	제주(외도)	9	경찰
1. 21	조천(신흥), 제주(해안, 아라)	6	군	2. 15	성산(난산)	12	군
					한림(판포)	2	경찰
1. 22	남원(의귀), 안덕(동광, 상창)	63	토벌대	2. 16	안덕(창천, 상천)	3	토벌대
1. 23	구좌(송당)	1	군	2. 17	제주(읍내)	1	학생 연맹
1. 24	조천(신흥), 애월(상가, 상귀, 광명), 제주(외도)	14	군	2. 19	구좌(행원)	2	군
	애월(하귀)	10	경찰		서귀(보목)	1	경찰
1. 26	애월(광명)	2	경찰	2. 20	한림(낙천)	3	토벌대
1. 27	안덕(상창, 창천), 대정(영락)	15	토벌대	2. 22	구좌(김녕), 중문(영남)	9	토벌대
1. 31	구좌(송당)	1	군	2. 24	제주(삼양)	3	경찰
	대정(영락)	2	경찰	2. 25	제주(삼양)	1	경찰
2. 1	조천(대흘), 성산(난산)	16	토벌대	2. 27	서귀(신희)	4	토벌대
	조천(신흥)	9	경찰	3. 1	구좌(덕천)	3	군
2. 4	조천(대흘), 제주(용강)	115	토벌대	3. 3	안덕(감산)	1	군
	안덕(사계)	3	경찰		구좌(송당)	6	경찰
2. 6	한림(청수), 애월(하가)	4	토벌대	3. 4	구좌(김녕)	2	토벌대
2. 7	제주(도평)	4	토벌대	3. 8	안덕(화순)	4	경찰
	대정(영락)	1	경찰	3. 9	구좌(덕천)	2	토벌대
2. 10	구좌(세화)	6	토벌대	3. 14	애월(상귀)	1	토벌대
2. 11	서귀(하효, 신희)	7	토벌대	3. 22	구좌(김녕)	1	경찰
2. 12	애월(광명), 제주(외도)	10	경찰	3. 23	애월(하가)	1	경찰
				4. 5	안덕(광평)	5	토벌대

참고문헌

[신문·직원록·연감·자료집]

- 『제주신보』 (1947. 1. 1~1948. 4. 20, 1950. 8. 1~1954. 12. 17)
『제주4·3사건 자료집(신문편)』 1·2,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1
『제민일보』 (1998. 4. 25, 제412회~1999. 8. 28, 제456회)
아라리연구원 편, 『제주민중항쟁Ⅲ- 정기간행물·보고서자료집』, 소나무, 1989
『조선경찰직원록』, 조선경찰신문사, 1930(소화 5년)
『조선경찰직원록』, 조선경찰신문사, 1932(소화 7년)
『조선경찰관직원록』, 조선경찰신문사, 1937(소화 12년)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 직원록』, 조선총독부, 1939 / 1940
『조선인명록』, 경성일보사, 1943(소화 18년)
『(대한민국) 관보』 1~13권, 1948. 9. 1~1953. 12. 31
『대한민국 인사록』 (1950년판), 『한국근현대사 인명록』 6, 여강출판사, 1987
『정부 직원록』, 총무처, 1954
『건국10년지 인사록』 (1956년판), 『한국근현대사 인명록』 6, 여강출판사, 1987
조선통신사 편, 『조선연감(1947년판)』, 1946. 12
조선통신사 편, 『조선연감(1948년판)』, 1947. 12
제주4·3연구소 편, 『제주4·3자료집 - 미국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제주4·3연구소 편, 『제주4·3자료집Ⅱ - 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각, 2001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 편,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 수정·보완판, 1997

[잡지·수기·증언·회고록]

- 『새한민보』 (1947. 6~1949. 5)
『민중경찰』 (1947. 6~1948. 10), 경무부 (경찰)교육국
『월간대경』 (1975. 6~1976. 4), 대한경찰문제연구소
제주4·3연구소 편, 『4·3 장정』 1·2·3·4·5·6, 1990~1993

제주4·3연구소 편, 『이제사 말함수다』 1·2, 한울, 1989
 오성찬, 『한라의 통곡소리』, 소나무, 1988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2·3·4·5, 전예원, 1994~1998
 김익렬, 「4·3의 진실」,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문봉제, 「서북청년회(1)~(40)」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1972. 12. 21~1973. 2. 9
 선우기성, 『어느 운동자의 일생』, 배영사, 1987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출판부, 1989
 백선엽, 『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장병해, 『창랑 장택상 일대기 - 상록의 자유혼』, 장택상 기념사업회, 1992
 조병옥, 『나의 회고록』, 민교사, 1959
 하우스만·정일화,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995
 특별취재반, 「군정경찰 (1)~(77)」, 『경향신문』, 1977. 2. 10~1977. 6. 10
 김대선, 「국립경찰 창설 (1)~(55)」, 『중앙일보』, 1974. 10. 14~1974. 12. 16

[단행본]

아라리연구원 편, 『제주민증항쟁 I』, 소나무, 1988
 역사문제연구소 등 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노민영 엮음, 『잠들지 않는 남도』, 은누리, 1988
 제주4·3연구소 편,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1991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1998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 문혀진 4·3의 진상』, 대림인쇄사, 1995
 김찬흠 편,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조남수, 『4·3 진상』, 월간관광제주, 1988
 신상준, 『제주도4·3사건』 상, 한국복지행정연구소, 2000
 강용삼·이경수, 『대하실록 제주백년』, 태광문화사, 1984
 수도관구경찰청, 『해방 이후 수도경찰발달사』, 1947
 내무부치안국, 『경찰10년사』, 1958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 2, 1973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이경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 상·하, 삼성문화개발, 1989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1973
 건국청년운동협의회,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정해구, 『10월 인민항쟁연구』, 열음사, 1988
 심지연, 『대구 10월 항쟁연구』, 창계연구소, 1991
 그라트 미드, 『주한미군정 연구』, 안종철 역, 공동체, 1993
 김남식, 『남로당연구』 I·III, 돌베개, 1984 / 1988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김동춘 편, 『한국현대사연구』 1, 이성과 현실사, 1988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3
 김종범·김동운, 『해방전후의 조선진상』, 돌베개, 1983
 등원창(藤原彰-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 엄수현 역, 시사일본어사, 1994
 리차드 라우터백, 『한국미군정사』, 국제신문사출판부 역, 돌베개, 1983
 리차드 로빈슨, 『미국의 배반- 미군정과 남조선』, 경미옥 역, 과학과 사상, 1988
 존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신성환 역, 과학과 사상, 1988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청산하지 못한 역사』 1~3, 청년사, 1994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상·하, 김주환 역, 청사, 1986
 『분단전후의 현대사』, 일월서각, 1983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1999
 송남현, 『해방 3년사』 I·II, 까치, 1985
 안 진, 『미군정기 억압기구 연구』, 새길, 1996
 역사문제연구소 편,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하, 중앙일보사, 1992/93
 중앙일보 현대사연구팀, 『발굴자료로 쓴 한국현대사』, 중앙일보사, 1996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1, 열음사, 1985
 서대숙 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1982

서대숙 외, 『한국현대사와 미군정』,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1
 이수인 편, 『한국현대정치사』 1, 실천문화사, 1989
 『해방전후사의 인식』 1~6, 한길사, 1979~1989

[학위·학술 논문]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박명림,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8
 양정심, 「제주 4·3항쟁에 관한 연구 -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5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 - 미군정의 대제주도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0
 류상영, 「초창기 한국경찰의 성장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1945~1950)」, 연세대 석사논문, 1987
 한용원, 「한국군의 창군과정과 미군의 역할」, 고려대 박사논문, 1982
 존 메릴, 「제주도 반란」, 『한국현대사연구』 1, 이성과 현실사, 1988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김창후, 「1948년 4·3항쟁 -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1993 봄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1991 봄
 김종민, 「제주 4·3항쟁 -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1998 봄
 이도영, 「『백조일손지표』가 말하는 전쟁기 제주도 양민학살」, 『역사비평』 2000 여름
 서증석,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김순태, 「제주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정해구, 「제주 4·3 항쟁과 미군정정책」,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임대식, 「제주 4·3 항쟁과 우익청년단」,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 제주4·3의 담론정치」,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황상익,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4·3」,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김종민, 「4·3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박명림,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이해 : 제주 4·3과 한국현대사」,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김상태, 「평안도 기독교 세력과 친미엘리트의 형성」, 『역사비평』, 1998 겨울
 김민철, 「식민지 통치와 경찰」, 『역사비평』, 1994 봄
 김정은, 「1920~30년대 경찰조직의 재편」, 『역사와 현실』 39, 2001
 정영태, 「일제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 1992 봄
 김무용, 「조병옥의 친미반공노선과 극우테러」, 『역사비평』, 1989 여름
 안 진, 「분단고착세력의 권력장악과 미군정」, 『역사비평』, 1989 가을
 김광식, 「8·15 직후 한국사회와 미군정의 성격」, 『역사비평』, 1987 제1집
 정해구, 「분단과 이승만 : 1945~1948」, 『역사비평』, 1996 봄
 박태균, 「8·15 직후 미군정의 관리층원과 친일파」, 『역사와 현실』 10, 1993
 임대식, 「친일·친미경찰의 형성과 분단활동」,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알란 밀렛, 「하우스만 대위와 한국군의 창설」, 『軍史』, 국방군사연구소, 2000. 40호
 정석균, 「제주4·3사건의 진상」, 『軍史』, 국방군사연구소, 2000. 41호
 안 진, 「미군정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김남식, 「1948~50년 남한내 빨치산활동의 양상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류상영, 「해방이후 좌·우익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기 타]

김봉현·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제주민중항쟁』 1, 소나무, 1988 (대판: 문우사, 1963에서 부분 발췌)
 김봉현, 「제주도 혈의 역사 ; 4·3무장투쟁의 기록」, 『잠들지 않는 남도』,

- 은누리, 1988 (대판; 도서간행회, 1978)
- 「국방경비대의 토벌작전(1948.4~1953.1)」, 『제주민중항쟁』 1, 소나무, 1988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I -해방과 건군』 (1967)에서 전재
- 「무지개부대의 공비소탕작전(1953.2~1953.5)」, 『제주민중항쟁』 1, 1988
-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육군본부 전사감실, 1971)에서 전재
- 『새한민보』, 1947. 6.~1949. 12.
- Q기자, 「창랑 대담방청」, 『새한민보』 창간호, 1947.6
 - Q기자, 「조경무부장과와의 대담방청」, 『새한민보』 1권 3호, 1947.7
 - Q기자, 「이인 대담방청」, 『새한민보』 1권 5호, 1947.8
 - 정동웅, 「동란 제주의 새 비극 - 박대령 살해범 재판기」, 『새한민보』 2권 16호, 1948.10 (『제주민중항쟁』 3, 1989)
- 『신천지』, 1946. 2.~1949. 10.
- 조덕송, 「유혈의 제주도」, 『신천지』, 1948.7(『제주민중항쟁』 3, 1989)
 - 홍한표, 「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 『신천지』, 1948.8 (『제주민중항쟁』 3, 1989)
- 『월간대경』, 1975. 6.~1976. 5.
- 김현창, 「이창 경찰사」 ①~⑩
 - 임무암, 「역대의 치안본부장들」 ①~⑫
- 김재명, 「이승만의 정적 최능진의 비극」, 『정경문화』 1983. 10.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of the Jeju Police

- concentrate on 'Jeju 4·3' -

Yang Bong Cheal
Department of Education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activities of the Jeju Police in connection with 'Jeju 4·3'

First, the present writ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disposition and '4·3' as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Police. The Jeju Police - including most of the leaders - were composed of the Pro-Japanese police. They were the extreme rights and skilled in barbarous thought-pressure, terror and torture.

The upper and lower of the Jeju Police was entirely held by a number of the reinforced police, the railroad police and the police from SeoCheong who were dispatched from mainland. They despised Jeju people as 'island provincials' who were infected with communism. 'Island provincials' were not 'brothers' nor 'us' to them any more. As the police who were from mainland did all sorts of oppression and violence, Jeju community which had intensive blood-relationship couldn't but resist against them.

Secondly, the present writer divided the period of activity as 'the format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e offensive of the reinforced police', 'the complications between the constabulary-type police and the police', and 'the subjugation and massacre', and then examined closely the cause of '4 · 3'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about the thing that they slaughtered Jeju inhabitants.

American Military Government(AMG) and the police stipulated '3 · 1 demonstration' and '3 · 10 total strike' as 'the riot' plotted with North Korea power, while Jeju residents had struck against '3 · 1 fire' of the reinforced police. And AMG dispatched the reinforced police in addition, then arrested in large scale, tortured cruelly and suppressed overall the lefts of Jeju.

As soon as '4 · 3' broke out and '5 · 10 election' failed, the reinforced police stood in front of suppression. In the state of neither martial law nor battle, the police shot unarmed inhabitants dead for mobs, or held them for captivities. According to an armed mop-up campaign, the new government threw in maximum reinforced police and changed the head of the Jeju Police into one coming-south from North Korea.

Rhee SeungMan government set up Korean Army in front of suppression for a scorched-earth strategy, and banned passage in any zone more than 5km from a coastline. After the uprising at the 14th regiment in Yeosu broke out, AMG, Rhee SeungMan and the heads of the police infused the reinforced police with extremism that Jeju people were 'RED', and instigated them to slaughter innocent Jeju people. In that period, as people with the 'RED' mark were not 'man' any more, the police slaughtered them without any criminal feeling.

The number of mob was assumed only 500, on the other hand, in according to AMG report, suppression against '4 · 3' was not a mere 'mob

suppression' but a great 'state violence' that slaughtered unarmed inhabitants in large quantity. About 90% of thirty thousand persons who were presumed to be slaughtered throughout '4·3' were done by a punitive force, and 20% of them were done by the police. But the dead of the police were 139 persons.(the dead of army, 494).

Of course, the slaughter was responsible to President Rhee, commander in chief, and US Army which directed and controlled Korean Army and Police in reality. But all the police from the leader to a mere cop in a branch office grabbed a matter of life or death of Jeju inhabitants. Nevertheless, there was rarely a leader or a policeman who resisted the order about a large-scale massacre.

As a consequence, the role which the Jeju Police performed in '4·3' period can be brought as follows.

First, the Jeju Police did not the activity to maintain public peace in negative meaning nor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inhabitants, but performed a role as 'a quasi military combat-police' for the founding and the protecting of a nation.

Second, the Jeju Police performed a role as 'a state violence organization' which did all sorts of fabrication, torture, and massacre.

Third, under the centralized police system which ignored the actual circumstances in the province, the Jeju Police performed a role as 'a perpetrator of AMG or the forces driving section' - Rhee SeungMan, Joe ByeungOak and so on.

Forth, the Jeju Police performed a role as 'a advance guard of extreme anti-communists' who had background that they were Japanese sympathizers or from North Korea.